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국립대학 총장선정제도 비교 분석

-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선정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

2015. 1.

충남대학교 교수회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총장선정제도 정책연구과제의
최종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1.

연구책임자 : 박재묵 (교수회장)

공동연구자 : 오병성 (교수회 부회장)

이영하 (교수회 부회장)

김정윤 (교수회 사무처장)

김종성 (교수회 상임운영위원)

김세정 (교수회 비상임운영위원)

김영진 (교수회 비상임운영위원)

박길순 (교수회 비상임운영위원)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기성회계의 지원을 받아 교수회 정책연구과제로 수행되었으나,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수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사적 견해를 밝힙니다.

충남대학교 교수회
(정책연구과제 연구위원회)

< 차 례 >

제1편 연구의 배경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이론적 배경	6
(1) 대학총장의 역할과 자질	6
(2) 현행 국립대학 총장선임제도	9
제2편 주요항목별 비교분석	15
1. 용어의 정의	17
(1) 총장후보자	17
(2) 총장임용후보자	17
(3) 총장후보자관리위원회	18
(4) 총장후보자초빙위원회	19
(5)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19
2. 공고기한 및 공모기간	20
(1) 공고기한	20
(2) 공모기간	21
3. 후보자의 자격	21
(1) 연임 제한	21
(2) 공무원법상 결격사유	22
(3) 본교재직경력(내부후보)	23
(4) 추천인	24
(5) 기탁금 또는 발전기금	26

(6) 외부인사 경력요건	27
(7) 응모 제한	28
4. 초빙 또는 공모기구	28
(1) 기구 설치 여부	28
(2) 기구의 명칭	29
(3) 설치기한	30
(4) 구성주체 또는 소속	31
(5) 규모 및 참여집단	32
(6) 의결정족수	36
5. 관리기구	36
(1) 명칭	36
(2) 구성기한	37
(3) 구성주체	38
(4) 규모 및 참여집단	39
(5) 추천기관 및 추천절차	41
(6) 당연직 위원 및 자격요건	43
6. 검증기구	43
7. 행정지원기구	45
8. 추천위원회	45
(1) 명칭	45
(2) 구성기한	46
(3) 구성주체 또는 소속	47
(4) 규모 및 참여비율	48
(5) 교원위원의 선발방식	50
(6) 직원위원의 선발방식	58

(7) 학생위원의 선발방식	62
(8) 조교위원의 선발방식	66
(9) 외부위원의 선발방식	67
(10) 의결정족수	73
9. 심사·선정 절차	74
(1) 심사 기준	74
(2) 선정방식	76
(3) 동점자 처리방식	78
(4) 압축 및 최종 순위 결정방식	78
(5) 이의신청 및 재선정	80
10. 연설회·토론회 등	83
 제2편 규정 개정안	 85
 제1장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87
1. 규정 개정안	87
2. 신구조문대비표	98
 제2장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	117
1. 세칙 개정안	117
2. 신구조문대비표	142

<표 차례>

<표 1-1> 국공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5
<표 1-2> 대학총장의 자질 요건	9
<표 2-3> 대학별 총장후보자의 명칭	17
<표 2-4> 대학별 관리기구의 명칭	19
<표 2-5> 대학별 추천기구의 명칭	20
<표 2-6> 대학별 공고기한	21
<표 2-7> 대학별 공모기간	21
<표 2-8> 대학별 총장 연임 제한	22
<표 2-9> 결격사유 적용법령 및 해당 대학	22
<표 2-10> 본교재직경력요건별 해당대학	24
<표 2-11> 대학별 추천인수	25
<표 2-12> 기탁금(발전기금) 액수별 해당대학	26
<표 2-13> 외부인사 경력요건별 해당대학	27
<표 2-14> 외부인사 특수요건	28
<표 2-15> 초빙기구의 설치 여부	29
<표 2-16> 초빙기구 명칭별 해당대학	30
<표 2-17> 초빙기구 설치기한별 해당대학	31
<표 2-18> 초빙기구의 구성주체별 해당대학	32
<표 2-19> 초빙위원회 참여집단	33
<표 2-20> 관리기구의 명칭별 해당대학	37
<표 2-21> 구성기한별 해당대학	37
<표 2-22> 구성주체별 해당대학	38
<표 2-23> 대학별 관리기구 참여집단 및 규모	40
<표 2-24> 검증기구 명칭별 해당 대학	44
<표 2-25> 추천기구 명칭별 해당 대학	46
<표 2-26> 구성기한별 해당 대학	46
<표 2-27> 구성주체별 해당 대학	48
<표 2-28> 대학별 추천위원회 규모 및 참여집단	49

<표 2-29> 교원위원 계열구분별 해당대학	51
<표 2-30> 추천위원 결격사유별 해당 대학	54
<표 2-31> 직원위원 배정단위별 해당 대학	59
<표 2-32> 충남대 직원 구분 및 현원	59
<표 2-33> 여성직원수별 해당 대학	60
<표 2-34> 충남대 직원의 성별 구분	61
<표 2-35> 학생위원 배정단위별 해당대학	63
<표 2-36> 충남대 재학생수	64
<표 2-37> 조교위원 배정단위별 해당대학	66
<표 2-38> 대학별 외부추천위원 규모 및 추천기관(단체)	67
<표 2-39> 부산대 외부추천위원 추천기관(단체)	69
<표 2-40> 대학별 외부위원 자격요건	73
<표 2-41> 대학별 심사 기준	74
<표 2-42> 대학별 최종순위결정방식	78
<표 2-43> 대학별 이의신청관련 규정	81

< 참고문헌 > 155

<부록> 국공립대학 총장후보선정제도 요약표 159

1. 강릉원주대학교(2014.04.23.)	159
2. 강원대학교(2014.03.31.)	160
3. 경남과학기술대학교(2014.04.30.)	161
4. 경북대학교(2014.09.25.)	162
5. 경상대학교(2014.03.28.)	163
6. 공주대학교(2012.11.30.)	164
7. 군산대학교(2013.10.08.) - 세척(2012.12.17.)	165
8. 목포대학교(2014.04.25.)	166
9. 부경대학교(2014.03.12.)	167

10. 부산대학교(2014.03.31.)	168
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2014.04.30.)	169
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2014.01.03.)	170
13. 서울시립대학교(2014.09.04.) - 직선제	171
14. 순천대학교(2014.05.08.)	172
15. 안동대학교(2014.03.18.)	173
1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174
17. 전남대학교(2014.04.28.)	175
18. 전북대학교(2014.09.16.)	176
19. 제주대학교(2014.04.25.)	177
20. 창원대학교(2013.12.30.)	178
21. 충남대학교(2014.04.29.)	179
22. 충북대학교(2014.01.20.)	180
23. 한경대학교(2014.03.21.)	181
24. 한국교원대학교(2014.03.31.)	182
25. 한국교통대학교(2014.02.28.)	183
26. 한국해양대학교(2014.03.27.)	184
27. 한밭대학교(2014.04.25.)	185

제1편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010년 9월 「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을 수립하여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 학장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운영상의 문제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2년 1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총·학장 리더십 강화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및 학사운영의 선진화, 기성회회계(비국고회계) 제도 개선 및 운영 선진화,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 등이다.

그리고 2011년부터 매년 대학평가결과 하위 15%의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하고,¹⁾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과제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평가지표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배정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교육투자, 등록금 부담완화지수 등이 있으며, 지표 중에서 10%를 차지하는 선진화지표에 총장²⁾직선제 개선, 기성회회계 건전성 등이 포함된다.

정부조직에 속하는 국립대학은 취업률, 충원률, 교원 확보율 등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선진화지표에 의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여부가 결정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동일한 지표로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학생수 1만명 이상의 국공립 13개 대학 중에서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던 경북대, 인천대, 부산대, 전남대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전북대는 최저금액인 14억원을 지원받았다.³⁾ 이에 반하여 총장직선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여 학칙에 반영하였거나, 교육과학기술부와 MOU를 체결한 대학은 최대 42억원에서 2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총장직선제의 개선 여부에 따라 예산이 차등지원되자, 전체 교수의 84.8%

1) 2011년에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되었다.

2)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는 “대학의 장”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국립학교설치령」 제5조 제1항에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총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대학의 장”을 모두 “총장”으로 표기한다.

3) 총장직선제관련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하면, 전남대를 제외한 4개 대학의 순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참여한 투표에서 70.1%의 찬성으로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던 전남대를 포함한 38개 국립대학이 2012년 8월말까지 총장직선제 폐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대학의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적 압박에 의한 불가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추진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경북대 교수회는 2012년 10월 직선제 폐지 등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교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대학본부의 일방적 조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사업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압적 태도에 굴복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한국대학신문, 2012년 12월 23일자).

또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이 발표된 직후인 2012년 3월에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33개 국립대에서 투표에 참여한 교수 9,473명 중 93%(8,592명)가 장관 퇴진에 찬성했다(교수신문, 2012년 12월 24일자).

이러한 난관 외에도 직선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총장후보를 결정하는 역할과 권한이 부여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비율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2012년 5월에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당해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정했던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이,⁴⁾ “해당 대학의 교직원, 학생 및 해당 대학 외의 인사”로 명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학생회, 대학원학생회, 조교협의회, 직원협의회, 교수회 등의 구성원단체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⁵⁾

교육부와 각 대학이 처한 혼란과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이 양보와 타협으로 바람직한 자체선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기득권의 유지와 이해관계에 급급한 나머지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 없이 일방적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학 총장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요건을 제시

4)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 외의 인사를 위원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5) 충남대학교의 직원들은 총장후보선정규정을 제정하는 동안 교수와 직원간의 재적인원비율에 따라 추천위원을 구성하라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를 대학본부와 정문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교통대학교에서도 외부인사 12명, 교수 31명, 직원 4명, 학생 1명으로 구성하자는 교수회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자, 직원협의회 등 직원 3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하고, 다양한 선임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세부적인 선임단계별로 바람직한 방식을 제시해보고자 한다.⁶⁾

연구방법으로는 전국 40여개의 국공립대학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고 성격이 이질적인 교육대학을 제외한 27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주요 이슈별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 12월 현재 각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대학마다 명칭은 다소 상이함)과 동 시행세칙을 수집하였고, 주요 항목별로 각 대학의 특징을 비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과 동 시행세칙의 개정안을 만들었다.

<표 1-1> 국공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대학	규정 명칭	제정일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2014.04.23.
강원대학교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	2014.03.3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2014.04.30.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2014.09.25.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2014.03.28.
공주대학교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	2012.11.30.
군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2013.10.8.
목포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2014.4.25.
부경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2014.03.12.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2014.03.3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후보 선정에 관한 규정	2014.04.30.
서울대학교(법인)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2014.01.03.
서울시립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2014.09.04.
순천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2014.05.08.
안동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2014.03.18.
인천대학교(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2012.05.16.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2014.04.28.

6) 선출이라는 용어는 선거를 통한 대표의 선정이라는 의미가 강하며, 대표의 선정뿐 아니라 임용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선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2014.09.16.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2014.04.25.
창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2013.12.30.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2014.04.29.
충북대학교	총장후보 선정에 관한 규정	2014.01.20.
한경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2014.03.21.
한국교원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2014.03.31.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임용추천규정	2014.02.28.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2014.03.27.
한밭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2014.04.25.

2. 이론적 배경

(1) 대학총장의 역할과 자질⁷⁾

대학총장의 역할이나 자질에 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말부터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의 주도 하에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컨대 David G. Brown은 1979년에 미국 대학총장들의 자아지각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Brown, 1979; 이성호, 1999: 21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총장의 특성을 세 가지로 규정하였다. 첫째는 그 대학의 미래에 대한 방향 감각을 갖고 있으며, 둘째는 정열적 느낌을 갖고 있으며, 셋째는 대학을 이끌어 나가는 실천구조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뒤이어 Benezet 등(1981), Carbone(1981), 그리고 Kerr & Gade(1986)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Kerr & Gade(1986; 정우현, 1995: 6-7에서 재인용)는 미국 대학의 전현직 총장 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총장의 임무로 ①대학의 목표설정, ②투자 및 배분의 우선순위결정, ③대학조직구조의 재편성, ④효과적인 참모진의 조직, ⑤대학재정의 확보와 배분, ⑥당면한 과제의 해결, ⑦관계집단과의 원활한 교류(이사진, 교수집단, 학생집단, 대학행정 보직집단, 동창회, 정부관계자, 후원회 등)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양

7) 이 부분은 김종성(2009: 286-289)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한 총장의 모습을 Gade(1992; 백정하, 1998: 9에서 재인용)는 ①행정가로서의 총장, ②재정관리자로서의 총장, ③학문적 리더로서의 총장, ④상징적 리더로서의 총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Fincher(2003: 41)는 대학총장의 직무를 관리적 영역(governance)과 경영적 영역(management)로 대별하였다. 관리적 영역으로는 학사관리, 인사관리, 학생지도 등을 포함한 조직의 내부관리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유지, 대외홍보, 모금활동 등을 포함한 외부관리를 들 수 있다. 경영적인 영역으로는 조직목표 설정, 조직기획, 의사소통, 의사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2005: A26)이 1,338명의 4년제 대학총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총장들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문은 재정부문이고, 학교운영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부문은 예산문제, 교육프로그램의 수월성, 교수의 질 관리, 모금실적 목표달성 등으로 나타났다(손경애, 2008: 116).

한편 국내의 총·학장이 수행하는 직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대학총장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은 ①학사관리(교무, 수업, 학적), ②학생행정(장학, 복지, 지도, 취업), ③학술관리(학술진흥, 연구관리)의 순으로 나타났다(김종철 외, 1984: 93-95).⁸⁾ 이 연구에서는 대학행정의 체제적인 연관성과 본질적 특성을 토대로 4가지 영역에서 총장이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역할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과 사회의 접촉영역에서 대학조직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대학의 체제적 통합과 정치영역에서 대학조직을 통합·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대학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정책형성측면에서 대학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대학의 관리영역측면에서 공격적인 관리발안권과 결정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집행을 지휘·감독·통제한다.

허범(1987: 14-16)은 선행연구에 대학규범영역과 위기관리영역을 추가하여 총장이 수행하는 행정기능영역을 6개 차원(대학규범영역, 대학과 사회의 접촉영역, 대학의 체제적 통합과 정치영역, 정책형성영역, 행정관리영역, 위

8) 이와 유사한 연구로 주경란(1991)은 대학총장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는 직무로 학사관리, 장단기 발전계획 및 추진, 학생지도 및 대화, 인사, 재무, 시설 및 일반행정, 교수 및 직원과의 대화, 대학홍보, 발전기금모금활동, 국제교류활동, 본인의 학술활동 등을 제시하였다.

기관리영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총장의 역할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재직 중인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박재규 외(1992: 21-22)의 연구를 보면, 총장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은 행정수행능력(33.7%), 경영재원 확보능력(29.6%), 대학구성원의 존경도(28.6%), 학문적 능력과 업적(6.1%), 재단(정부)과의 유기적 관계(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광범위하게 대학이사회, 총장, 행정직원, 교수협의회, 교수를 포함한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대학총장평가에 대한 의견조사(Park, 2006)에서, 대학구성원들은 대학총장의 평가준거로 행정적 지도성 및 운영능력, 대외관계 조절능력, 자금 및 기부금 조달능력, 학내 재정 및 재무관리능력, 대외관계 관리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6)의 대학종합평가지표에는 대학총장의 지도력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행정 및 인사부문에 대학발전을 위한 비전, 업무추진능력, 혁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서울대학교(2006)가 작성한 대학총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민주적·자율적 대학운영, 교육제도의 개선 및 내실화, 연구능력 제고와 지원체제 강화, 국제화와 사회공헌, 복지수혜의 확대와 다변화, 에코캠퍼스와 연구기반 시설 등 여섯 개 평가항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2005)의 자체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대학평가영역중 대학경영 및 재정부분에 총장의 비전과 대학발전에 대한 노력,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 총장의 대외교섭능력 등 총장의 지도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차대운(2006)은 대학경영자로서 대학총장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하여 경영자, 변화촉진자, 이해관계조정자, 자원조달자, 대학과 지역사회의 가교 등 다섯 가지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대학총장은 아래 <표 1>과 같은 능력과 태도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2> 대학총장의 자질 요건

능력	전문성	전문지식의 보유정도, 전문업무의 경험
	리더십	교직원관리능력, 목표공유 및 비전 제시능력, 절충과 의사소통기술, 업무통솔능력, 팀워크 형성능력
	조정 및 일반관리능력	조정 및 업무협조능력, 정보관리 및 활용능력, 업무개선 및 원가의식, 예산관리능력, 업무부여능력, 외국어 구사능력
	대외적 능력	교섭설득력, 전략수립능력, 판단력, 상황대응능력, 이해조정능력
	업무추진능력	고객지향성과 경영마인드, 혁신지향성, 목표실행능력,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능력
태도	인품	품위와 인격, 비즈니스 매너
	조직적응력	대규모조직관리능력, 성실성과 건강
	윤리성	공사생활의 평판, 재산상의 청렴성
	중립성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자율성
경력	교원경력	대학구성원으로서의 근무경력
	대학재직경력	해당대학에서의 재직경력
	기여도	해당대학의 명성과 재정에 대한 기여도
	주요행정경력	교내 주요보직의 수행경력, 지역사회에서의 주요활동 경력

출처: 김종성 외(2004: 9-13)를 요약·정리하였음.

(2) 현행 국립대학 총장선임제도

㉠ 제도적 연혁

1946년 8월 22일에 공포된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군정법령 제 102호)」 제7조 가항 제1호에 따르면, 총장으로 유자격한 조선인을 이사회에서 천거하고 서면으로 수락한 경우에 정식으로 그 직에 임명된다. 단 군정기간 중에는 조선군정장관이 임명한다. 당연직 이사인 문교부장과 총장 외에, 단과대학당 1명을 문교부의 추천으로 군정장관이 임명한다. 단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및 정부직원은 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⁹⁾ 외부인사 위주의 이사회가 총장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

1947년 5월 6일에 개정된 법령에서도 총장은 이사회에서 천거하고 군정 장관(군정기 후에는 행정부최고책임자)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임시이사회를 폐지하고, 당연직 이사인 총장을 제외한 이사는 단과대학당 1명을 부처장회의에서 추천하고 군정장관(군정기 후에는 행정부최고책임자)이 임명하되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1953년 4월 18일에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85호)」이 제정되어, 총장·부총장은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였다(제8조 제1항). 교수회는 대학을 단위로 하여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성하며, 총장·부총장의 추천에 있어서는 당해 대학교의 교원 전원으로 교수회를 구성한다(동 제3항). 즉 종전에는 총장을 이사회에서 추천하였으나, 교육공무원법의 제정 이후에는 이사회가 아니라 전체 교원으로 구성된 교수회에서 추천하도록 바뀐 것이다.

1961년 9월 1일에 제정된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 제9조에서는 총장·부총장을 문교재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즉 종전에는 이사회나 교수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이 절차를 폐지한 것이다.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은 기존의 「교육공무원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었기 때문에 1964년 12월 5일(1964년 1월 1일 시행)에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였다.

제3공화국이 출범하기 직전인 1963년 12월 5일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463호)」 제25조에서도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과 마찬가지로, 총장·부총장은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단 문교부장관이 임명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교수협의회가 재출범하면서, 목포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시발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교수들의 직선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대학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교육부는 1988년 4월 당해 대학에서 총장추천위

9) 단 잠정적인 군정기간 중에는 이사회를 조직하지 아니하고 군정장관이 임명하고, 군정장관이 임의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임시이사회를 두며, 임시이사회는 문교부장, 조선인 문교부장, 문교부차장, 조선인 문교부차장,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및 문교부 조선인 고등교육국장으로 구성된다(동 제2호).

원회를 구성하여 총장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이 지침에 따라 각 대학의 총·학장 직선제가 관행화되었다(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1997; 변기용·강현선·권소연, 2011: 134-135).

이어서 1991년 3월 8일에는 「교육공무원법(법률 제4348호)」을 개정하여 총장·학장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이어서 1991년 8월 8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3448호)」 제12조의3에서는 총장의 임명추천을 하기 위하여 대학에 총장임명추천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는 10인 이상 50인 이하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 외의 인사를 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동 위원회에서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위원회에서의 직접 선정과 당해 대학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 선정이라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당해 대학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¹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는 “당해 대학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 선정”방식을 채택하여 교원만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총장(후보자)을 선출하여 교육부에 임용추천을 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을 총장직선제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성낙인, 2007: 138). 이 조항을 근거로 총장직선제가 사실상(de facto)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은 당해 대학교원의 합의된 의사가 간선제일 경우에도 역시 근거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당해 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 선정방식에 대한 근거규정일 뿐이며, 직선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아니며, 직선제의 주체에 대한 규정도 없다.

1998년 김대중 정부와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출범으로 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1998년 2월 24일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5516호)」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는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법률 제7380호)」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 대학직원협의회, 기성회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설립되었고, 각 단체는 총장선거에의 참여를 요구하며, 대학본부 및 교수협의회와 대립하였고, 교원들만의 총장선거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기도 하였다.¹¹⁾ 이후 각

10) 2005년 5월 31일에는 「교육공무원법(법률 제7537호)」을 개정하여, 종전에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던 후보자선정방식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직원단체간의 협상을 통하여 직원과 학생의 부분적인 선거참여가 사실상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¹²⁾

2012년 5월 7일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767호)」이 개정되어, 종전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원을 “당해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에 한정하던 것을, “해당 대학의 교직원, 학생 및 해당 대학 외의 인사(전체의 1/4 이상)”로 명시적으로 확대하였다(제12조의3 제1항).

2012년에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였거나 폐지하기로 정한 모든 국립대학의 결정은 「교육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 아니며,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해당 대학교원의 합의”에 의한 자발적인(?) 학칙의 개정일 뿐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을 두고 있고, 직접선거로 총장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한다는 규정(제24조의3)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총장직선제로의 회귀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나) 국립대학 총장선임절차 개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총장후보를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을 하거나, 총장의 선임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준비단계로서, 선임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선거 또는 공모에 대한 공고를 하며, 후보 등록을 받거나 후보를 물색하는 과정이다. 전반적인 과정은 대체로 추천위원회가 관리하지만, 별도의 관리기구

11) 경상대에서는 2002년 12월 5일로 예정된 총장선거에서 직원들의 투표장 봉쇄로 인하여 투표가 무산되자, 우편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총장임용추천서류를 반려하였고, 충남대에서도 2004년 12월 16일에 예정된 총장선거가 직원들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12) 2003년 2월 27일에는 안동대 전체 교수회의에서 총장선거 예비선거에 전체 직원의 20% 참여안이 확정되어, 3월 5일의 총장선거 중에서 예비선거에 직원대표 30명이 참여하였고 본선거에는 교원만이 참여하였다. 2003년 4월 15일에는 부산대에서 교수회와 총장선출권쟁취 공동대책위원회가 1차 투표에서 총 30표, 2차 투표에서 총 6표, 결선투표에서 총 1표 등 직원이 총장선거에 참여하도록 합의하여 6월 12일의 총장선거에 직원들이 참여하였다. 경상대에서는 2003년 9월 4일 개최된교수 총회에서 직원과 학생대표의 참여비율을 교수의 10%로 인정하였다(김종성 외, 2004: 33-36).

를 두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직접 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라 대학소재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후보가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유능한 내·외부 인사를 추대 또는 초빙하기 위하여 별도의 초빙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압축단계로서, 자발적으로 등록한 후보와 초빙한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나 투표를 통하여 압축하는 과정이다. 일정한 범위의 유권자가 직접 투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압축과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1,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를 압축과정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8월 직선제를 포기한 이후에는 직접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 비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천위원회에서 서면심사 및 인터뷰를 통해 후보자를 일정 수로 압축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선정단계로서, 압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2명 이상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추천위원회에서 직접 선정할 수도 있고,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도 있다. 직접선거를 실시하였던 종전의 경우에는 최종 결선투표가 선정단계에 해당하며, 직선제를 포기한 이후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다.

네 번째는 추천 및 임용단계로서, 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정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하고(「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제5항), 총장은 임기만료일 30일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까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해당 대학의 총장후보추천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2편

주요 항목별 비교분석

1. 용어의 정의

(1) 총장후보자

- 총남대는 “총장후보자”를 총장공모에 지원한 자와 총장초빙에 응한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총장공모지원자와 총장후보대상자(지원자 중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총장임용후보자로 등록이 완료된 자)를 구분하는 대학도 있음(창원대, 한밭대).
- 총장공모지원자와 총장후보자(총장공모에 지원 접수한 자 중에서 공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친 자로서 추천위원회에 통지한 자)로 구분하는 대학도 있음(제주대).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추천위원회는...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장후보자는 공모에 지원한 자나 초빙에 응한 자가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 총장으로의 임용을 추천한 사람을 지칭함.
- 따라서 총장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모에 지원하거나 초빙에 응한 자는 총장후보자와 구분하여 “총장후보지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표 2-3> 대학별 총장후보자의 명칭

명칭	해당대학
총장후보지원자	경북대, 전남대
총장임후보자	목포대
총장임용후보등록자	부산대
총장공모지원자	창원대, 한밭대

(2) 총장임용후보자

- 총남대는 “총장임용후보자”를,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인의 총장후보자로 정의하고 있음.
- 공주대는 “총장후보선정자”, 부경대는 “총장임용후보자추천대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선정자는 후보로 선정된 사람보다는 후보를 선정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므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추천위원회는...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은 총장임용후보자가 아니라 총장후보자임.

- 또한 “후보”라는 용어는 임용 또는 선출되기 위하여 나선 사람을 의미하므로, 굳이 “임용후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총장임용후보자보다는 “총장후보자”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본 규정의 명칭도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보다는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함.

(3) 총장후보자관리위원회

- 충남대는 “총장후보자관리위원회”를 총장후보자의 관리와 총장임용 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정의하고 있음.

- 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총장후보자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총장후보를 선정하는 업무이고,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서도 “추천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라는 용어가 적합함.

-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2항에서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용추천을 하는 주체는 추천위원회가 아니라 재직 중인 총장이므로 “추천관리”보다는 “선정관리”라는 용어가 적합함.

<표 2-4> 대학별 관리기구의 명칭

명칭	해당 대학
총장후보추천관리단	강원대
총장임용추천관리단	목포대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강릉원주대, 군산대, 순천대, 안동대, 제주대
총장후보추천관리위원회	서울과기대, 교통대
총장임용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경남과기대, 경북대, 부경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한경대, 해양대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공주대, 창원대, 교원대, 한밭대

(4) 총장후보자초빙위원회

- 충남대는 “총장후보자초빙위원회”를 총장후보자의 초빙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정의하고 있음.
- 강원대는 총장후보초빙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5)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 충남대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를 적격한 총장후보자 중에서 최종 2인을 선정하는 위원회로 정의하고 있음.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도 “추천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교육부에 임용추천을 한 사람은 “총장임용후보자”가 아니라 “총장후보자”이므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표 2-5> 대학별 추천기구의 명칭

명칭	해당 대학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남과기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창원대, 충북대, 한경대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서울과기대
총장추천위원회	서울대

2. 공고기한 및 공모기간

(1) 공고기한

- 충남대는 임기만료일 4개월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임기만료 30일 전까지는 총장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해야 하고, 2개월전까지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전까지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총장후보지원자가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기본 구상을 반영한 공약을 만들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고는 가능한 한 지원서 접수일로부터 장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관리위원회에서 후보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선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구성원들이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장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공고기한을 임기만료일 4개월 전보다는 5개월 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표 2-6> 대학별 공고기한

공고기한	해당대학
6개월전	강릉원주대, 순천대
170일전	경남과기대
5개월전	강원대, 군산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안동대, 창원대, 충북대, 해양대
130일전	한경대, 교원대, 교통대
4개월전	경상대, 공주대, 제주대, 충남대, 한밭대
90일전	전남대
85일전	경북대
60일전	전북대

(2) 공모기간

- 충남대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20일 이상 공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2-7> 대학별 공모기간

공모기간	해당 대학
7일 이상	경북대, 목포대, 전북대
15일	경상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전남대, 충북대, 한경대, 교원대, 교통대
20일 이상	강릉원주대, 강원대, 군산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해양대, 한밭대
30일	공주대
50일 이상	경남과기대

3. 후보자의 자격

(1) 연임 제한

- 충남대는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중임만 허용하거나 단임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후보를 2회 이하로 제한한 대학도 있음.
- 연임 또는 중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표 2-8> 대학별 총장 연임 제한

임기	해당 대학
무제한	강릉원주대, 강원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교통대,
중임허용	경상대, 서울시립대, 교원대, 해양대
중임제한 (단임제)	경남과기대, 경북대, 공주대, 군산대, 순천대, 창원대, 한경대, 한밭대
입후보제한	경북대(2회)

(2) 공무원법상 결격사유

- 충남대는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
-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외에 추가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엄격한 자격제한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2-9> 결격사유 적용법령 및 해당 대학

적용법규	결격사유	해당대학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강원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경대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서울과기대 안동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교원대 해양대 한밭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강릉원주대 경남과기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창원대 교통대

(3) 본교재직경력(내부후보)

- 충남대는 본교재직경력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상당수의 대학에서 내부후보자의 경우에는 본교 재직경력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2-10> 본교재직경력요건별 해당대학

재직경력요건	해당 대학
10년 이상	강릉원주대, 공주대, 목포대(또는 30인 추천), 안동대, 전북대, 제주대, 교통대, 해양대
무제한	강원대, 경남과기대, 경북대, 경상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전남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교원대, 한밭대
5년 이상	군산대

-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본교 재직경력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의 교수경력이나 해당분야에서의 전문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즉 군산대는 해당분야 20년 이상, 충북대는 4년제대학 5년 이상, 군산대·순천대·한경대는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 본교 재직경력에 대학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적절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력이 반드시 능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응모의 제한요건을 가능한 한 적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추천인

- 충남대는 후보로 지원할 때 별도의 추천인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 많은 대학에서 추천인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내부지원자의 경우에는 일정수 이상의 추천인을 요구하는 대학도 다수 있음.

<표 2-11> 대학별 추천인수

내·외부		추천인	해당 대학
동일		불필요	경남과기대, 경북대, 군산대, 서울대, 인천대, 전북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5인 이상	서울시립대, 순천대(5년 이상 재직자만 추천), 교원대
		10인 이상	공주대, 한경대(중복 허용)
		15인 이상	강릉원주대
		20인	안동대, 제주대
		20-25인	교통대
		30인 이상	강원대(초빙 제외), 부경대, 목포대(또는 10년 재직, 3-5인 공개추천 별도), 서울과기대, 해양대
차별	내부	불필요	경상대, 부산대
		30인 이상	전남대(5-7인 공개추천 별도)
	외부	불필요	전남대
		30인 이상	경상대, 부산대

- 과거 총장을 내부구성원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던 시기에는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일정수 이상의 추천인을 필요로 하였으나, 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의 선정제도 하에서는 별도의 추천인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대학이 늘어났음.

- 그러나 구성원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총장후보를 선출할 경우에는 어차피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구성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나,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과정에서는 전체 구성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내부구성원의 직접적인 의사를 보다 많이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상당수, 적어도 30인 이상의 추천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도 일정수 이상의 추천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사실상 후보지원자의 추천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과도한 학내 파벌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복추천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무제한적인 중복추천을 허용하면, 후보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예: 2인 이하) 중복추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외부지원자 또는 초빙을 통한 지원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내부 구성원의 추천을 받기가 어렵고, 공모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초빙”이라는 절차가 어느 정도 “추천”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추천인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기탁금 또는 발전기금

- 충남대는 3,000만원의 발전기금을 납부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2-12> 기탁금(발전기금) 액수별 해당대학

기탁금(발전기금)		해당 대학
규정 없음		경상대, 군산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창원대, 충북대, 교통대
발전기금 (무반환)	2,000만원	강원대(외부 제외), 부산대, 안동대, 전남대, 제주대, 교원대(외부 제외)
	3,000만원	충남대(외부 제외), 경북대(외부 포함)
기탁금	1,000만원	전북대
	2,000만원	강릉원주대, 공주대, 목포대, 순천대, 한경대, 해양대, 한밭대
	3,000만원	경남과기대

- 기탁금은 후보의 과도한 난립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득표율을 획득하여야만 반환하는 것이지만, 발전기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에 대하여 과도한 실질적 제한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자격탈락, 등록무효, (귀책사유없는) 사퇴 등에만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기탁금이 아닌 발전기금이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발전기금 납부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기탁금으

로 전환하여 일정한 득표율을 확보하면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함.

(6) 외부인사 경력요건

- 충남대는 별도의 규정 없음.
-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충남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박사학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 경력이나 일정 연한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표 2-13> 외부인사 경력요건별 해당대학

경력요건	해당대학
규정 없음	강원대, 경남과기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창원대, 충남대, 한경대, 교원대, 교통대, 해양대, 한밭대
박사학위	강릉원주대, 순천대, 안동대(명박 제외), 전남대(추가경력 필요), 전북대(명박 포함), 제주대(추가경력 필요)
공무원경력	강릉원주대(1급이상), 제주대(1급이상 또는 그에 상응한 경력)
5년 이상	충북대(4년제 대학에서의 교육경력)
20년 이상	군산대(해당분야)

- 일부 대학의 경우 박사학위 외에도 아래와 같은 특수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표 2-14> 외부인사 특수요건

대학	특수요건
전남대	○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선거로 당선된 공무원이나 정무직 공무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 -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인 - 위의 직에 있었던 자
제주대	○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 필요 - 박사학위소지자(명예박사학위 포함) - 1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한 자

- 과도한 경력요건을 부여하는 것은 외부인사의 응모를 제한하고, 초빙의 폭을 제한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음.

(7) 응모 제한

- 충남대는 응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경북대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횟수를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응모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과거 직선제 시절에 후보의 난립과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응모 제한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두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초빙 또는 공모기구

(1) 기구 설치 여부

- 충남대는 “관리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 모집 공고후 10일 이내에 초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초빙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많은 대학들은 초빙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관리위원회에서 초빙기능을 수행하거나, 별도의 초빙기능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또한 학외총장후보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만 “초빙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통하여 초빙여부를 별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학도 있음.

<표 2-15> 초빙기구의 설치 여부

구분	해당 대학
미설치	강릉원주대, 경남과기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충북대, 한경대, 교원대, 해양대, 한밭대
설치	강원대, 경북대(임의), 군산대, 서울과기대(공모위원회), 서울대(임의), 안동대, 인천대(임의), 제주대(공모위원회), 충남대, 교통대(임의)

- 충남대는 “공모 결과 학외총장후보지원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학외총장 후보자의 초빙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초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외총장후보자를 초빙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총장후보지원자에 반드시 학외후보지원자를 포함시켜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적절한 학외후보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반드시” 학외후보지원자를 초빙해야 한다면,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를 억지로 초빙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고, 때로는 후보의 물색과정(searching process)에 지나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수도 있음.
- 따라서 현행과 같이 학외총장후보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그리고 적절한 학외후보자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초빙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기구의 명칭

- 충남대는 “총장후보자초빙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일부 대학에서는 초빙위원회가 아닌 공모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공모위원회는 외부인사의 초빙뿐 아니라 내부인사의 공모까지도 관장

하는 기구임.

- 초빙기능은 공모 결과 학외총장후보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므로 공모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와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후보”와 “후보자”는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위하여, 그리고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도 “후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보다는 후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표 2-16> 초빙기구 명칭별 해당대학

명칭	해당 대학
총장후보(자)초빙위원회	강원대, 경북대, 군산대, 안동대, 서울대, 인천대, 충남대, 교통대
총장후보(자)공모위원회	제주대, 서울과기대

(3) 설치기한

- 충남대는 “총장임용후보자 모집 공고후 10일 이내에” 초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초빙위원회를 공모 공고 전에 설치하는 대학과 공모 공고 후에 설치하는 대학으로 나누어짐.
- 외부인사의 초빙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초빙위원회를 일찍 구성하여 미리 초빙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외부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초빙여부를 결정한 후에 초빙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굳이 초빙위원회를 미리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표 2-17> 초빙기구 설치기한별 해당대학

설치기한	해당대학
임기만료 6개월전	강원대, 군산대, 서울과기대, 안동대, 제주대(?), 교통대
공모공고(임기만료 85일)일 전	경북대
공모공고(임기만료4개월전)후 10일 이내	충남대
공고 1개월 이내	서울대

(4) 구성주체 또는 소속

- 충남대는 관리위원회가 초빙위원회를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총장이 초빙위원을 임명하는 대학은 충남대와 부산대뿐임. 실질적으로는 관리위원회에서 구성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총장이 초빙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위원회에서 구성하고 관리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관리위원장이 아니라 관리위원회가 구성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위원장보다는 관리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충남대는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총장임기만료일 2개월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가 초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나치게 촉박하므로, 관리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교수평의회 또는 교수회에서 초빙위원회를 구성하는 대학도 있으나, 과거 총장을 직선하고 교수회에서 총장선출과정을 주관하였을 때에는 교수회가 주도하여 초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으나, 현재와 같이 교원, 직원, 학생, 외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제도 하에서는 다양한 대학구성원이 포함된 관리위원회에서 초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표 2-18> 초빙기구의 구성주체별 해당대학

구성주체	해당 대학
관리위원회	충남대, 경북대,
관리위원장	강원대, 군산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안동대, 제주대
추천위원회	서울대, 인천대
교수평의회	교통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추천하고, 위원장이 구성)

(5) 규모 및 참여집단

- 충남대는 초빙위원회를 11인으로 구성하며, 교원위원 5인, 직원위원 2인, 학생위원 1인, 학외위원 3인으로 구성함.

(가) 규모

- 별도의 초빙위원회를 두고 있는 대학은 대체로 9-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 구성집단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위원 등이 있음.
- 능력과 자질을 갖춘 외부인사를 초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대학의 특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대외적 활동이 활발한 교원집단이 주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지만, 어느 하나의 구성집단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원위원은 전체 위원회의 절반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외부인사의 탐색과 초빙은 내부인사의 지원과는 매우 상이하므로, 외부위원의 비중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교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6인) 중에서 절반 정도(3인)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나) 참여집단

- 별도의 초빙위원회를 두고 있는 대학들은, 교원과 직원, 그리고 외부위원

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학생위원을 두는 대학은 충남대, 강원대, 군산대, 서울과기대임.

- 초빙위원회는 공모 결과 학외총장후보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초빙 여부를 결정하고 초빙 요건을 확정하며, 실질적으로 유능한 학외후보자를 초빙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인 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어느 정도 필요하며, 사회저명인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구축한 인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대학의 주된 구성원 중의 하나인 학생의 참여는 실질적인 역할보다는 참여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학생의 참여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2-19> 초빙위원회 참여집단

대학	규모	참여집단(추천)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충남대	11	5(교수회)	2(직원협의회)	1(총학)	3(관리위원장)
강원대	13	6(단과대)	2(직원협의회)	1(총학)	2(총장)
					2(평의회)
경북대	5	5(관리위)	-	-	-
군산대	13	6(단과대)	4(전체직원회의 선발)	1(총학 선발)	-
		2(교수평의회)			
부산대	10	교수회장(당연직)	1(직협회장) 세칙에는 없음	-	-
		4(교수회장)			
		5(총장)			
서울과기대	12	8(단과대)	1(직원협의회)	1(총학)	1(총장)
			1(조교협의회)		2(평의회)
서울대	9	9/2 이하	-	-	9/2 이상
안동대	11	추후 합의로 비율 결정		-	
인천대	9	-	-	-	9/3 이상
제주대	9	8	1	-	-
교통대	9	2(교수평의회)	2이하(직원단체)	-	-
		50이하(초빙위원장)			

(다) 추천기관

- 충남대는 전체 교수회, 직원협의회, 총학생회, 그리고 관리위원장이 각각 위원들을 추천 또는 제청하고 있음.

① 교원위원의 추천기관

- 충남대와 부산대는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함.

- 교원위원의 경우에, 단과대학 교수회의 추천을 거쳐 추천으로 선정하는 대학(강원대, 군산대, 서울과기대)도 있고, 교수평의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추천하고 위원장이 나머지를 추천하는 대학(교통대)도 있고, 관리위원회에서 방식과 절차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대학(제주대)도 있음.

- 다만 교수회에서 추천할 경우에, 전체 교수회를 소집해야 하는지, 전체교수회에서 교수평의회에 위임해야 하는지, 또는 교수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해야 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함.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체 교수회에서 직접 추천하는 것이지만, 전체 교수회를 소집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고, 전체 교수회에서의 집단적 의사결정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수평의회나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외부총장후보자의 탐색과 초빙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보다는 교수평의회에서 직접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현행 교수회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전교 교수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 권한은 전교 교수평의회에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초빙위원의 추천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다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초빙위원의 추천은 전교교수회에서 교수평의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세칙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교원초빙위원의 자격요건을 부교수 이상(경북대) 또는 5년 이상 재직한 교원(안동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빙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추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굳이 자격

요건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② 직원위원의 추천기관

- 충남대의 직원단체는 직원협의회, 공무원노조충남대지부, 기성회노조 등이 있으나, 공무원노조나 기성회노조는 일부직원만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충남대 직원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단체는 직원협의회임.
- 따라서 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교원위원의 추천과 마찬가지로 직원협의회 총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직원협의회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학생위원의 추천기관

- 충남대 총학생회의 구성은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있음.
- 총학생회도 전체교수회나 직원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세칙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④ 학외위원의 추천기관

- 충남대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학외위원 3인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단 임명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이라는 뜻이며, 위촉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이라는 뜻으로서, 위촉에 비해서 임명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일이거나 상시 일할 자리나 해야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쓰이는 경향이 강함.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는 임명보다는 위촉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판단됨.
- 학외위원은 현행과 같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방식과, 총장이 추천하고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식이 있음.
- 충남대의 경우에는 총장의 중임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현 총장이 다시 공모에 지원할 수도 있음. 물론 총장이 공모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부터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지만, 총장이 최종적으로 임명 내지 위촉 권한을 가지는 것보다는, 다른 대학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일정수의 외부위원에 대한 추천권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6) 의결정족수

-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임.
- 다만 위원의 기피·회피·해촉에 대한 의결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보다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관리기구

- 충남대는 총장이 임기만료일 6개월 전까지 총장후보자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원위원 7인, 직원위원 3인, 학외위원 1인 등 총 11인의 학내외위원으로 구성함.

(1) 명칭

- 충남대는 “총장후보자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총장후보자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총장후보를 선정하는 업무이고,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서도 “추천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라는 용어가 적합함.

<표 2-20> 관리기구의 명칭별 해당대학

관리기구의 명칭	해당대학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강릉원주대, 군산대, 순천대, 안동대, 제주대
총장후보자추천관리단	강원대
총장후보자관리위원회	충남대
총장추천관리위원회	교통대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경남과기대, 경북대, 공주대, 창원대, 교원대, 한밭대
총장임용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부경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한경대, 해양대
총장후보공모위원회	경상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총장임용후보관리단	목포대
부재	서울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2) 구성기한

- 충남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은 총장 임기만료일 6개월전에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2-21> 구성기한별 해당대학

구성기한 (임기만료전)	해당 대학
8개월전	순천대
7개월전	강원대, 군산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안동대, 제주대, 해양대
6개월전(180일)	강릉원주대, 경남과기대, 경상대, 부산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교통대, 한밭대
5개월전(150일)	공주대, 교원대
140일전	한경대
4개월전(120일)	전남대
100일전	전북대
3개월전(90일)	경북대
규정 없음	목포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3) 구성주체

- 충남대는 관리위원을 총장이 직접 임명하거나 일정한 단체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관리위원을 총장이 구성하지만, 교수회 또는 교수평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총장에게 통보하는 대학도 있음.
-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만 규정하고, 구성주체를 명시하지 아니한 대학도 있음.

<표 2-22> 구성주체별 해당대학

구성주체	해당대학
총장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교원대, 교통대, 해양대, 한밭대
교수회 의장	경북대, 충북대
교수평의회 의장	목포대(의장 추천후 총장 임명), 안동대(총장에게 통보)
규정 없음	경남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창원대, 한경대

- 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전과정에 걸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만큼 구성주체와 구성단위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총장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해야 하며, 교수회가 주체가 되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일부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여, 상호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과거 총장직선제 시절에는 교수회가 선거과정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교수회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현재에는 교수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주도하거나 해야 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관리위원은 대학의 장인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학의 여러

구성집단으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도록 하며, 동시에 추천없이 총장이 직접적으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판단됨.

(4) 규모 및 참여집단

- 총남대는 11인의 학내외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위원 7인, 직원위원 3인, 학외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직접 임명하거나 추천을 받아 임명함.
- 모든 대학에서 관리위원회에 학생위원은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추천위원과 달리 관리위원은 총장후보자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므로,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위원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관리위원회의 규모는 대체로 7-13인 정도이지만, 25인(경북대), 35인(전북대), 19인(제주대), 20-30인(충북대)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음.
- 추천위원회는 다양한 구성집단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위원회의 규모가 큰 것이 바람직하지만, 관리위원회는 선정과정을 관리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모가 크면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일부 대학(강원대, 목포대)에서는 관리기구를 위원회조직이 아닌 행정기구로 규정하여 “총장후보추천관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관리위원회의 규모는 현행과 같이 11인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참여집단으로는 총남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교원위원과 직원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있으며, 총남대는 유일하게 외부위원으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추천 받아서 임명하고 있음.
- 그러나 총장후보자의 선정과정이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므로, 굳이 선거관리업무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선관위로부터 외부위원을 추천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 학외위원을 배제한다면, 교원위원 7인, 직원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 위원 1인을 추가로 배정하여야 하는 바, 교원위원의 수를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관하여 교수회와 직원협의회
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2-23> 대학별 관리기구 참여집단 및 규모

대학	규모	참여집단(추천-자격)		
		교원	직원	외부
충남대	11	3(총장)	1(총장)	1 (유성구 선관위)
		4(교수회)	2(공무원직장협의회· 대학노조·직원협의회)	
강릉원주대	7	6(단과대 교수회장이 추천한 10명 중 총장 임명)	1(직원연합회)	
강원대	7-9	총장 임명 (평의원 20이내 가능)		
경남과기대	11	8(교수회)	3(직원단체)	
경북대	25	20(교수회장이 평의원 중에 서 무작위추첨-부회장 중 1 인 관리위원장)	일반직3(직원협의회)	
			기성회직1(기성회단체)	
			조교1(조교협의회)	
경상대	12	10(교수회장이 의견 수렴)	2(교수회장이 의견수렴)	
공주대	11	7(단과대학장-단과대교수회 추천)	2(직원회 운영위원회-추첨)	
		2(교수회평의원회)		
군산대	13	6(각 단과대)	4(전체직원회의)	
		2(교수평의회-평의원)		
목포대		16(교수평의회-평의원-부의 장·사무국장·편집위원장·분 과위원장은 당연직)	5(직원협의회장 -임원 포함)	
		10(총장-교무위원-1처장 포함)		
부경대	7-11	7-11(총장-평의원 2인까지 가능)		
부산대	10	교수회장(당연직)	1(직협회장) 세칙에는 없음	-
		4(교수회장)		
		5(총장)		
서울과기대	7-10	7-10(단과대학별 2인-평의 원 2인까지 가능)		
순천대	9	7(단과대에서 2명씩 추천하 여 교수회에서 선정)	2(직원연합회에서 선정)	
안동대	11	미정(단과대학과 교수회평의원회)	미정(직원단체)	

전남대	13	11(교수평의회 의장-부의장, 평의원4, 단과대5)	2(직원들이 정하는 방식)	
		1(총장-처장)		
전북대	35	30(단과대학 교수회별 2인)	5(직원협의회)	
제주대	19	17(단과대학별 1인을 교수 회의를 통해 선발하고 학장이 추천-교수회장은 당연직)	2(공무원직장협의회)	
창원대	10	8	2	
충북대	20-30	단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에서 추천	직원회에서 추천	
한경대	9	4(총장-부교수 이상)		
		5(교수회-부교수 이상)		
교원대	5-7	단과대학 및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추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	
교통대	7	6(교수평의회-여성 1인 이상, 단과대학당 1인 이하)	1(직원단체)	
해양대	12	8(대학별 객관·공정한 방법으로 2인)	2(전체직원회의에서 객관·공정한 방법으로 추천)	
		2(교수회)		
한밭대	14	10(단과대 교수회에서 객관·공정한 방법으로 선발)	4(직원협의회)	

(5) 추천기관 및 추천절차

(가) 교원위원의 추천

-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원관리위원회는 대체로 교수(평의)회 또는 단과대학 교수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고 있음.
- 교수(평의)회 또는 단과대학 교수회의 추천없이 총장이 자율적으로 관리위원의 일부를 임명하는 대학은 충남대, 강원대,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 한경대뿐임.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리위원을 총장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교수와 직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제한을 두어야 하므로, 총장의 자율적 임명권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원위원은 초빙위원과 마찬가지로 교수회에서 추천하여야 하지만, 교수회에서 추천할 경우에, 전체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야, 전체교수회에서 교수평의회에 위임해야 하는지, 또는 교수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해야 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함.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체 교수회에서 직접 추천하는 것이지만, 전체 교수회를 소집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고, 전체 교수회에서의 집단적 의사결정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수평의회나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교수회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전교 교수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 권한은 전교 교수평의회에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리위원의 추천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관리위원의 추천은 전교교수회에서 교수평의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세칙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일부 대학에서는 단과대학에서 추천하고 교수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추천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총장후보자의 선정관리업무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수렴도 중요하지만 관리의 효율성도 확보해야 하므로, 교수회에서 적절한 교원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나) 직원위원의 추천

- 직원위원의 경우에는 총장이 자율적으로 일부 위원을 임명하는 대학은 충남대뿐이며, 다른 모든 대학에서는 직원협의회 또는 직원연합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임명하고 있음.
- 교원과 달리 총장과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직원은 총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총장이 관리위원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다만 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도, 교원위원의 추천방식과 마찬가지로 직원협의회 총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직원협의회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6) 당연직 위원 및 자격요건

-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평의)회 임원을 당연직 관리위원 또는 위원장으로 지정하고 있음.
- 부경대는 교수회장을 당연직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순천대와 제주대는 교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경북대는 교수(평의)회 부회(의)장을 당연직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하고 있고, 목포대는 교수평의회 부의장을 당연직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무국장, 편집위원장, 분과위원장을 모두 당연직 관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있음.
- 충남대는 당연직 관리위원을 지정하고 있지 않음.
- 과거 총장직선제 시절에는 교수회에서 선출과정을 주관하였기 때문에 교수회 임원들이 관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한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에는 교수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주도하거나 해야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관리위원회에 교수회 임원을 당연직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교수회 임원을 관리위원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위원에 교수회 임원을 포함시키면 될 것임.

6. 검증기구

- 충남대는 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격여부를 조사하여 추천위원회에 통지함.
-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관리기구가 자격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심사(조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대학이 있음.
- 부산대는 총장임기만료 4개월 이전까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 진술, 면접, 자문 등을 거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1주일 전까지 총장후

보공모위원회에 검증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창원대는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윤리검증을 의뢰함.

<표 2-24> 검증기구 명칭별 해당 대학

명칭	해당 대학
관리위원회	강릉원주대, 공주대, 전남대, 해양대 등 대부분의 대학
초빙위원회	강원대, 군산대, 안동대,
총장임용검증위원회	부산대,
연구윤리위원회	창원대

- 검증기구뿐 아니라, 검증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어도 세칙에 명시적으로 두어야 함.

- 세칙 예시

제00조(총장후보지원자의 검증) ① 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지원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할 수 있다.

1. 상벌에 관한 사항
2. 경력 및 자료의 진위와 누락에 관한 사항
3.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총장후보지원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명예와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00조(검증절차) ① 관리위원회는 검증을 위하여 총장후보지원자에게 질문서를 보낼 수 있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장후보지원자의 소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총장후보지원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위원회는 검증 사항 중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감정인의 감정 또는 관련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지원자에 대한 검증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보고서의 최종 채택 여부는 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7. 행정지원기구

- 충남대는 “총장은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 충남대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행정지원 기구를 별도로 설치함.
- 부산대의 경우 “총장임용후보선출행정지원실”을 설치하여, 공모위원회, 검증위원회, 추천위원회의 모든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대는 “총장선출행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별도의 행정지원기구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8. 추천위원회

(1) 명칭

- 충남대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
- “총장추천위원회”라는 명칭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만 사용하고 있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도 “추천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교육부에 임용추천을 한 사람은 “총장임용후보자”가 아니라 “총장후보자”이므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표 2-25> 추천기구 명칭별 해당 대학

추천기구 명칭	해당 대학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충남대, 군산대, 제주대, 해양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남과기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충북대, 한경대, 교원대, 교통대, 한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총장추천위원회	서울대, 인천대

(2) 구성기한

- 충남대는 총장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용추천후보를 선정하는 당일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대학(부산대, 전북대)도 있음. 이 경우, 추천기한이 임기만료일 30일전(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이므로 추천위원회의 구성기한은 임기만료일 30일전이라고 볼 수 있음.
- 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총장후보자를 선정한 후에 지체없이 교육부에 추천한다고 해도, 선정과정에 대하여 상당 기간을 두어 이의신청을 받고 이에 대하여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2개월전까지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오히려 추천위원회를 지나치게 일찍 구성하면, 선정기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게 되므로, 후보지원자가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음.

<표 2-26> 구성기한별 해당 대학

구성기한 (임기만료전)	해당 대학
6개월전	서울대,
5개월전	인천대
150일전	서울시립대(150일전까지 위원추천 의뢰, 2주일 내

	에 추천하고, 추천 완료후 1주일 이내에 소집)
4개월전	강원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100일전	경남과기대, 한경대
3개월전	강릉원주대, 경상대, 안동대, 교원대, 한밭대
2개월전	충남대, 공주대, 창원대
50일전	교통대, 해양대
45일전	경북대, 전남대
30일전	부산대, 전북대
임기만료일 전년 12월	군산대
접수마감일 이후 20일 이내	순천대, 제주대, 충북대

(3) 구성주체 또는 소속

- 충남대는 총장후보자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대학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규정이나 세칙에서 구성주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추천위원회를 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대학(경남과기대, 목포대, 한경대)도 있음. 또한 관리위원회의 기능에서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항목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밖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경남과기대)” 또는 “총추위 위원선정의 관리 및 총추위 활동의 지원, 또는 기타 총장임용추천과 관련된 관리 및 지원(목포대)” 또는 “그 밖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한경대)”의 하나로 해석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추천위원회 구성의 중요성에 비추어보아 규정에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공모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한 대학(경상대, 부산대, 서울과기대)에서는 공모위원회가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위원회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립대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상의 “대학의 장의 임용”

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국립대학과 상이함.

<표 2-27> 구성주체별 해당 대학

구성주체	해당 대학
관리위원회	충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공모위원회), 공주대, 군산대, 부경대, 부산대(공모위원회), 서울과기대(공모위원회),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북대, 교원대, 교통대, 해양대, 한밭대
무규정	경남과기대, 목포대, 한경대
이사회·평의원회	서울대, 인천대
교수회·총학·총동창회	서울시립대

(4) 규모 및 참여비율

- 충남대는 교원 및 직원 34명, 조교 1명, 학생 2명, 학외위원 13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하되, 교원과 직원의 비율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체위원의 수는 48명인 대학이 12개, 50명인 대학이 8개임.
- 조교를 별도의 구성집단으로 명시한 대학은 충남대, 해양대, 한밭대 등 3개 대학뿐이며, 경북대와 서울과기대는 직원과 조교를 하나의 구성집단으로 편제하였음. 2014년 4월 1일 현재 충남대학교의 조교는 190명에 달하는 바, 별도의 대학구성집단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추천위원회의 규모와 구성집단이 매우 상이함.
- 추천위원회의 인원이 48명 이상인 대학 중에서 한경대(6명), 교통대(5명), 한밭대(6명)만 직원의 수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직원의 수

를 4명으로 규정하고 있음(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해양대 등).

- 대학원생을 별도의 구성집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학은 충남대가 유일함. 대학원생도 대학의 구성원이며,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대학원 총학생회라는 대표기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의 숫자는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5,374명으로, 적지 아니한 규모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성집단으로 인정하여 추천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 2-28> 대학별 추천위원회 규모 및 참여집단

대학	총원(여성)	참여인원(여성)				
		교원	직원	조교	학생	외부
충남대	50(10)	34		1	2	13
강릉원주대	50(10)	31(7)	4	－	2	13(3)
강원대	50(10)	38(8)	－	－	－	12(2)
경남과기대	48(10)	36				12
경북대	48(10)	31(7)	4(1)		1	12(2)
경상대	48(10)	31(7)	4(1)	－	1	12(2)
공주대	50(10)	31(6)	4(2)	－	2(1)	13
군산대	48(10)	36				12
목포대	34(7)	21	3(1)	－	1	9(4)
부경대	50(10)	35(9)		－	－	15
부산대	50(10)	32(6)	4(2)	－	1	13(2)
서울과기대	40(8)	27(4)	3(1)		－	10
서울대	30	20				10
순천대	48(10)	31(6)	4(1)	－	1	12(2)
안동대	48(10)	36(8)				12(2)
인천대	15	10				5
전남대	50(10)	32(7)	4(1)	－	1	13
전북대	48(10)	31(5)	4(1)	－	1	12(4)
제주대	48(10)	31(4)	4(1)	－	1	12
창원대	48(10)	36				12

총복대	10-50	세척에 위임				
한경대	48(10)	30(6)	6(1)	-	-	12(3)
교원대	20(4)	12	2	-	1	5
교통대	48(10)	30(7)	5(1)	-	1	12(2)
해양대	50(10)	31(3)	4(2)	1	1	13(6)
한밭대	48(10)	28	6	1	1	12

(5) 교원위원의 선발방식

- 충남대는 전공단위를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의약계열 등 3개의 계열로 구분하여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발하고 있음.

(가) 배정단위

- 충남대는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의약계열 등 3개의 계열로 구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체로 단과대학(원)별 구성원비율에 따라 추천위원의 수를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고 있음.

- 학문단위로 묶는 경우에는 3-5개 정도의 분류를 적용하고 있음(강원대, 부산대).

- 단과대학이나 학문단위를 분류하지 않고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대학도 있음(순천대, 한경대, 교통대, 해양대). 그러나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진행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구성집단별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일정한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배정기준과 인원을 비롯한 구체적 내용을 세척에 위임한 대학도 상당수 있음.

- 학문단위로 묶는 경우에 구성원수와 배정위원수가 반드시 정수로 나누어 지지는 아니하므로, 소수점 이하의 인원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함. 다만 소수점 이하의 인원에 대한 배정문제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복잡하므로,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2-29> 교원위원 계열구분별 해당대학

계열구분	해당대학
인문사회·이공·의약 계열	충남대
인문사회·자연·공학·기타 영역	강원대
인문사회·자연·공학·의학·예체능 계열별/직급별	부산대
단과대학(원)	강릉원주대, 경남과기대, 경북대, 공주대, 목포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한밭대
전체 구성원	순천대, 한경대, 교통대, 해양대

(나) 여성위원의 선발방식

- 충남대는 3개의 전공단위별로 여성위원의 의무비율인 20%를 배정하고 있음. 다만 교원과 직원간의 배정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성 교원위원의 숫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음. 또한 전공단위별 여성위원의 수가 정하여진다고 해도, 전공단위 안에서 여성위원을 선발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공주대는 전체 여성교원을 대상으로 배정된 여성위원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남성위원을 단과대학(원)의 구성원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강원대는 전공단위별로 여성위원의 수를 배정하여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남성위원을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전북대는 여성교원이 2/3 이상인 단과대학에 여성위원을 우선 배정하고, 그 단과대학 소속 남성교원은 기타분야 소속 남성교원과 같은 단위에 포함시켜서 배정하고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그 외에 전공단위별로 배정된 여성위원의 수를 채울 때까지 추첨을 반복하는 방식과, 전공단위별 남성교원과 여성교원을 각각 분리하여 배정된 위원을 추첨하는 방식이 있음.
- 전공단위별로 남성교원과 여성교원을 각각 분리하여 80%와 20%의 위원

을 추천으로 선정하는 방식은, 여성교원을 20%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교육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위원을 20% 이상 배정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함.

- 따라서 전공단위별로 성별 구분없이 무작위 추천을 통하여 일단 선정하되, 여성위원의 비율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20%에 달할 때까지 계속 추천·선발하여 후순위의 남성위원을 대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선발절차

- 무작위 추천에 의하여 선발하면,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고, 여건상 회의에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석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임. 다만 사전적 동의방식과 사후적 수락방식이 있음.

- 사전동의방식은 사전에 추천위원회에의 참여 여부를 조사하여, 불참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교원에 대하여만 추천을 하고, 선발되면 의무적으로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강원대, 서울과기대, 순천대, 안동대, 교통대)임.

- 사후수락방식은 추천으로 선발된 교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수락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아니하면 추천을 계속하여 다른 교원을 선발하는 방식(경북대, 공주대)임.

- 사후수락방식은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추천으로 선발된 위원이 모두 거절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또한 어느 정도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위원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사전동의방식을 통하여 추천위원회에 참석이 가능한 교원들만을 대상으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자격요건(배제) 및 신분보장

- 충남대는 추천위원의 결격사유로서 ①총장후보자 혹은 총장후보자 지원에 정자, ②학무위원, ③휴직자, 정직자,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자, 공로연수자 등을 들고 있으며,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①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

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②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③제14조(위원의 의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본인 또는 배우자와 5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자가 총장후보자가 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충남대는 “본인 또는 배우자와 5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자가 총장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해촉 사유가 아니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해촉될 수 있다는 규정은 반대로 해촉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배제할 경우에는 해촉이 아니라 제척사유로 규정하여야 함.

-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회(또는 교수평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교수회는 이미 관리위원회의 구성에서 주된 역할(교원위원의 추천)을 수행하고 있고, 학무위원도 배제하고 있으므로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교수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관리위원을 추천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충남대는 외부후보자를 초빙해서 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초빙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는 바, 외부후보자를 추천한 초빙위원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므로, 초빙위원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연구년제 교원과 해외파견 중인 교원도 사실상 추천위원회의 참여가 곤란하지만, 추천위원회의 소집일에 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본인이 적극적인 불참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원천적으로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창원대는 본부보직자의 배제요건으로 현 총장이 후보로 등록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 즉 현직 총장이 후보로 등록한 경우에 총장이 임명한 교무위원, 본부부처장, 국제교류원장, 종합인력개발원장, 대학발전협력원장,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평생교육원장, 학생생활관장 등을 배제하고 있음. 또한 전북대와 제주대는 부처장·부단장·부분부장, 부학(원)장까지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순천대와 전북대도 부속시설의 장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임명직인 부처장·부단장·부분부장, 부학(원)장, 부속시설의 장을 결격사유

로 규정하는 것이 일응 타당할 수도 있으나, 이미 31명의 학무위원을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0여명에 달하는 부처장·부단장·부분부장, 부학(원)장, 부속시설의 장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표 2-30> 추천위원 결격사유별 해당 대학

결격사유	해당대학
총장	전남대
교수회장(부회장) 교수평의회 의장(부의장)	강릉원주대, 경북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교원대
교수회 임원	공주대, 교통대
관리위원회 위원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남과기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한경대, 교통대, 해양대, 한밭대
초빙위원회 위원	군산대
연구년(안식년)제 교원	경남과기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한밭대(국외)
후보추천자	공주대, 목포대, 전남대
징계처분중이거나 징계중인 자	부산대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	서울대, 순천대, 창원대, 충북대, 교원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	충북대
부처장·부단장·부분부장, 부학(원)장	전북대, 제주대
부속시설의 장	순천대, 전북대

- 적극적 요건으로서 부교수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 대학(강원대, 부경대),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 대학(서울과기대),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 대학(순천대)도 있음. 물론 재직경력이 짧아서 학내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을 추천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1학년을 포함한 학부 재학생까지도 배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교원에 대

해서만 3년 내지 5년의 재직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추천위원은 대학구성원의 하나라는 자격에서 참여하는 것이지, 반드시 대학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㉞ 제척·기피·회피

- 충남대는 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는)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제15조)과 위원에 대한 기피에 관한 규정(제16조)만을 두고 있음.
-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① 제척

- 일반적인 제척사유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와 5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자가 총장후보자가 된 경우”를 들고 있음(충남대, 강릉원주대, 경남과기대, 군산대, 목포대, 서울대, 제주대, 충북대, 한경대, 해양대).
- 그러나 상당수의 대학에서는 “배우자이었던 자”와 “...5촌 이내의 친족관계이었던 자”도 포함시키고 있음(강원대, 경상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교통대).
- 또한 “5촌 이내”가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규정한 대학도 있음(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 일부 대학에서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범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제척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공주대, 한밭대), 또한 친족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사람”으로 규정한 대학도 있음(교원대).
- 민법 제777조에서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들고 있음.
- 일반적으로 민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므로, 친족의 범위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다소 넓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5촌 이내의 친족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 다만 배우자이었던 자와 친족관계이었던 자를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됨. 이혼 등으로 인하여 친족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졌다고 간주해야 하므로 배우자이었던 자와 친족관계이었던 자를 배제할 근거는 희박하다고 판단됨.

② 기피

- 충남대 규정 제16조에서는 “총장후보자는 특정한 관리위원회 위원이 자격조사 등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규정을 초빙위원회와 추천위원회 위원에 준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한밭대는 제척·기피 규정을 두고 있는 관리위원회와 달리,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척규정만 두고 있고, 한경대는 제척·회피 규정만 두고 기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교통대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거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 또는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지원자인 경우”에만 해촉, 기피 또는 제척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기피 및 회피의 사유를 매우 좁게 한정하고 있음.

- 추천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위원회 소집이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에 대한 후보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충분히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으며, 불충분한 심의에 대한 사후적 이의 제기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피나 회피의 사유를 비교적 좁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추천위원회와 달리 관리위원회나 초빙위원회는 비교적 오래 전에 구성되므로,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의 사유를 추천위원회보다 넓게 두는 것이 가능함.

③ 회피

- 충남대에서는 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추천위원회 위원이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경남과기대, 경상대, 공주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순천대, 안동대, 충북대, 교원대 등).

-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초빙위원회 위원에 적용되는 제척·기피·회피규정 중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에는 제척 및 기피 규정만 준용하고, 회피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고 있고(강원대·경북대·군산대·창원대·해양대), 한밭대는 제척규정만 있고, 회피·기피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대학도 상당수 있음(강릉원주대, 목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 추천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위원회 소집이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에 대한 후보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충분히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으며, 불충분한 심의에 대한 사후적 이의 제기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피나 회피의 사유를 비교적 좁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추천위원회와 달리 관리위원회나 초빙위원회는 비교적 오래 전에 구성되므로,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의 사유를 추천위원회보다 넓게 두는 것이 가능함.

(바) 선발방식

- 충남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에서 교원위원을 선발할 때에 무작위 추첨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무작위 추출은 본래 모집단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일정한 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모집단을 대신하려는 것임. 이 경우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모집단과 유사하게 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모집단의 수가 정해진 경우에 최저표본의 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름.

$$\text{표본오차} = \sqrt{\frac{N-n}{nN}}$$

N=모집단수, n=표본수

- 충남대의 교원수는 2014년 4월 1일 현재 909명이며, 교원위원의 수가 30명이라고 한다면, 표본오차는 무려 0.1794임. 만약 표본오차를 0.05로 설정할 경우에 모집단(교원수)이 909명이라면, 모집단을 대표할만한 최저표본수(교원추천위원)는 278명임. 그러나 교원위원은 현재 34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음.

-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는 대학(순천대, 한경대, 교통대, 해양대)도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은 단과대학 또는 학문단위별로 계열을 나누어 추첨하는 층화추출법을 사용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모집단에 관하여 추측할 경우 무층화임의추출법(無層化任意抽出法)보다 층화추출법에 의한 쪽이 더 유리하다고 함.

(사) 사후 보직제한

- 순천대, 안동대, 제주대 등에서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임기 개시후 2년간 학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다만 제주대는 임명제한 보직에서 단과대학(원)장을 제외함.

- 충남대는 추천위원의 사후 보직제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추천위원도 신임 총장에 의해 학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

- 다만 규정 제7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위원이나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보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총장후보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보직제한에 대하여 선언적으로라도 제한을 두고 있음.

(6) 직원위원의 선발방식

(가) 배정단위

- 충남대는 직종단위별 구분에 의거하여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종단위별 배정비율, 성별 배정, 직급별 구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상당수의 대학에서 직종단위별로 구분하여 배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대부분 직원의 수가 많지 아니한 지역중심대학임.

- 부산대의 경우, 남성직원위원은 직급구분만 있지만, 여성직원위원은 일반직·전문경력직·관리운영직과 기성회직(기성회계약직 포함)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2-31> 직원위원 배정단위별 해당 대학

배정단위	해당대학
일반직·기성회직	충남대, 강릉원주대, 전북대,
일반직·기능직·기성회직·조교	경남과기대
직원협의회·대학노조·조교협의회	경북대
직종단위 구분 없음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제주대, 한경대, 해양대,
직급구분(5급 이상·미만)	부산대, 교통대
직종별·직급별	한밭대
구성인원비율	서울과기대
세칙에 위임(세칙규정 없음)	강원대, 경상대, 전남대, 창원대, 충북대

- 2013년 12월 12일자로 공무원 직종이 개편되어, 현재 충남대 직원의 구분 및 현원은 아래의 표와 같음. 이전의 별정직을 전문경력관으로, 기능직을 관리운영직으로 개편했음.

<표 2-32> 충남대 직원 구분 및 현원

구분	일반직	학예연구직	기록연구직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	기성회직	기성회 계약직	합계
현원	202	2	1	5	46	84	140	480

- 480명이라는 모집단은 그리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직원을 상대로 단순무작위 추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사집단으로 구분하여 층화표본추출을 하는 것이 모집단의 성격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음.
- 다만 너무 세부적인 구분은 무작위 추출이라는 본질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대집단으로 묶어야 함. 교원의 경우 어느 정도 유사한 규모의 3개 학문 계열로 구분하였음을 감안할 때, 직원의 경우에는 일반직, 학예연구직, 기록연구직,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 등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기성회직과 기성회계약직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구분은 세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나) 여성위원의 선발방식

- 충남대는 여성직원위원의 비율이나 선발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교원과 직원의 비율을 결정할 때에 여성직원위원의 비율을 명시할 것인가의 여부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직원위원 중에서 여성직원위원의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거나(강릉원주대, 교원대), 20% 이상의 비율로 규정한 대학(경남과기대)도 있지만, 직원위원의 수를 명시한 대학들은 대부분 여성직원위원의 수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부산대는 여성직원위원 2명의 선발에 있어서 직종을 일반직·전문경력직·관리운영직과 기성회직(기성회계약직 포함)으로 나누어 각각 1명씩 선발하고 있음.
- 직원위원의 수가 4명인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25%인 1명을 여성직원위원으로 배정하고 있음.

<표 2-33> 여성직원수별 해당 대학

직원위원수	여성직원 위원수	해당 대학
3	1	목포대, 서울과기대,
4	1	경북대(조교 포함), 경상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2	공주대, 부산대, 해양대
	20% 이상	강릉원주대
5	1	교통대
6	1	한경대

- 직원여성위원을 1명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전체 직원 중에서 여성직원의 비율을 강제로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명 이상”으로 규정하되, 둘로 나눈 직원집단(일반직·학예연구직·기록연구직·전문경력관·관리운영직 및

기성회직·기성회계약직) 중에서 어느 한쪽 집단에 최소 1명의 여성위원을 배정함.

- 공무원과 기성회(계약직 포함) 직원의 성별 비율을 보면, 공무원 중에서 여성은 27.3%이고, 기성회(계약직 포함) 직원 중에서 여성은 66.5%임.
- 따라서 공무원 직원 중에서 추천위원 2명을 먼저 선정하고, 여성직원위원이 선발된 경우에는 기성회 직원 중에서 여성직원위원을 특별히 배정하지 아니하며, 공무원직원 중에서 여성위원이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성회(계약직 포함) 직원 중에서 여성직원위원을 1명 이상 선발하도록 함.

<표 2-34> 충남대 직원의 성별 구분

	일반직, 학예연구직, 기록 연구직, 전문경력관, 관리 운영직		기성회		기성회계약직		계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원	186	70	49	35	26	114	261	219
계	256		84		140		480	

(다) 선발절차

- 교원위원의 선발절차와 동일하게 사전에 동의를 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선발된 후에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계속 선발하는 경우가 있음.
- 사전동의방식을 통하여 추천위원회에 참석이 가능한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자격요건(배제) 및 신분보장

- 충남대는 교원위원과 직원위원간에 결격사유, 신분보장, 의무, 기피 등에 있어서 차별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대부분 초빙위원이나 관리위원은 추천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초빙위원회나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고, 교원위원의 결격사유로 초빙위원이나 관리위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위원의 경우에도 초빙위원이나 관리위원은 추천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야 함.

- 직원위원의 자격요건으로 5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규정하고 있는 대학은 경북대, 공주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이며,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규정하고 있는 대학은 부산대(5급 이상은 1년 이상 재직경력)임. 물론 재직경력이 짧아서 학내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을 추천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1학년을 포함한 학부 재학생까지도 배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직원에 대해서만 3년 내지 5년의 재직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추천위원은 대학구성원의 하나라는 자격에서 참여하는 것이지, 반드시 대학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기타 요건으로서, 직원단체장(경남과기대), 공무원직장협의회장(교원대), 관리위원회의 간사·서기(한밭대) 등을 규정한 대학이 있음. 교원위원의 경우에도 학무위원뿐 아니라 교수(평의)회 회장 및 부회장을 추천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의 경우에도 직원협의회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추천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 제척·기피·회피

- 교원위원과 동일함.

(나) 선발방식

- 교원위원을 선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무작위 추첨방식을 적용함.
- 다만 교원위원을 선발할 때에 3개의 학문계열별로 구분하여 구성원 비례로 인원을 배정하고 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위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도 일반직·학예연구직·기록연구직·전문경력관·관리운영직과 기성회직·기성회 계약직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는 층화추출법을 적용함.

(7) 학생위원의 선발방식

(가) 배정단위

- 충남대는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각 1인을 무작위 추첨하여 선발함.

<표 2-35> 학생위원 배정단위별 해당대학

배정단위	해당대학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각 1인	충남대
총학생회간부	강릉원주대,
총학생회, 단대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연합회의 회장·부회장	경남과기대,
2,3,4학년 재학생	경북대
총학생회확대운영위원(여성 1명 포함)	공주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제주대, 해양대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임원	목포대
총학생회, 학회연합회, 총동아리연합회 임원	한밭대
단과대학 이상의 선출직 학생간부	부산대
재학생 전체	순천대, 전북대, 창원대, 충북대, 교원대
총학생회장, 여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여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전남대
총학생회장·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학과학생회장	교통대

-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위원의 수를 1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학생위원을 2명으로 규정한 대학은 충남대, 강릉원주대, 공주대뿐임.
- 특히 대학원생 중에서 학생위원을 선발하는 대학은 충남대뿐임. 대학원생도 대학의 구성원이며,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대학원 총학생회라는 대표기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학원생의 숫자는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5,374명으로, 적지 아니한 규모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성집단으로 인정하여 추천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 2-36> 충남대 재학생수

연도 \ 구분	정원			현원(재학생)			
	학사	석사	박사	학사	석사	박사	석박통합
2010	3,803	1,859	460	17,931	4,107	996	
2011	3,854	1,870	451	17,918	4,145	989	52
2012	3,854	1,841	480	18,065	4,232	1,182	46
2013	3,854	1,836	485	18,361	4,298	1,076	48
2014	3,854	1,836	485	18,746	4,327	994	53

- 대체로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는 대학(순천대, 전북대, 창원대, 충북대, 교원대)보다는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등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경우가 많음.
-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는 선출직만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총학생회장·부회장과 단과대학 학생회장·부회장들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대학원생 중에서 1인의 추천위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도, 정·부총학생회장, 각 국·부장 및 각 계열대표로 구성되는 중앙운영위원회(충남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회칙 제16조) 위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여성위원의 선발방식

- 충남대는 학생위원 중에서 여성학생위원의 비율이나 선발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음.
- 2명 이상의 여성학생위원을 선발하는 대학(충남대, 강릉원주대, 공주대) 중에서 여성학생위원의 수를 규정하고 있는 대학은 공주대뿐이며,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 중에서 여성학생위원 1명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학생위원을 선발하고 있음.
- 학생위원의 수가 2명에 불과하고, 각각 학부생과 대학원생 중에서 1명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학생위원을 별도로 배정하기 곤란함.

(다) 선발절차

- 교원위원 및 직원위원의 선발절차와 동일하게 사전에 동의를 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선발된 후에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계속 선발하는 경우가 있음.
- 사전동의방식을 통하여 추천위원회에 참석이 가능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자격요건(배제) 및 신분보장

- 충남대는 학생위원의 “재학생”이라는 요건 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신분보장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휴학생은 당연히 배제됨.
- 순천대와 같이 국내외 교류 수학(해외인턴십) 중인 학생은 사실상 참여가 곤란하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선발 후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여가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면 당연히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음.
- 일부 대학(목포대, 전북대, 교통대)의 경우에는 후보자와 동일한 학과의 학생을 제외하고 있음.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원위원의 경우에 후보자와 동일 학과 소속의 교원을 추천위원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위원의 경우에 동일 학과 학생을 배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재고하여야 함. 다만 교원과 학생의 지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후보자와 동일 학과의 학생을 배제하는 것이 일부 타당할 수도 있음.
- 또한 기피·회피 규정을 통하여 후보자와 동일 학과의 학생을 기피할 수도 있음.

(마) 제척·기피·회피

- 충남대는 학생위원에 대하여 별도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학생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교원위원이나 직원위원에게 적용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바) 선발방식

- 교원위원이나 직원위원을 선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무작위 추첨방식을 적용함.
- 다만 학생의 규모가 학부생은 18,746명, 대학원생은 5,374명으로 매우 방대하므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기는 곤란함.
- 따라서 교원위원이나 직원위원과 같이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총화추출을 적용하기보다는 총학생회와 대학원총학생회의 중앙운영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8) 조교위원의 선발방식

- 충남대, 해양대, 한밭대만 조교위원을 별도로 1명씩 배정하고 있음.
- 직원위원과 통합하여 선발하거나, 조교위원을 두고 있지 아니한 대학이 대부분임.

<표 2-37> 조교위원 배정단위별 해당대학

배정단위	해당대학
조교 별도 선발	충남대, 해양대, 한밭대
직원과 조교 통합 선발	경북대, 서울과기대
조교위원 부재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상대, 공주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한경대, 교원대, 교통대

- 2014년 4월 1일 현재 충남대학교의 조교는 190명에 달하는 바, 별도의 대학구성집단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선발방식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천방식을 적용함.

(9) 외부위원의 선발방식

㉠ 추천권자 및 추천단위

- 충남대는 학외위원 13인의 선발에 대하여 “총장, 총동창회장, 기성회장, 대전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언론계, 대덕연구단지기관장 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세칙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에서는 “학외위원”이라는 용어 대신 “외부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일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고, 피추천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천하여 위원을 선발하고 있음.
- 다만 추천권자를 학내 단체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고, 추천기관 또는 단체마다 추천인원을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 또는 단체별 배정인원의 2-4 배수를 추천받아 무작위 추천하여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위원을 공모하여 지원자 중에서 교수회와 직원협의회가 투표하여 각각 8명과 1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음.
- 군산대의 경우 발전기금 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에서 2명을 추천위원으로 선발하고 있음.
- 제주대와 해양대는 각 단체로부터 3배수를 추천받아 무작위 추천으로 배정인원만큼 선발하고 있음.

<표 2-38> 대학별 외부추천위원 규모 및 추천기관(단체)

대학 (규모)	내부						외부						
	총장	동창회	기성회	교수 (평의회)	직원 단체	학생회	자치 단체	경제	법조	언론 방송	문화	교육	기타
충남대 (13)	○	○	○				대전			○			연구단지
							충남						
							세종						
강릉원주	6	3	6	12	6								

대(13)													
강원대 (12)	3	1	1	3	2	1							
경남과기 대(12)	2	1	1	2	2		광역1 기초1						국회의원2
경북대 (12)		4	4				4	4	4	4	4	4	시민단체4 여성단체4 과학기술4 보건의료4
공주대 (13)		공주2 천안1 예산1	1				광역2 기초3	충남 기업 연합				교육 청1	연구재단1
군산대 (12)		2	2				전북1 군산1	상공 회의 소1					시민단체3 발전기금2
목포대 (9)							공모하여 교수회(8)와 직협(1)에서 투표로 선정						
부경대 (15)		4	2	5	4								
부산대 (13)		1	1				부산 1	경영 단체	변협	부산 언론		국교 련	학술원 학단연 여성단체 여성과기연 시민공모3
서울과기 대(10)	1	2	1	4	1	1							
순천대 (12)	3	1	1	7									
안동대 (12)		12											
전남대 (13)							공모하여 전체교수와 직원(11%)이 투표로 선정						
전북대 (12)		교원과 직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추천으로 각각 10명과 2명을 선정											
제주대 (12)		2	2	5	2	1							
한경대 (12)		1	1	7	1		광역1 기초1						
교통대 (12)	1	2	1	6	2								
해양대 (13)	2	1	1	3	2	1							관리위3
한밭대 (12)		2	1				1	1	1	1	1	1	과학기술1 시민단체1

① 추천권자

- 외부에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통 자치단체,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등의 단체를 지정해서 일정한 수의 위원후보를 추천받고 있음. 특히 부산대의 경우에는 시행세칙에서 사회의 각 영역별로 추천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표 2-39> 부산대 외부추천위원 추천기관(단체)

추천권자		추천인원	선발인원
학부모대표		1	1
총동문회장		1	1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5	1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장 회장		5	1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여성위원)		5	1
한국여성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3	1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3	
경제·경영인 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1	1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1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	
	한국무업협회 회장	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	
부산시장		5	1
부산지역언론사	부산일보	1	1
	국제신문	1	
	KBS부산	1	
	MBC부산	1	
	KNN	1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5	1
시민공모	부산시민		1
	양산시민		1
	밀양시민		

- 대부분의 단체들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며, 추천단체에서 배제된 단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각 단체의 규모나 영향력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에서 단체들간의 추천인원 배정도 곤란함. 또한 추천단체를 지정하면, 대부분 전국단위보다는 지역단위의 단체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천단체를 지정할 필요가 없음.
- 학내 단체에서 외부위원을 추천하더라도, 피추천인의 소속이나 분야를 특정하면(예: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사회계, 기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추천위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추천단체를 외부까지 확장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학내 단체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이 중복될 수도 있고, 추천위원회의 소집당일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피추천인의 동의를 구해서 추천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 학내 단체들 중에서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 단체로는 총장, 총동창회, 기성회, 교수회, 직원협의회, 총학생회 등 6개 단체가 있음.

② 추천인원

- 위에서 제시한 총장, 총동창회, 기성회, 교수회, 직원협의회, 총학생회 등이 모두 동일한 인원을 추천할 것인지, 차등을 두어 추천인원을 배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 학내 단체들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피추천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구분 없이, 차등적으로 추천인원을 배정하고, 추천받은 인사는 자동적으로 추천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 직원, 학생 등 내부추천위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무작위 추첨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간 선발절차에 있어서 과도한 차이를 두는 것은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추천권을 가진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무작위 추첨을 통한 선발이라는 또다른 절차를 두어야 함.
-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할 경우에 모집단의 수가 충분해야만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고르게 선발될 수 있음.
- 총장, 총동창회, 기성회, 교수회, 직원협의회, 총학생회 등 6개 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사회계, 기타 분

야 등 8개 분야에서 1명씩 추천하면 총 48명, 2명씩 추천하면 총 96명의 후보를 추천받게 됨.

③ 공모방식

-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는 시민공모방식을 통해, 응모한 후보자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선발하거나, 교수회와 직원협의회의 투표를 통해 선발하고 있음.
- 민주적 대학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시민참여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응모자의 자격요건을 특정하고 확인하기 곤란하고, 응모자가 과다하거나 과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관단체의 추천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나) 여성위원의 선발방식

- 충남대는 외부위원의 여성비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타 대학의 사례로는 기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때에 여성위원의 숫자나 비율을 명시하여 추천을 받는 경우(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남과기대, 경북대, 공주대, 서울과기대, 순천대, 제주대, 한경대, 해양대), 여성단체로부터 일정한 수의 여성위원을 추천받는 경우(부산대), 선발절차에서 여성을 우선 선발하는 경우(목포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교원대, 교통대, 한밭대) 등이 있음.
- 추천 기관·단체로부터 외부위원의 정수만큼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여성위원의 숫자나 비율을 정해서 추천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외부위원의 정수보다 2-4배를 추천받아서 추천과 같은 별도의 방식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의 배정인원수만큼 우선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학내의 6개 추천단체에서 각각 8개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할 경우에 반드시 여성위원을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무작위 추천을 통해 선발되되, 외부위원의 여성위원 비율(20% 이상 또는 3명 이상)을 채울 때까지 추천을 반복하여 선발되도록 함.

(다) 선발절차 및 방식

- 충남대는 외부위원의 선발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외부위원은 추천기관·단체에서 추천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동의를 받을 기회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발된 다음에 수락 여부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 추천기관·단체로부터 외부위원의 정수만큼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지만, 일정 배수의 인원을 추천받는 경우에는 추천과 같은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야 함.
- 학내의 6개 추천단체에서 8개 분야마다 2명 이상의 전문가를 추천하고(여성위원 2명 이상 포함), 추천받은 96명의 후보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13명의 외부위원을 선발함.

(라) 자격요건(배제) 및 신분보장

- 충남대는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이나 신분보장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관리위원이나 초빙위원의 결격 사유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신망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같이 일반적인 요건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강릉원주대, 강원대, 공주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충북대).
- 또한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대학(전북대)도 있음.
- 일부 대학에서는 외부위원의 자격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2-40> 대학별 외부위원 자격요건

	분야	자격요건
한경대	교육	4년제 대학의 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2년제 대학의 총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행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경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대표(CEO)
	정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 부의장 이상
	법조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기타	중앙일간지 대표논설위원,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
한밭대	교육	대학의 정교수급, 교장급, 해당 기관 임원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경력 15년 이상, 해당 기관 임원급 이상
	기타	해당 분야 경력 15년 이상으로서 임원급 이상

- 외부추천위원의 적극적 자격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추천권자의 상식적 수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피추천인의 자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하면, 추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피추천인의 소속을 지역단체에 한정하지 말고, 전국단위까지 포함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제척·기피·회피

- 일반적으로 관리위원이나 초빙위원에 적용되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의결정족수

-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임.
- 다만 위원의 기피·회피·해촉에 대한 의결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보다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9. 심사·선정 절차

- 충남대는 관리위원회가 자격을 조사하여 추천위원회에 통지하고, 추천위원회에서의 본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함. 1차본심사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순위에 따라 5명 이내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고, 2차본심사에서는 각 1회 이상의 연설회 및 토론회 등을 참작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위에 따라 2인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함.
- 강원대는 2차심사에서 순위없이 2명을 선정하고, 의결로 최종 1,2순위를 확정함.

(1) 심사 기준

- 충남대는 1차 심사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며, 2차 심사에서는 각 1회 이상의 연설회 및 토론회 등을 참작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며, 토론회, 연설회 등을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음.

<표 2-41> 대학별 심사 기준

	1차 심사	2차 심사
충남대	서류, 면접심사	연설회, 토론회
강릉원주대	발전계획서, 기타 서류	심층면접, 토론회
강원대	서류심사, 발전계획서 평가 등	면접,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등

경남과기대	설명회, 공개토론회	
경북대	소견발표, 합동토론회, 질의응답	
공주대	서류심사, 발전계획을 포함한 정간발표	합동정책토론회 및 질의응답
군산대	소견발표,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등	
부경대	발전계획평가	연구윤리검증,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서울과기대	서류심사, 발전계획서 평가	면접,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서울대	서류심사, 발전계획서 평가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정책평가
순천대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등	
안동대	면접,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전남대	합동연설회(중계)	
전북대	서류심사, 발전계획서 평가	합동연설회
제주대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등	
창원대	서류심사, 발전계획서 평가 등	-
한경대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각 1회 이상	
고통대	공개 합동연설회	정책토론회
한밭대	합동연설회, 소견발표, 정책토론회	

- 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나 선호도조사 등의 방법이 (별도의 규정이 아닌)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함에 따라서, 전체구성원의 의사를 추천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는 기제가 전혀 없음.
- 모든 후보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 연설회, 토론회 등을 실시한 후에 1차심사와 2차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양자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음.
- 그러나 1차심사는 후보지원자의 수를 5명 이내로 줄이는데 주목적이 있고, 2차심사는 압축된 후보지원자를 대상으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1차와 2차 심사의 기준을 달리 하는 것이 바람직함.
- 1차 심사는 다수의 모든 후보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정책토론회를 실시하기 곤란하므로, 발전계획서를 포함한 서류에 대한 심사, 그리고 면접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2차심사는 5명 이하의 후보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보다 심층적인 심사가 가능함. 따라서 합동연설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

람직함.

- 다만 추천위원회에서의 1차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1회 이상의 연설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전체구성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토론회, 연설회 등은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추천위원회의 심사 전에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를 1회 개최하고, 추천위원회에서의 본심사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에 1차심사를 실시하며, 합동토론회와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에 2차심사를 실시함.

(2) 선정방식

- 충남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추천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투표가 아닌 심사를 통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음.

- 경남과기대, 부경대, 안동대, 창원대는 1차심사에서는 심사(심의·의결)방식, 2차심사에서는 투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강원대는 심의 및 선정방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 심사방식

- 강릉원주대는 1차심사에서 각 후보자에 대해 0,1,2점을 부여하여 2차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2차심사에서도 각 후보자에 대해 0,1,2점을 부여하여 최종 1, 2순위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경남과기대, 부경대, 안동대, 창원대 등에서도 1차 심사에서 심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1차심사에서는 발전계획서를 포함한 서류심사를 실시하므로, 투표방식이 아니라 점수나 순위를 부여하는 심사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각 후보에 대하여 추천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미세한 선호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심사자의 관대화경향,

중앙화경향, 연쇄적 착오, 투사 등의 평정오류가 나타날 수 있고, 점수의 합산과정이 복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은 후보자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등간격으로 강제 배분함으로써, 추천위원들의 선호를 다소 왜곡시키며, 후보자의 득표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동점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후보자를 압축시키기 위한 1차심사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하여 2차심사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투표방식

- 대부분의 대학들은 1인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음.

- 다만 교통대는 지원자가 7인 이상인 경우에 1차심사에서 1인 2표, 6명 이하인 경우에 1인 1표로 2차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부경대는 2차심사에서 1인 2표(동일인에게 중복 기표하거나 1인에게만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 방식의 투표 결과에 따라 순위 없이 다득표자 2인을 선정하고 있음.

- 단수기표제는 모든 유권자가 1인의 후보에 대하여만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서, 장점은 투표결과의 계산이 신속하고 간단하며,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점이며, 단점은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임.

- 복수기표제는 유권자가 복수의 후보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장점은 유권자의 선호도에 따라 차별적이고 개별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비교적 충실히 반영된다는 점이며, 단점은 다수가 선호하는 후보보다는 덜 기피하는 중립적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따라서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를 압축하기 위한 1차심사에서는 선호하지 아니하는 후보를 배제하는 방법으로서 유용한 복수기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2차심사에서는 단수기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1차심사에서 후보지원자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압축과정을 굳이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므로 1차심사에서부터 단수기표제를 적용하여도 무방함.

(3) 동점자 처리방식

- 심사방식이든 투표방식이든 동점자 또는 동일 득표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동점자의 처리방식에는 첫째, 동점자를 모두 다음 심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 둘째, 동점자만을 대상으로 재심사나 재투표를 하여 순위를 다시 정하는 방식, 셋째, 이전 심사까지의 누적득표수로 선정하는 방식, 넷째, 연장자나 재직년수가 오래된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 등이 있음.
- 기회의 평등이라는 점에서는 동점자를 모두 다음 심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나 재심사 또는 재투표를 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함.
- 심사 또는 투표의 효율성 내지 신속성이라는 점에서는 누적득표수로 선정하거나 연령·재직연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거는 기본적으로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에 바탕을 둔 제도이고, 가능한 한 구성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점자를 모두 다음 심사의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재심사·재투표를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압축 및 최종 순위 결정방식

- 총남대는 1차 심사에서 5인 이내를 선정하고, 2차 심사에서 최종 2인을 선정함.
- 대체로 1차 심사에서는 2-5인으로 압축하고, 2차 심사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하고 있음.

<표 2-42> 대학별 최종순위결정방식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결선)
총남대	5인 이내	2인	과반득표로 순위 결정
강릉원주대	점수 부여	점수 부여	1, 2차 점수 평균으로 순위 결정
강원대	7인 이내(학외 1인 이상)	2인(무순)	의결로 순위 확정

경남과기대	2인 선정		순위 결정	
경북대	5인 선정		3인 선정	2인 선정, 순위 결정
공주대	5인 선정		2인 선정	2차에서 과반 없으면 결선
군산대	10인 이상	7인 선정	5인 선정	2인 선정
	5-9인	5인 선정	2인 선정	
	5인 미만	2인 선정	1차에서 과반 없으면 순위 결정	
목포대	4인 이상	2인 선정	순위 결정	
	3인 이하	순위 결정		
부경대	5인 이내 선정		2인 선정	순위 확정
부산대	과반득표자와 차순위자		1차에 과반 없으면 3위까지 2차 투표	2차에도 과반 없으면 2위까지 결선 투표
서울과기대	5인 선정(학외 1인 이상)		2인(무순)	순위 확정
서울대	5인 이내 선정		3인 선정	
순천대	5인 이상	5인 선정	2인 선정	2차에 과반 없으면 2인 순위 확정
	4인 이하	2인 선정	1차에 과반 없으면 2인 순위 확정	
안동대	2인 선정(무순)		순위 결정	
전남대	4인 이상	과반 있으면 1,2위 결정	1차에 과반 없으면 3위까지 2차 투표	
	3인 이하	득표순 1,2위 결정		
전북대	7인 이상	5인 선정	과반득표자와 차순위자 결정	2차에 과반 없으면 3위까지 투표하여 과반득표자와 차순위자 결정
	6인 이하	→		
제주대	과반득표자와 차순위자 선정		1차에 과반 없으면 3위까지 투표	2차에 과반 없으면 2위까지 투표
창원대	6인 이상	5인 선정	과반득표자와 차순위자 결정	2차에 과반 없으면 2위까지 투표
	5인 이하	→		
충북대	1인2표로 다득표순 5인 선정		1인1표로 다득표순 3인 선정	1인1표로 다득표순 2인 선정 1인1표로 과반득표로 순위 결정
한경대	2인 선정		1차에 과반 없으면 2위까지 순위 결정	
교통대	7인 이상	1인2표로 1,2위 선정		

	6인 이하	1인1표로 1,2위 선정		
해양대	6인 이상	5인 선정	2인 선정	2차에 과반 없으면 2인 재투표
	5인 이하	2인 선정	1차에 과반 없으면 2위까지 투표	
한밭대	과반득표자와 차순위자 선정		1차에 과반 없으면 3위까지 투표	2차에 과반 없으면 2위까지 재투표

- 과반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하는 것은 임명 이후 업무를 수행할 때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저항을 극복하고 용이한 정책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재투표가 과다하게 반복될 경우에는 오히려 정당성 확보가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1차 심사에서 후보지원자가 6인 이상일 경우에는 5인 이내를 선정하되, 1인2표의 복수기표제를 통하여 선정하며, 동일한 득표를 획득한 후보지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모두 포함하여 2차 심사에 회부함. 1차 심사에서 후보지원자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1차심사를 실시하되,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모두 2차 심사에 회부함.
- 2차심사에서는 1인1표의 단수기표제를 통하여 1, 2위를 선정하되, 유효투표수의 과반득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1위와 2위를 선정하며, 과반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3위까지 포함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되 3위 득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모두 포함하여 재투표를 실시함. 재투표는 과반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실시하며, 과반득표자가 나온 경우에는 1위와 2위를 선정함.

(5) 이의신청 및 재선정

- 충남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는 추천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이의신청 및 재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남과기대, 순천대, 전북대, 창원대, 한경대 등임.

<표 2-43> 대학별 이의신청관련 규정

	강릉원주대	경남과기대	순천대	전북대	창원대	한경대
신청자격	-후보지원자 -추천위원	-후보지원자	-이의가 있는 사람	-후보지원자	-후보지원자 -추천위원	-후보지원자
기한	5일 이내	3일 이내	3일 이내	3일 이내	3일 이내	3일 이내
서식	1. 소속과 성명 2. 신청취지와 신청의 대상행위의 구체적 내용 3. 증빙자료	서면	1. 성명과 소속 2. 신청취지와 이유 3. 대상행위의 구체적 내용 4. 증빙자료	서면	1. 성명과 소속 2. 신청취지와 이유 3. 대상행위의 구체적 내용 4. 증빙자료	서면
심의기구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	관리위원회	추천위원회	관리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의·의결기한	10일 이내	-	5일 이내	3일 이내	5일 이내	-
인정사유	-	-	1. 추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총장 후보자 또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	-	1. 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법령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경우	-
의결정족수	-	-	재적 2/3	재적 과반수	재적 2/3	-
재신청기한	40일 이내	-	50일 이내	-	50일 이내	-

- 이의신청의 자격에 후보지원자를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추천위원도 포함하는 대학이 있음. 사실 후보지원자는 선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천위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만 “이의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함.

- 이의신청의 기한은 후보자의 선정 또는 공표일로부터 3일 또는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처리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바, 3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의신청은 당연히 서면으로 하되, 서면의 기재사항을 명시한 대학의 경우,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함. 즉 신청인의 성명과 소속,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증빙자료 등임.

-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기구는 대학마다 추천위원회와 관리위원회로 나누어짐. 추천위원회에서 실시한 후보자 선정과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이의신청은 제3자가 심의를 해야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총장후보선정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함.

- 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기한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추천위원회의 소집공고를 내고, 소집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3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촉박하고, 5일 이내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의를 인정하여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무효로 의결하기 위한 사유로는, 첫째, 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둘째,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선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경우 등임. 그러나 선정무효의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중대한 허위사실의 기재”나 “선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사실상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선언적으로나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고려해볼 필요는 있음.

-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무효로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함. 선정무효의 의결은 선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므로, 재적위원 과반수보다는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무효로 의결한 경우 재선정을 위한 기한을 명시한 경우는 보통 40일 또는 50일 이내임. 선정무효결정이 나면, 선정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보통의 경우에도 선정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최소 30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는 50일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임.

10. 연설회·토론회 등

- 충남대는 2차심사의 기준으로 각 1회 이상의 연설회와 토론회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설회와 토론회 등을 언제 개최하는 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규정상으로는 2차심사 직전에 연설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판단됨.

- 연설회·토론회는 대학정책방향에 대한 후보자들의 소신을 확인하고 비교함으로써,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이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토론회, 연설회 등을 개최하여야 함. 따라서 연설회와 토론회의 개최시기는 추천위원회에서의 심사를 시작하기 직전보다는 적어도 1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연설회와 토론회는 추천위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보다는 전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자리이어야 하며,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교통대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에, 사전에 실시한 합동연설회의 녹화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으로 연설회를 대체하고 있으며, 소견서 등에 대한 선정위원간의 토론을 명시하고 있음.

- 연설회나 토론회를 명시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관리위원회에서 연설회나 토론회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대로 연설회와 토론회가 단순히 추천위원회에서의 결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전체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할 별도의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연설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과 인식 공유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 개최 전에 공개적인 연설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물론 공개 연설회나 토론회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3편

규정 개정안

제1장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규정 개정안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2012. 12. 28. 제정 [규정 제1549호]

2013. 12. 30. 개정 [규정 제1612호]

2014. 4. 29. 개정 [규정 제1632호]

2015. 0. 00. 개정 [규정 제163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충남대학교 학칙 제3조 제2항에 의한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후보지원자”라 함은 총장후보자공모에 지원한 자와 총장후보자초빙에 응한 자를 말한다.
2. “총장후보자”라 함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인을 말한다.
3.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총장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총장후보자초빙위원회(이하 “초빙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총장후보자의 초빙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적격한 총장후보지원자 중에서 최종 2인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말하며, “직원”은 국가공무원 및 기성회

직원을 말한다.

제2장 총장후보자 공모

제3조(모집 공고)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장 임기만료일 5개월 전까지 총장후보자의 모집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총장후보자의 자격) 총장후보자는 충남대학교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학식과 덕망을 지니고 통솔력과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내·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총장임기 만료일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3. 충남대학교 학칙 제14조의 학무회의 구성원(이하 “학무위원”이라 한다) 및 충남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13조의 임원이 총장후보자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총장후보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접수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한 자
4. 충남대학교 전임교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단 학외총장후보지원자는 제외하며, 2명 이하의 중복추천을 허용한다)

제5조(지원서 접수) ①총장후보지원자는 공고된 기간 내에 총장후보자 지원서 등의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초빙위원회를 통하여 초빙·추천되는 학외총장후보지원자는 추천위원회가 1차 본심사를 개시하기 7일 전까지 접수하여야 한다(단, 공휴일은 접수일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제출서류 및 양식, 후보지원자의 접수무효 및 사퇴신고, 기타 후보지원자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자 지원서 접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조사 및 심사의 절차) ①총장후보지원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한다.

1. 자격조사: 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규정 제4조에 의한 자격여부를 조사하여 추천위원회에 통지한다.
2. 예비 연설회와 토론회: 관리위원회는 본심사 개시 7일 이전에 총장후보지원자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각각 1회 이상 개최한다.
3. 1차 본심사: 추천위원회는 적격한 총장후보지원자를 대상으로 5인 이내의 총장후보지원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와 1인 2표(2인의 후보지원자에 기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4. 2차 본심사: 추천위원회는 1차 본심사를 통과한 5인 이내의 총장후보지원자를 대상으로 총장후보자 2인을 최종 선발하기 위한 심사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②심사의 절차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총장후보지원자의 부정행위 제재) ①총장후보지원자는 공모 공고일 180일 전부터 총장후보자 선정일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이 조항에서의 위원이라 함은 관리위원회, 초빙위원회,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통칭한다)이나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위원이나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자신을 총장후보자로 선정하도록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3. 위원이나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타인을 총장후보자로 선정하지 않도록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4. 위원이나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보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위원이나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6. 다른 총장후보지원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드러내서 비방하는 행위
7. 제3자를 통해 총장후보자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8. 기타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

②총장후보지원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관리위원회는 경고, 시정명령, 자격박탈,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총장후보지원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자격박탈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관리위원회

제8조(구성) ①총장은 총장 임기만료일 6개월 전까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학내외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위원 8인: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2. 직원위원 3인: 직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관리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④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총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⑥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장후보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홍보하는 업무

2. 총장후보자의 선정과 관련된 제반 행정 절차를 운영·지원하는 업무

3.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고 받은 부정행위를 처리하는 업무

4. 추천위원회 및 초빙위원회 구성에 관한 업무

5. 자격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통지하는 업무

6. 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총장후보지원자의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그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7. 총장후보지원자 및 참고인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열람하는 업무

8. 총장후보지원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청취하는 업무
9.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는 업무
10. 기타 총장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10조(임명·임기) ①관리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차기 총장의 임기 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총장후보지원자
2. 학무위원 및 교수회 임원
3. 휴직자, 정직자,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자, 공로연수자
4. 초빙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위원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해촉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4조(위원의 의무) ①관리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공모·자격조사 과정에서 후보지원자의 사생활과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조사와 관련된 후보지원자의 개인적인 정보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총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총장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경고, 시정명령, 해촉,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신분보장)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본인 또는 배우자와 5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총장후보지원자가 된 때

제16조(위원의 기피·회피) ①총장후보지원자는 특정한 관리위원회 위원이 자격조사 등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스스로 총장후보지원자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장 초빙위원회

제17조(구성) ①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자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초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초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학내외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위원 5인: 전임교원 중에서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직원위원 2인: 직원 중에서 직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3. 학생위원 1인: 재학생 중에서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4. 학외위원 3인: 총장의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초빙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 ④초빙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⑤총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초빙위원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⑥초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업무) 초빙위원회는 공모 결과 학외총장후보지원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외총장후보지원자의 초빙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2. 학외총장후보지원자의 초빙 요건을 확정하는 업무
3.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된 자를 대상으로 총장후보지원자 접수에 관해 홍보하거나 설득하는 업무
4. 기타 학외총장후보지원자의 초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19조(준용규정) 초빙위원회 위원의 임명·임기, 위원의 결격 사유, 위원장의 직무, 의결, 위원의 신분보장, 의무, 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추천위원회

제20조(구성) ①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장 임기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의 학내외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위원 30인: 전공단위별 구분에 의거하여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발한다.
 2. 직원위원 4인: 직종단위별 구분에 의거하여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발한다.
 3. 조교위원 1인: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발한다.
 4. 학생위원 2인: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과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발한다.
 5. 외부위원 13인: 총장, 총동창회, 기성회, 교수회, 직원협의회, 총학생회가 정치·행정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사회계, 보건·과학기술계의 각 분야에서 각각 2인(여성 3인 이상 포함)을 추천하고,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발한다.
- ③추천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단체는 추천위원회의 소집과 총장후보자의 선정에 성실하고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 외부위원은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⑤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⑥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의 1차 본심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결원이 발생해도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지 아니 한다.
- ⑦기타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업무)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차 본심사 및 2차 본심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
2. 1, 2순위 총장후보지원자를 총장후보자로 최종 선정하여 총장에게 통지하는 업무
3.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총장후보지원자의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제22조(본심사의 평가지표와 방법) ①총장후보지원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진행한다.

1. 학문적 업적과 교육 철학
2. 대학발전계획서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3. 대학경영능력과 리더십

4. 중앙 및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경력
5. 본교에 대한 행·재정적 기여도
6. 도덕성

②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거쳐 총장후보자를 결정한다.

1. 1차 본심사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1인 2표(2인의 후보지원자에 기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순위에 따라 5인 이내(초빙위원회의 초빙에 응한 학외총장후보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득표순위와 상관없이 포함)의 총장후보지원자를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복수의 총장후보지원자가 동일한 득표를 하였을 경우에는 모두 포함하여 2차 심사 대상자를 결정한다.
2. 2차 본심사에서는 각 1회 이상의 연설회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한 후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고 득표 순위에 따라 2인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한다.
3. 2차 본심사 결과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순위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총장후보자로 확정한다. 다만, 2차 심사 제1차 투표에서 1, 2순위자의 득표수의 합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3순위자를 포함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연설회 등을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 ④본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선정결과 공표 및 통보)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명·임기, 위원의 결격 사유, 위원장의 직무, 의결, 위원의 신분보장, 의무, 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6장 총장후보자의 임용추천

제26조(총장후보자 임용추천) 총장은 추천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2인의 총장후보자를 총장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제27조(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추천위원회의 최종 총장후보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총장후보지원자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총장후보자가 선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소속
2.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4. 증빙 자료

③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총장후보지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 무효를 의결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총장후보자 선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

제28조(재선정) ①관리위원회는 제27조 제4항에 따라 총장후보자의 선정 무효를 의결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재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선정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는 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 00. 00. 규정 제00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8. 규정 제15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충남대학교총장임명추천위원회
규정과 충남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3. 12. 30. 규정 제16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29. 규정 제16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구조문대비표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충남대학교 학칙 제3조 제2항에 의한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후보자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총장후보자의 관리와 총장임용 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총장후보자초빙위원회(이하 “초빙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총장후보자의 초빙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적격한 총장후보자 중에서 최종 2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충남대학교 학칙 제3조 제2항에 의한 충남대학교 <u>총장후보자</u>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총장후보지원자</u>”라 함은 <u>총장후보자공모에 지원한 자와 총장후보자초빙에 응한 자</u>를 말한다. 2. “<u>총장후보자</u>”라 함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인을 말한다. 3. “<u>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u>(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총장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제반 업

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총장후보자”라 함은 총장공모에 지원한 자와 총장초빙에 응한 자를 말하고, 총장임용후보자라 함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인의 총장후보자를 말한다. 5. “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말하며, “직원”은 국가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을 말한다.	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u>총장후보자초빙위원회</u>(이하 “초빙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총장후보자의 초빙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u>총장임용추천위원회</u>(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적극적인 총장후보지원자 중에서 최종 2인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말하며, “직원”은 국가공무원 및 기성회직원을 말한다.
제2장 총장임용후보자 공모	제2장 <u>총장후보자</u> 공모
제3조(선정 공고)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장 임기만료일 4개월 전까지 총장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3조(모집 공고)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장 임기만료일 <u>5개월 전까지</u> 총장후보자의 모집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총장후보자의 자격)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는 자는 충남대학교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학식과 덕망을 지니고 통솔력과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내·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총장후보자의 자격) 총장후보지원자는 충남대학교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학식과 덕망을 지니고 통솔력과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내·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1. 「 <u>교육공무원법</u> 」 제10조의4 각

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총장임기 만료일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3. 충남대학교 학칙 제14조의 학무회의 구성원(이하 “학무위원”이라 한다) 및 충남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13조의 임원이 총장후보자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총장후보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접수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한 자 제5조(지원서 접수) ①총장후보자 지원자는 공고된 기간 내에 총장후보자 지원서 등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초빙위원회를 통하여 초빙·추천되는 학외총장후보자는 추천위원회가 1차 본심사를 개시하기 7일 전까지 접수하여야 한다(단, 공휴일은 접수일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제출서류 및 양식, 후보자의 접수무효 및 사퇴신고, 기타 후보자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총장임기 만료일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3. 충남대학교 학칙 제14조의 학무회의 구성원(이하 “학무위원”이라 한다) 및 충남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13조의 임원이 총장후보자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총장후보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접수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한 자 <u>4. 충남대학교 전임교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단 학외총장후보지원자는 제외하며, 2명 이하의 중복추천을 허용한다)</u> 제5조(지원서 접수) ①<u>총장후보지원자</u>는 공고된 기간 내에 총장후보자 지원서 등의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초빙위원회를 통하여 초빙·추천되는 <u>학외총장후보지원자</u>는 추천위원회가 1차 본심사를 개시하기 <u>20일</u> 전까지 접수하여야 한다(단, 공휴일은 접수일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제출서류 및 양식, 후보지원자의 접수무효 및 사퇴신고, 기타 <u>후보지원자</u>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③총장후보자 지원자(초빙위원회를 통해 초빙·추천되는 학외총장후보자는 제외)는 지원서 접수 기간에 일정금액을 충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발전기금의 액수 등 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자 지원서 접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조사 및 심사의 절차) ①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한다. 1. 자격조사 : 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규정 제4조에 의한 자격여부를 조사하여 추천위원회에 통지한다. 2. 1차 본심사 : 추천위원회에서는 적격한 총장후보자를 대상으로 5인 이내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와 투표를 실시한다.	- <u>삭제</u> ③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자 지원서 접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조사 및 심사의 절차) ① <u>총장후보지원자</u>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한다. 1. 자격조사: 관리위원회는 <u>총장후보지원자</u> 전원을 대상으로 규정 제4조에 의한 자격여부를 조사하여 추천위원회에 통지한다. 2. 예비 연설회와 토론회: 관리위원회는 본심사 개시 7일 이전에 <u>총장후보지원자</u>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 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각각 1회 이상 개최한다. 3. 1차 본심사: 추천위원회는 적격한 <u>총장후보지원자</u>를 대상으로 5인 이내의 <u>총장후보지원자</u>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와 <u>1인 2표(2인의 후보지원자에 기표)의 무기명 비밀투표</u>를 실시한다.
--	---

3. 2차 본심사 : 추천위원회는 1차 본심사를 통과한 5인 이내의 총장후보자를 대상으로 2인을 최종 선발하기 위한 심사와 투표를 실시한다. ②심사의 절차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총장후보자의 부정행위 제재) ①총장후보자는 공모 공고일 180일 전부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일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이 조항에서의 위원이라 함은 관리위원회, 초빙위원회,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통칭한다)이나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위원이나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자신이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기 위해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3. 위원이나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타인이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4. 위원이나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보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 2차 본심사: 추천위원회는 1차 본심사를 통과한 5인 이내의 <u>총장후보지원자</u>를 대상으로 총장후보자 2인을 최종 선발하기 위한 심사와 <u>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u>를 실시한다. ②심사의 절차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총장후보지원자의 부정행위 제재) ①<u>총장후보지원자</u>는 공모 공고일 180일 전부터 <u>총장후보자</u> 선정일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이 조항에서의 위원이라 함은 관리위원회, 초빙위원회,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통칭한다)이나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위원이나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u>자신을 총장후보자로 선정하도록</u>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3. 위원이나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u>타인을 총장후보자로 선정하지 않도록</u>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4. 위원이나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보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

5. 위원이나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6. 다른 총장후보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드러내서 비방하는 행위 7. 제3자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8. 기타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 ②총장후보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관리위원회는 경고, 시정명령, 자격박탈,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총장후보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자격박탈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관리위원회 제8조(구성) ①총장은 총장 임기만료일 6개월 전까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학내	5. 위원이나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6. 다른 <u>총장후보지원자</u>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드러내서 비방하는 행위 7. 제3자를 통해 총장후보자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8. 기타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 ②<u>총장후보지원자</u>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관리위원회는 경고, 시정명령, 자격박탈,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u>총장후보지원자</u>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자격박탈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관리위원회 제8조(구성) ①총장은 총장 임기만료일 6개월 전까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학내
---	--

외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위원 7인 : 3인은 총장이 직접 임명하고, 4인은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2. 직원위원 3인 : 1인은 총장이 직접 임명하고, 2인은 공무원직장협의회·대학노조·직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3. 학외위원 1인 : 선거관리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관리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④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총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⑥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장후보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홍보하는 업무 2.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과 관련	외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교원위원 8인: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u> 2. 직원위원 3인: <u>직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u> - 삭제 ③관리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④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총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⑥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장후보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홍보하는 업무 2. <u>총장후보자의 선정과 관련된</u>
--	---

된 제반 행정 절차를 운영·지원하는 업무 3.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고 받은 부정행위를 처리하는 업무 4. 추천위원회 및 초빙위원회 구성에 관한 업무 5. 자격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통지하는 업무 6. 총장후보자의 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그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7. 총장후보자 및 참고인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열람하는 업무 8. 총장후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청취하는 업무 9.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는 업무 10. 기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10조(임명·임기) ①관리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차기 총장의 임기 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제반 행정 절차를 운영·지원하는 업무 3.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고 받은 부정행위를 처리하는 업무 4. 추천위원회 및 초빙위원회 구성에 관한 업무 5. 자격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통지하는 업무 6. <u>관리위원회</u> 위원에 대한 <u>총장 후보지원자</u>의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그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7. <u>총장후보지원자</u> 및 참고인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열람하는 업무 8. <u>총장후보지원자</u>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청취하는 업무 9.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는 업무 10. 기타 <u>총장후보자</u>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10조(임명·임기) ①관리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차기 총장의 임기 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	--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위원회 학내위원이 될 수 없다. 1. 총장후보자 혹은 총장후보자 지원예정자 2. 학무위원 3. 휴직자, 정직자,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자, 공로연수자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위원에 대한 기피·해촉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4조(위원의 의무) ①관리위원회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u>총장후보지원자</u> 2. 학무위원 및 <u>교수회 임원</u> 3. 휴직자, 정직자,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자, 공로연수자 4. <u>초빙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위원</u>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위원에 대한 <u>기피·회피·해촉</u>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4조(위원의 의무) ①관리위원회
--	--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공모·자격조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사생활과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조사와 관련된 후보의 개인적인 정보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총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총장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경고, 시정명령, 해촉,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신분보장)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본인 또는 배우자와 5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자가 총장후보자가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공모·자격조사 과정에서 <u>후보지원자</u>의 사생활과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조사와 관련된 <u>후보지원자</u>의 개인적인 정보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총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총장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경고, 시정명령, 해촉,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신분보장)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본인 또는 배우자와 5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자가 <u>총장후보지원자</u>
--	---

된 경우 제16조(위원에 대한 기피) ①총장후보자는 특정한 관리위원회 위원이 자격조사 등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장 초빙위원회 제17조(구성) ①관리위원회는 총장 임용후보자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초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초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학내 외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위원 5인 :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제	가 된 경우 제16조(위원의 기피·회피) ①총장후보지원자는 특정한 관리위원회 위원이 자격조사 등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스스로 총장후보지원자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장 초빙위원회 제17조(구성) ①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자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초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초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학내 외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위원 5인: 전임교원 중에서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
--	--

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직원위원 2인 : 직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학생위원 1인 : 재학생 중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4. 학외위원 3인 :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초빙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총장은 지체 없이 총원하여야 한다. ④초빙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총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초빙위원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⑥초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업무) 초빙위원회는 공모 결과 학외총장후보지원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외총장후보자의 초빙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2. 학외총장후보자의 초빙 요건을 확정하는 업무	<u>회 위원장이 임명한다.</u> 2. 직원위원 2인: <u>직원 중에서 직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u> 3. 학생위원 1인: <u>재학생 중에서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u> 4. 학외위원 3인: <u>총장의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u> ③ 초빙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u>관리위원회</u>는 지체 없이 총원하여야 한다. ④초빙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총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초빙위원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⑥초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업무) 초빙위원회는 공모 결과 학외총장후보지원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학외총장후보지원자</u>의 초빙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2. <u>학외총장후보지원자</u>의 초빙 요건을 확정하는 업무
--	---

3.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된 자를 대상으로 총장후보자 접수에 관해 홍보하거나 설득하는 업무 4. 기타 학외총장후보자의 초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19조(준용규정) 초빙위원회 위원 의 임명·임기, 위원의 결격 사유, 위 원장의 직무, 의결, 위원의 신분보 장, 의무, 기피에 관한 사항은 제9 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 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추천위원회 제20조(구성) ①관리위원회 위원장 은 총장 임기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을 포함하여 50인의 학내외 위원 으로 구성되며,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위원 및 직원위원 34인: 교원위원은 전공단위별 구분, 직원 위원은 직종단위별 구분에 의거하여 각각 무작위로 추천하여 선발한다.	3.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된 자를 대상으로 <u>총장후보지원자</u> 접수에 관 해 홍보하거나 설득하는 업무 4. 기타 <u>학외총장후보지원자</u>의 초 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 무 제19조(준용규정) 초빙위원회 위원 의 임명·임기, 위원의 결격 사유, 위 원장의 직무, 의결, 위원의 신분보 장, 의무, 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 13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추천위원회 제20조(구성) ①관리위원회 위원장 은 총장 임기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을 포함하여 50인의 학내외 위원 으로 구성되며,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교원위원 30인: 전공단위별 구 분에 의거하여 무작위로 추천하여 선발한다.</u> 2. <u>직원위원 4인: 직종단위별 구 분에 의거하여 무작위로 추천하여</u>
---	---

2. 조교위원 1인 :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발한다. 3. 학생위원 2인 : 학부 재학생과 대학원 재학생 중 각 1인을 무작위 추첨하여 선발한다. 4. 학외위원 13인 : 총장, 총동창회장, 기성회장, 대전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언론계,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③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 외부위원은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총장은 제6조의 1차 본심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결원이 발생해도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지 아니 한다. ⑥기타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업무)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u>선발한다.</u> 3. 조교위원 1인: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발한다. 4. 학생위원 2인: <u>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u> 위원과 <u>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u>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발한다. 5. <u>외부위원 13인: 총장, 총동창회, 기성회, 교수회, 직원협의회, 총학생회가 정치·행정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사회계, 보건·과학기술계의 각 분야에</u>서 각각 2인(여성 3인 이상 포함)을 추천하고,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발한다. ③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 외부위원은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의 1차 본심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결원이 발생해도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지 아니 한다. ⑥기타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업무)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1차 본심사 및 2차 본심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 2. 1, 2순위 총장후보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최종 선정하여 총장에게 통지하는 업무 3.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총장 후보자의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제22조(본심사의 평가지표) ①총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진행한다. 1. 학문적 업적과 교육 철학 2. 대학발전계획서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3. 대학경영능력과 리더십 4. 중앙 및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경력 5. 본교에 대한 행·재정적 기여도 6. 도덕성 ②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거쳐 총장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1. 1차 심사: 서류심사(대학 발전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및 면접 심사	1. 1차 본심사 및 2차 본심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 2. 1, 2순위 <u>총장후보지원자</u>를 <u>총장후보자로</u> 최종 선정하여 총장에게 통지하는 업무 3.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u>총장후보지원자</u>의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제22조(본심사의 평가지표) ①총장 후보지원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진행한다. 1. 학문적 업적과 교육 철학 2. 대학발전계획서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3. 대학경영능력과 리더십 4. 중앙 및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경력 5. 본교에 대한 행·재정적 기여도 6. 도덕성 ②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거쳐 <u>총장후보자</u>를 결정한다. 1. <u>1차 본심사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1인 2표(2인의 후보지원자에 기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순위에 따라 5인 이내(초빙위원회의 초빙에 응한 학외총장후보지원자가 있을 경우에</u>
---	---

2. 2차 심사: 연설회, 토론회 등을 종합하여 심사 ③본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선정결과 공표 및 통보) 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	는 득표순위와 상관없이 포함)의 총장후보지원자를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복수의 총장후보지원자가 동일한 득표를 하였을 경우에는 모두 포함하여 2차 심사 대상자를 결정한다. 2. 2차 본심사에서는 각 1회 이상의 연설회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한 후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고 득표 순위에 따라 2인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한다. 3. 2차 본심사 결과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순위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총장후보자로 확정한다. 다만, 2차 심사 제1차 투표에서 1, 2순위자의 득표수의 합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3순위자를 포함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연설회 등을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본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선정결과 공표 및 통보)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	--

하는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추천위원회 위원 의 임명·임기, 위원의 결격 사유, 위 원장의 직무, 의결, 위원의 신분보 장, 의무, 기피에 관한 사항은 제9 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 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총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추천위원회 위원 의 임명·임기, 위원의 결격 사유, 위 원장의 직무, 의결, 위원의 신분보 장, 의무, <u>기피·회피</u>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 13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추 천위원회의 최종 총장후보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총장후 보지원자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총장후보자가 선정된 날부터 3일 이 내에 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소속 2.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4. 증빙 자료 ③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 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총장후보지원자가 다음 각 호의
--	---

	<u>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 무효를 의결할 수 있다.</u> <u>1. 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u> <u>2.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총장 후보자 선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u> <u>제27(재선정) ①관리위원회는 제26조 제4항에 따라 총장후보자의 선정 무효를 의결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재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②제1항에 따른 재선정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는 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u>
제6장 총장임용후보자의 추천	제6장 <u>총장후보자의 임용추천</u>
제26조(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총장은 추천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2인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총장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28조(<u>총장후보자</u> 추천) 총장은 추천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2인의 <u>총장후보자</u> 를 총장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u>임용추천</u>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27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이 규정의 제20조 제2항 추천위원회 위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은 공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정·보완한다.	제2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

제2장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1. 세칙 개정안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12. 12. 28.	제정
2013. 12. 31.	개정
2014. 4. 29.	개정
2015. 00. 0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총장후보자 공모

제2조(총장후보자 모집 공고 및 접수) ①규정 제3조에 따라 총장후보자 모집 공고는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일간지 등에 후보 자격, 제출서류, 제출방법, 접수기간, 접수처 및 문의처 등을 적시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총장후보자 모집 공고에 따라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가 되려는 자(이하 “후보지원자”라 한다)는 접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1. 총장후보자 지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최종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1부
4. 이력서(연구업적목록 포함) 1부(별지 제3호 서식)
5. 5건 이내의 대표실적물 각 1부
6. 서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7. 대학발전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8. 추천인 명부 1부(별지 제6호 서식) 및 추천서
9. 기타 필요한 서류

③규정 제4조제4호에 따른 추천은 5개 이상의 단과대학에서 각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관리위원회는 후보지원자가 지원서를 접수하는 즉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접수서류의 보정 등) ①관리위원회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두어 후보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미비한 사항을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위원회는 후보지원자가 보정기간까지 접수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관리위원회가 접수를 무효로 결정하거나 자격을 박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총장후보지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지원자 또는 선거 관련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심사하여 제7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단, 심사는 상당한 신빙성을 확보한 있는 서류 또는 물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심사 결과 증거 자료가 부족하거나 부정행위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리한다).

②관리위원회는 신고 받은 부정행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든 총장후보지원자에게 즉시 고지하고, 총장 및 추천위원회에 통보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제5조(총장후보지원자의 사퇴) ①총장후보지원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회는 후보지원자가 사퇴·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위원회

제6조(위원의 추천)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 교수회와 직원협의회는 각각 교수평의회와 직원협의회 이사회에 추천권을 위임하여 결정한다.

제7조(회의) ①관리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 이후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총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장후보지원자가 회의 결과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자격조사) ①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모 및 초빙에 의한 총장후보지원자의 자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상벌에 관한 사항
2. 경력 및 자료의 진위와 누락에 관한 사항
3.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사항
4. 기타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②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후보지원자 및 참고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리위원회가 2회 이상 서면 또는 유무선전화로 소환하여도 총장후보지원자

및 참고인 등이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자료의 공개·열람 등) ①관리위원회는 공모 및 초빙에 응한 총장후보지원자의 제출서류 등을 총장후보지원자와 그 대리인 등 열람자의 범위를 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단 총장후보지원자의 추천인 명부와 추천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예비 연설회 및 토론회) ①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예비 연설회는 추첨에 따라 발표 순서를 정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총장후보지원자별 20분 이내로 한다.

②예비 토론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좌석은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모든 지원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③예비 연설회와 토론회의 전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하여 차기 총장이 임명되는 날까지 충남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장 초빙위원회

제11조(위원의 추천) ①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초빙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경우 교수회, 직원협의회, 총학생회는 각각 교수평의회, 직원협의회 이사회,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추천권을 위임하여 결정한다.

제12조(학외총장후보지원자의 초빙) ①학외총장후보지원자의 초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원, 직원, 학생 등 학내구성원들의 여론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학외총장후보자의 초빙 요건을 확정할 때는 규정 제22조 제1항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규정) 초빙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5장 추천위원회

제14조(교원위원의 구성) ①추천위원회 교원위원의 인원수는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소속전임교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공단위 I (인문사회계열)	전공단위 II(이공계열)	전공단위 III(의약계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예술대학, 자유전공학부, 사범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평화안보대학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

②전공단위별로 제1항에서 배정된 인원을 무작위 추첨하여 선발하되, 여성위원을 20%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직원위원의 구성) ①추천위원회 직원위원의 인원은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일반직·학예연구직·기록연구직·전문경력관·관리운영직 포함)과 기성회직(기성회계약직 포함)별로 각 2인을 배정한다.

②공무원 중에서 여성이 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성회직 중에서 여성을 1인 이상 선발한다.

제16조(학생위원의 구성) 추천위원회 학생위원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각 1인을 선발한다.

제17조(외부위원의 구성) 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은 규정 제2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추천받은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발하되, 여성을 3인 이상 선발한다.

제18조(위원의 선발방식) ① 제14조 내지 제17조의 추천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불참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다.
② 규정 제2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을 추천할 때 총동창회, 기성회, 교수회, 직원협의회, 총학생회는 각각 총동창회 이사회, 기성회 이사회, 교수회 운영위원회, 직원협의회 이사회,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추천권을 위임하여 결정한다.

제19조(준용규정)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단, 회의는 추천위원회 위원장 또는 10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장 보 칙

제20조(수당) 모든 위원회의 학외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을 참조하여 각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5. 00. 0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이 세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이나 각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

[총장후보자 지원서]

○ 성 명 :

○ 현 주 소 :

○ 연 락 처 : Tel)

C. P.)

상기 본인은 충남대학교 제○○대 총장 공개모집에 응모하기 위하여 불임의 자료를 작성하여 지원서를 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서류>

가. 자기소개서 1부

나. 최종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1부

다. 이력서(연구업적목록 포함) 1부

라. 5건 이내의 대표 실적물 각 1부

마. 서약서 1부

바. 대학발전계획서 1부

사. 추천인 명부 1부 및 추천서

아. 기타 필요한 서류

※ 1)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2) 첨부서류는 총 제출매수를 기준으로 하여 일련번호를 매겨 제출
(예시 : 총 제출매수가 10장이면 10-1, 10-2, -----, 10-10)

년 월 일

총장후보지원자

(인)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교육·연구, 리더십, 대외협력, 행정, 봉사활동 등에 관한 기술
(글자크기: 11포인트, 분량: A4용지 5매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사 진
※ 최근 3개
월 이내에 촬
영한 반명함
판으로 부착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현 근무처		직위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	자택 :	휴대전화 :
e-mail			

2. 학력(대학이상 학력만 기재)

기간	학교	전공	학위	비고

3. 경력(별지 추가 사용 가능)

기 간	기 관	직위·직급	비 고

4. 연구업적

항목	국제학술지	전국규모학술지	특 허	전국규모전 입상
연구업적 총 실적	편	편	건	건

① 국제학술지(주요논문 10편 이내)

연번	이름	공저 차수	제 목	게재일자 (등록일자)	게재학술지명 (권,호,쪽)	비고

② 국제적수준/전국규모학술지(주요논문 10편 이내)

연번	이름	공저 자수	제 목	게재일자 (등록일자)	게재학술지명 (권,호,쪽)	비고

③ 특허(주요특허 10건 이내)

연번	이름	특허명	등록일자	등록번호	국가명	비고

④ 전국규모전 입상(주요입상 10건 이내)

연번	이름	입상내용	입상일자	국가명	비 고

⑤ 저서(주요저서 10권 이내)

연번	이름	공저 자수	제 목	출판일자	출판사명	비고

5. 병역사항 및 상훈

병역 사항	병역구분	필/면제	상훈 및 포상	종류	수여일자	수여기관
	복무기간	~				
	군별					
	계급					
	병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총장후보지원자 : (인)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충남대학교 제〇〇대 총장 공개모집에 지원한(초빙 받은) 총장후보지원자로서 선정 절차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모 과정에 있어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선정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세칙을 준수한다.
2.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로 총장후보지원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하며, 비난·음해 등 선량한 풍습, 기타 공모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총장후보지원자 상호간의 협약된 사항은 철저히 준수하고 선정결과에 승복한다.

20 년 월 일

총장후보지원자 : (인)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대 학 발 전 계 획 서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세, 대학 발전방안, 기관운영방침 및 경영선진화 계획, 조직관리, 공직윤리 등을 포함하여 기술
(글자크기: 11포인트, 분량: A4용지 5매 이내)

[별지 제6호 서식]

추천인 명부

[illegible]

추천서(예시)

☐ 피추천인

○ 성 명 :

○ 소속 및 직위:

☐ 추천인

○ 성 명 :

○ 소속 및 직위:

○ 주 소:

○ 전 화 번 호:

상기 본인은 충남대학교 제○○대 총장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
가 충남대학교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학식과 덕망을 지니고 통솔력과 행
정능력을 고루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인)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총장후보지원자 신청서류 접수증

총장후보지원자 접수신청서류 접수증 원부	
시 행 명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선 정에 관한 공모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시	. . .
후보자명	
제 출 서 류	
1. 총장후보자 지원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최종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1부 4. 이력서 1부 5. 대표 실적물 각 1부 6. 서약서 1부 7. 대학발전계획서 1부 8. 추천서	

직 인

접 수
자 인

총장후보지원자 접수신청서류 접수증	
시 행 명	충남대학교 총장후보 선정에 관한 공모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시	. . .
후보자명	
제 출 서 류	
1. 총장후보자 지원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최종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 기 사본 1부 4. 이력서 1부 5. 대표 실적물 각 1부 6. 서약서 1부 7. 대학발전계획서 1부 8. 추천서	
상기와 같이 총장후보자 신청 서류를 정히 접수함.	
20 년 월 일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선정 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접수자	(인)

[별지 제8호 서식]

후 보 사 퇴 신 고 서

- 후보지원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 퇴 사 유 :

위 본인은 충남대학교 제○○대 총장 공모에 있어서
총장후보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총장후보지원자

①인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공 고 제 - 호

총장 후보 지원자 접수 등 공 고

충남대학교 제〇〇대 총장 공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총장후보지원자가 접수(사퇴, 사망, 접수무효, 자격박탈)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접수번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세)	사유	비 고

년 월 일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총장후보지원자 접수무효(자격박탈) 통지

수 신 : 총장후보지원자 ○○○

제 목 : 총장후보지원자 접수무효(자격박탈) 통지

충남대학교 제○○대 총장 공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총장후보지원자가 접수무효(자격박탈) 되었기에 이를 통지 합
니다.

접수번호	후보지원자 성명	접수무효(자격박탈) 년 월 일	사 유

년 월 일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기타 제 1호 서식]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 공모

충남대학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세계적인 일류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학식과 덕망이 높고 통솔력과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분을 총장으로 공개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 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분
- 나. 총장임기 만료일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분
- 다.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학내교원인 분

2. 제출서류

- 가. 총장후보자 지원서 1부
- 나. 자기소개서 1부
- 다. 최종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1부
- 라. 이력서(연구업적목록 포함) 1부
- 마. 5건 이내의 대표 실적물 각 1부
- 바. 서약서 1부
- 사. 대학발전계획서 1부
- 아. 추천인 명부 1부 및 추천서

☞ 제출양식은 충남대학교 홈페이지(www.cnu.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제출기한 : 20 . . . 18: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e-mail 제출 불가)
5. 접수처 :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교무처)
6. 기타사항
- 가.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경우는 마감일시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7. 문의처
- 가. Tel : 042-821-
 - 나. Fax : 042-821-
 - 다. Homepage : www.cnu.ac.kr

20 년 월 일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인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총장임용후보자 공모 제2조(총장후보자 모집 공고 및 접수) ①규정 제3조에 따라 총장후보자 모집 공고는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일간지 등에 지원 자격, 제출서류, 접수기간, 제출방법, 접수처 및 문의처 등을 적시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총장후보자 모집 공고에 따라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가 되려는 자(이하 “후보지원자”라 한다)는 접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1. 총장후보자 지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u>총장후보자</u> 공모 제2조(총장후보자 모집 공고 및 접수) ①규정 제3조에 따라 총장후보자 모집 공고는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일간지 등에 <u>후보</u> 자격, 제출서류, 제출방법, 접수기간, 접수처 및 문의처 등을 적시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총장후보자 모집 공고에 따라 충남대학교 총장후보자가 되려는 자(이하 “후보지원자”라 한다)는 접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1. 총장후보자 지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최종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 기 사본 1부 4. 이력서(연구업적목록 포함) 1부 (별지 제3호 서식) 5. 5건 이내의 대표실적물 각 1부 6. 서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7. 대학발전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8. 충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서 발 행한 발전기금 납부증명서류 1부 9. 기타 필요한 서류 ③후보지원자는 지원서 접수기간 내 에 3,000만원을 충남대학교 발전기 금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금 은 사퇴나 공모결과에 관계없이 반 환하지 아니한다. ④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지원서를 접수하는 즉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접수서류의 보정 등) ①관리위 원회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두어 후보지원자 가 제출한 서류의 미비한 사항을 보	2.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최종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 기 사본 1부 4. 이력서(연구업적목록 포함) 1부 (별지 제3호 서식) 5. 5건 이내의 대표실적물 각 1부 6. 서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7. 대학발전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삭제 8. 추천인 명부 1부(별지 제6호 서 식) 및 추천서 9. 기타 필요한 서류 - 삭제 ③규정 제4조제4호에 따른 추천은 5 개 이상의 단과대학에서 각 2인 이 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관리위원회는 <u>후보지원자</u>가 지원 서를 접수하는 즉시 접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3조(접수서류의 보정 등) ①관리위 원회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두어 후보지원자 가 제출한 서류의 미비한 사항을 보
--	---

정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위원회는 후보지원자가 보정 기간까지 접수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관리위원회가 접수를 무효로 결정하거나 자격을 박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총장후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자 또는 선거 관련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심사하여 제7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단, 심사는 상당한 신빙성을 확보한 있는 서류 또는 물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심사 결과 증거 자료가 부족하거나 부정행위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리한다). ②관리위원회는 신고 받은 부정행위에 대한 심사 결과를 총장후보자에게 즉시 고지하고, 총장 및 추천위원회에 통보한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경우에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처	정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위원회는 후보지원자가 보정 기간까지 접수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관리위원회가 접수를 무효로 결정하거나 자격을 박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u>총장후보지원자</u>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지원자 또는 선거 관련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심사하여 <u>제8조</u>에 따라 처리한다(단, 심사는 상당한 신빙성을 확보한 있는 서류 또는 물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심사 결과 증거 자료가 부족하거나 부정행위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리한다). ②관리위원회는 신고 받은 부정행위에 대한 심사 결과를 <u>모든 총장후보지원자</u>에게 즉시 고지하고, 총장 및 추천위원회에 통보한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경우에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처
---	--

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제5조(총장후보자의 사퇴) ①총장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위원회 제6조(회의) ①관리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 이후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총장에게 통보하여 필요	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제5조(총장후보지원자의 사퇴) ①총장후보지원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회는 후보지원자가 사퇴·사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위원회 제6조(위원의 추천)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교수회와 직원협의회는 각각 교수평의회와 직원협의회 이사회에 추천권을 위임하여 결정한다. 제7조(회의) ①관리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 이후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총장에게 통보하여 필요
--	--

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장후보자가 회의 결과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자격조사) ①관리위원회는 총장 임용선정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모 및 초빙에 의한 총장후보자의 자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후보자 및 참고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리위원회가 2회 이상 서면 또는 유무선전화로 소환하여도 총장후보자 및 참고인 등이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자료의 공개·열람 등) ①관리위원회는 공모 및 초빙에 응한 총장후보자의 제출서류 등을 총장후보자와	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관리위원회 위원장은 <u>총장후보지원자</u>가 회의 결과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자격조사) ①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모 및 초빙에 의한 총장후보지원자의 자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상벌에 관한 사항 2. 경력 및 자료의 진위와 누락에 관한 사항 3.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사항 4. 기타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②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총장후보지원자</u> 및 참고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리위원회가 2회 이상 서면 또는 유무선전화로 소환하여도 <u>총장후보지원자</u> 및 참고인 등이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자료의 공개·열람 등) ①관리위원회는 공모 및 초빙에 응한 총장후보지원자의 제출서류 등을 총장후보
---	---

그 대리인 등 열람자의 범위를 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초빙위원회	지원자와 그 대리인 등 열람자의 범위를 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단 <u>총장 후보지원자의 추천인 명부와 추천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u> ②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예비 연설회 및 토론회) ①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u>예비 연설회는 추천에 따라 발표 순서를 정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총장 후보지원자별 20분 이내로 한다.</u> ②예비 토론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u>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좌석은 추천에 의하여 정하며, 모든 지원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u> ③예비 연설회와 토론회의 전 과정은 <u>영상으로 녹화하여 차기 총장이 임명되는 날까지 충남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u> 제4장 초빙위원회 제11조(위원의 추천) ①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초빙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경우 교수회, 직원협의회, 총학생회는 각각 교수평의회, 직
---	--

제9조(총장후보자의 초빙) ①학외총장 후보자의 초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원, 교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여론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학외총장후보자의 초빙 요건을 확정할 때는 규정 제22조 제1항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규정) 초빙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5장 추천위원회 제11조(구성) 추천위원회 교원위원의 인원수는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표의 전임교원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u>원협의회 이사회,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추천권을 위임하여 결정한다.</u> 제12조(학외총장후보지원자의 초빙) ①<u>학외총장후보지원자</u>의 초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원, 교직원, 학생 등 학내구성원들의 여론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u>학외총장후보지원자</u>의 초빙 요건을 확정할 때는 규정 제22조 제1항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규정) 초빙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5장 추천위원회 제14조(교원위원의 구성) ①추천위원회 교원위원의 인원수는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소속전임교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전공단위Ⅰ (인문사회계열)	전공단위Ⅱ (이공계열)	전공단위Ⅲ (의약계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예술대학, 자유전공학부, 사범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평화안보대학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

* 인원 배정 : 전공단위Ⅰ(남/여) -명, 전공단위Ⅱ(남/여) -명, 전공단위Ⅲ(남/여) -명

②전공단위별로 제1항에서 배정된 인원을 무작위 추첨하여 선발하되, 여성위원을 20%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직원위원의 구성) ①추천위원회
직원위원의 인원수는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일반직·학예연구직·기록연구직·전문경력관·관리운영직 포함)과 기성회직(기성회계약직 포함)별로 각 2인을 배정한다.

②공무원 중에서 여성이 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성회직 중에서 여성을 1인 이상 선발한다.

제16조(학생위원의 구성) 추천위원회
학생위원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작위

제12조(심사 방법) ①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규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항목을 참작하여 시행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본심사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무기명 비밀	<u>추첨으로 각 1인을 선발한다.</u> 제17조(외부위원의 구성) 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은 규정 제2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추천받은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천하여 선발하되, 여성을 3인 이상 선발한다. 제18조(위원의 선발방식) ①제14조 내지 제17조의 추천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불참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다. ②규정 제2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을 추천할 때 총동창회, 기성회, 교수회, 직원협의회, 총학생회는 각각 총동창회 이사회, 기성회 이사회, 교수회 운영위원회, 직원협의회 이사회,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추천권을 위임하여 결정한다.
---	---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순위에 따라 5인 이내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복수의 총장후보자가 동일한 득표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총장후보자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심사·투표하여 2차 심사 대상자를 결정한다. 2. 2차 본심사에서는 각 1회 이상의 연설회 및 토론회 등을 참작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위에 따라 2인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한다. 3. 2차 본심사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순위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하고 총장임용후보자로 확정한다. 다만, 2차 심사 제1차 투표에서 1,2순위자의 득표수의 합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3순위자를 포함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②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연설회 등을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삭 제>	②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연설회 등을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	---

제14조 <삭 제> 제15조(준용규정)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단, 회의는 추천위원회 위원장 또는 10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장 보 칙 제16조(수당) 모든 위원회의 학외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을 참조하여 각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준용규정)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단, 회의는 추천위원회 위원장 또는 10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장 보 칙 제20조(수당) 모든 위원회의 학외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을 참조하여 각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5. 00. 0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기타) 이 세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이나 각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이 세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이나 각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참고문헌 >

- 강원근 (1997). 한국의 대학총장선출규정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5(2). 80-112.
- 강원근 (2004). 황학대학교 총장선출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2(3) 227-256.
- 강원택 (2006).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126-144.
- 교수신문. 2012년 12월 24일자.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안).
- 김종성 (2009). 국가경쟁력과 대학총장의 리더십. 홍재환·함종석 편저. <국가경쟁력과 리더십>. 한국행정연구원 리더십 연구총서. 파주: 법문사. 281-307.
- 김종성 (2013). 국립대학 총장의 선임제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4(2). 229-251.
- 김종성 외 (2004). 총장선출제도 개선안. 충남대학교 교수협의회.
- 김종철·강영삼·송미섭·허범 (1984). <총·학장의 직무분석과 대학내부행정체제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1997). <민교협 10년사>.
- 박경미 (2010). 결선투표제의 상이한 정치적 결과: 프랑스와 브라질의 정치개혁. <현대정치연구> 3(2). 251-275.
- 박엘리사 (2006). 한국 대학 총장평가 현황분석 및 대학구성원 의견조사. <교육행정학연구> 24(4). 389-414.
- 박재규 외 (1992). <현행 대학총장선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변기용·강현선·권소연 (2011). 국립대학 학내 거버넌스의 변천과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제17권 제1호. 121-155.
- 상명대학교 (2005).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인정을 위한 상명대학교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상명대학교 자체평가연구위원회.
- 서울대학교 (2006). <서울대학교 2002-2006 비전과 변화>. 서울대학교 기

확실.

- 성낙인 (2007). 대학의 자치(자율)와 국립대학 총장선거. <법학> 48(1). 129-159.
- 손경애 (2008). 대학총장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과 직무효과성의 관계-대학교수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15(1). 111-129.
- 송지광·한상연 (2005). 한국 대학의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교육행정학연구> 23(3). 353-378.
- 이성호 (1999). 대학총장의 역할과 자질조건. <연세교육과학> 47. 19-34.
- 이재선 (2012). 결선 투표제도에 관한 소고. <정책과학연구> 21(2). 135-158.
- 주경란 (1991). 한·미 사립대학교의 학교운영비교 연구. <고등교육연구> 3(1).
- 차대운 (2006). 대학경영자의 역할과 인적자원중심의 대학발전전략. <인적자원관리연구> 13(1). 183-198.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6). <대학종합평가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대학신문. 2012년 12월 23일자.
- 허 범 (1987). 총·학장의 기능과 역할. <대학교육> 26. 11-16.
- 황홍규 (2010). 대학의 법적 거버넌스에 관한 비교 연구. <교육법학연구> 22(1). 199-234.

- Brown, David G. (1979). *Leadership Vitality: A Workshop for Academic Administrators*.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Kerr, C. & M. L. Gade (1986). *The Many Lives of Academic President: Time, Place and Character*.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Governing Board of University and College.
- Benezet, Louis T. et al. (1981). *Style and Substance: Leadership and the College Presidency*.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Carbone, Robert F. (1981). *Presidential Passages*.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Gade, M. L. (1992). Leadership: University and College Presidents. In Burton R. Clark and Guy R. Neave(ed.). *The Encyclopedia of Higher Education*. Pergman.
- Fincher, C. (2003). *Administrative Leadership: In Academic Governance and Management*. N.Y: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2005). *What Presidents Think: About Higher Education, Their Jobs, and Their Lives*.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November 4.

<부록> 국공립대학 총장후보선정제도 요약표

1. 강릉원주대학교(2014.04.23.)

공모기간	임기만료일 6개월 전, 20일 이상
후보자격	1. 교육공무원법 2. 총장임기종료일 전에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3.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 또는 학외 총장후보자는 박사학위소지자나 1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4. 5개 단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15명 이상의 전임교원 추천을 받은 자 5. 지원서 접수시 2,0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한 자
기탁금	- 1,2순위자는 전액, 3,4순위자는 1,000만원 반환, 5순위 이상은 발전기금 귀속
관리위원회	- 총장이 임기만료 6개월 전까지 구성 - 중립적인 학내위원 7인(교원 6, 직원 1) - 교원: 단과대학 교수회장이 추천한 1인 중에서 총장이 임명 - 직원: 직원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 - 제외: 후보자, 교무위원, 교수회장·부회장, 추천위원, 후보추천자, 휴직·정직·국외파견·장기출장·공로연수자 ※ 관리위에서 후보자 자격심사
초빙활동	- 추천관리위원회에서 초빙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 구성	- 50인: 관리위원회가 임기만료 3개월전까지 구성 - 교원 31인(여성 7): 단과대학별 구성비율. 추첨 선발 - 직원 4인: 일반직, 기성회직원의 인원비율. 추첨 선발 - 학생 2인: 총학생회 간부 중에서 추첨 선발 - 학외위원 13인: 총장추천 6, 교수회추천 12(여3), 직원연합회추천 6(여3), 총동창회추천 9(여3), 기성회추천학부모 6 중에서 13명(여3이상)을 추첨 - 결원시 지체없이 새로 선정. 다만 1차 심사 개시후 선정×
추천위 자격	- 교원: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들 중 총장후보자, 교무위원, 교수회장·부회장, 추천관리위원이 아닌 자 - 직원: 공고일 현재 일반직, 기성회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중 추천관리위원이 아닌 자 - 학생: 공고일 현재 재학 중인 자 중 총학생회 간부인 자 - 학외: 경제계, 법조계, 언론·방송계, 문화계, 교육계 및 기타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신망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5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사람은 제외
심사	- 대학발전에 관한 의지, 발전계획서의 타당성, 후보자의 사회적 영향력, 도덕성, 면접, 정책토론회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수행 - 1차심사: 후보자가 제출한 발전계획서와 기타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 각 후보자에 대해 0,1,2점 부여 - 2차심사: 심층면접과 심층 토론회를 바탕으로 심사 각 후보자에 대해 0,1,2점 부여 - 최종 1, 2순위를 선정하여 총장과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공표
추천	- 총장은 1,2순위 임용후보자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2. 강원대학교(2014.03.31.)

공모기간	임기만료일 5개월전 첫 번째 월요일, 20일 이상
후보자격	1.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총장임기종료일 전에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3. 전임교원 30인 추천(13개 이상 단과대학에서 각 2인 이상) 4. 학외후보자는 30인 추천(5개 이상 단과대학에서 각 2인 이상), 초빙위원회 추천의 후보자는 예외
기탁금(발전기금)	- 2,000만원 발전기금 납부(단 학외후보자는 예외)
후보초빙위원회	- 추천관리단 위원장은 임기만료 6개월전까지 초빙위 확정 - 교원 6, 직원 2, 학생 1, 총장추천학외 2, 평의원회추천학외 2 - 교원: 단과대학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1인씩 추천한 위원후보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6인 선발 - 직원: 직원협의회(대의원회)에서 2인 선발(6급이하 일반직 1, 기능직 1) - 학생: 총학생회에서 1인 선발(총학 중앙운영위 추천과 확대운영위 승인) - 초빙위에서 자격심사 및 추천위에 추천
후보추천관리단	- 총장이 임기만료 7개월전까지 구성 - 7인 이상 9인 이하의 학내위원으로 구성 - 평의원을 2인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결원 발생시 지체없이 보충 - 제외: 후보자, 교무위원, 평의원회 의장·부의장, 초빙위·추천위 위원
임용추천위 구성	- 추천관리단 위원장은 임기만료 4개월전까지 확정하고 지체없이 소집공고 - 50인(여성 20% 이상) - 교원 38인(여성 8): 단과대학에서 불참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교원을 대상으로 각 학문영역별(인문사회, 자연, 공학, 기타) 구성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무작위로 선발. 여성위원 먼저 선발후 나머지 남성위원 선발 - 총장추천초빙위원 2인 포함한 학외위원 3인(여성 1인) - 직원협의회(대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2인 -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초빙위원 2인을 포함한 학외 3인(여성 1인) -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2인 -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1인 - 기성회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위원 1인 - 결원시 지체없이 새로 선정. 다만 2차 심사 개시후 선정×
임용추천위 자격	- 학내위원: 부교수 이상인 자. 단 후보자, 교무위원, 평의원회 의장·부의장, 추천관리단 위원은 제외 - 학외위원: 정·관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방송계, 문화계, 학계 및 기타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과 신망이 있는 자
심사	- 1차심의: 서류심사, 발전계획서 평가 등. 7인 이내의 2차 심의대상자 선정(학외 1인 이상 포함) - 2차심의: 면접,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등. 순위없이 2인을 선정하고, 의결로 최종 1,2순위 후보 확정 및 총장에게 통보
표본인증설문조사	삭제(2014.3.31.)
추천	- 총장은 1,2순위 임용후보자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3. 경남과학기술대학교(2014.04.30.)

공모기간	- 임기만료 170일전까지 50일 이상 공고
후보자격	- 교육공무원 결격사유 - 임기만료일 전에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사람 - 연구진실성검증기간에 검증을 마친 사람 - 중임 제한 - 공탁금 3천만원(1,2위만 반환)
공탁금	- 3,000만원
후보자선정관리위	- 임기만료 180일전까지 구성 - 11명(교수회추천 교원 8, 직원단체추천 직원 3)
임용추천위 구성	- 임기만료일 100일전까지 구성 - 48명: 외부 25/100 이상, 여성 20/100 이상 - 교원: 단과대학별·성별 인원 배정후 무작위 추첨 - 직원: 일반직·기능직·기성회직·조교별 성별 배정후 무작위 추첨 - 학생: 총학, 단대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부회장 중에서 무작위 - 외부: 총장추천 2(여성 1), 교수회의장추천 2(여성1), 직협회장 추천 2(여성1), 지역국회의원추천 2, 광역단체장추천 1, 기초단체장추천 1, 총동문회장추천 1, 기성회장추천 1
임용추천위 자격	- 제외: 총장, 교수회의장, 직원단체장, 학생회장, 관리위원, 연구년·안식년교원, 1월이상 장기공무국외여행·휴직교원, 공로연수, 정직, 직위해제
정책설명회 공개토론회	- 각 1회 이상 개최 - 설명회 1인당 30분 이내, 공개토론회 좌석은 추첨
심사	- 1차: 심사표 작성, 1,2위 선정 - 2차: 추천위 무기명투표, 1,2위 선정

4. 경북대학교(2014.09.25.)

공모	- 관리위원장이 임기만료 85일 이전에 7일(공휴일 포함) 이상 공고
후보 자격	- 교육공무원법, 법규, 학칙, 규정상 결격사유 - 총장 연임 금지 - 총장후보지원자로 등록횟수 2회로 제한
기탁금	- 3000만원 (사실상 기탁금이 아닌 발전기금-반환 안함)
초빙위	- 관리위원회가 공고일 전일까지 구성 - 구성: 부교수 이상 교수위원 5명 본부보직자 또는 학(원)장을 역임한 2인 이상 포함
관리위	- 교수회 의장이 총장임기만료일 90일전까지 구성 - 구성: 재직경력 5년 이상인 평의원 20인, 5년이상인 직원 및 조교 5인 - 교원: 교수회의장이 교수회평의원 중에서 무작위 추첨 - 직원·조교: 일반직(직협) 3, 기성회직 1, 조교 1인을 해당단체에서 추천받는다 - 교수회 의장은 교수회 부의장 중 1인을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추천위 구성	- 관리위원장이 임기만료 45일전까지 설치(3/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 추천위 소집전일 24시까지 외부위원후보자 확정, 소집일 오전에 내·외부 위원 선정 - 48인 - 교수위원: 재직경력 5년 이상인 교원 31인(여성 7인 이상) - 직원위원: 재직경력 5년 이상인 직원 및 조교 4인(여성 1인 이상) - 학생위원: 본교 2,3,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1인 - 외부위원 12인(여성 2인 이상): 별도로 정함 - 관리위원회가 후보자군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 ※ 대학(원)별 5년이상 교원비율에 따라 소수점을 제외한 정수로 배정하고, 잔여 인원은 5년이상 재직교원비율의 소수점 이하 수치 크기에 따라 배분. 이상에 따라 배정받지 못하는 대학(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학으로 간주하여 앞의 방식으로 재배분. 1명 이상의 교수위원이 모든 대학(원)에 배정될 때까지 앞의 방식 반복 ※ 대학(원)별 배정된 교수위원의 4배수를 후보자로 추천하여, 무작위순위를 부여한 후 유무선통신으로 차례로 수락여부 확인 ※ 직원위원: 직원협의회 2인, 대학노조 1인, 조교협의회 1인 ※ 학생위원: 총학생회장, 부회장, 단과대학생회장 중에서 4명 추첨하여 수락여부 확인. 다 거부하면 다시 4명 후보 추첨하여 수락여부 확인 ※ 외부위원: 분야별 해당기관에 각 4인의 후보추천 의뢰(여성 1/4 이상), 추천미달시 총장과 교수회 의장이 1인씩 교대로 추천하여 총원
추천위 자격	- 제외: 총장, 총장후보지원자, 학장회의구성원, 교수회의장, 휴직자, 정직자, 6월 이상해외공무출장중인 자 - 제척: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총장후보지원자가 된 때에는 위원 자격 상실 - 추천위원 48인 1. 교수, 직원, 학생위원은 본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2. 외부위원은 동창회, 기성회를 포함한 정부기관·법인·단체에서 추천된 자
토론회	- 소견발표, 합동토론회, 질의응답
심사	- 1차투표: 최다득표자 5인 선정(동순위자 있으면 모두 포함) - 2차투표: 최다득표자 3인 선정(동순위자 있으면 동순위자만 재투표) - 3차투표: 2인과 순위 결정(첫투표에서 과반득표 있으면, 나머지 2인에 대해 순위결정될 때까지 재투표하여 2위 결정. 과반득표 없으면 3위를 제외하고 2명에 대해 순위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 ※ 후보지원자가 5인 이하이면 1차투표 생략, 3인 이하이면 1,2차 투표 생략
추천	추천위원장은 총장임용후보자 2인과 순위를 관리위원장과 총장에게 즉시 통보

5. 경상대학교(2014.03.28.)

공모기간	공모위원장이 임기만료 4개월 전에 15일간 공고
후보자격	-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총장 임기 만료일 전에 정년에 달하지 않은 자 - 외부인사의 경우, 전임 교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1회 중임 허용
관리위 (후보공모위원회)	- 총장이 임기만료 6개월 이전에 공모위원회 구성 - 교수회장이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 10명, 직원 2명을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 ※ 제외: 후보자, 학무위원, 휴직자·정직자·연구년 중인 자 ※ 재적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로 심의·의결
추천위 구성	- 공모위원회가 임기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구성 - 추천위원 48인 1. 교원위원 31인(여성위원 7인 이상) 2. 직원위원 4인(여성위원 1인 이상) 3. 학생위원 1인 4. 외부위원 12인(여성위원 2인 이상) ※ 선정방법은 따로 정함 ※ 추천위원은 총장임기개시후 2년간 학무위원 임명대상에서 제외
추천위 자격	- 공모위원의 자격과 동일
심사	- 별도로 정함
추천	- 추천위원회는 1, 2순위 임용후보자 선정 종료후 지체없이 결과를 공표하고 총장에게 통보 - 총장이 2인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6. 공주대학교(2012.11.30.)

공모기간	- 관리위원장이 임기만료일 120일 이전에 30일간 공고
후보자격	-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없는 사람 - 임기만료일 전에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사람 - 전임교원 10명의 추천(3개 이상 단과대학에서 각 2명 이상 추천) - 공주대 교직원이 지원하는 경우 10년 이상 재직 - 4년 단임
기탁금	- 2,000만원 - 추천위의 1차심의 통과자에게만 반환
관리위	- 총장이 임기만료일 150일 전까지 구성 1. 각 단과대학 학장이 1명씩 추천한 교원위원 7명(단과대 교수회 임의하에 공개장소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위원 1, 예비 1명씩 추첨) 2. 교수회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평의원 2명 3. 직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위원 2명(5년 이상 재직자중 운영위 임의하에 공개장소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직원 2, 예비 1명 추첨) - 총장후보자, 학무위원 및 교수회 임원 제외 - 과반수 개의, 과반수 의결 - 관리위에서 후보 자격심사
추천위 구성	- 관리위원장이 임기만료일 60일 전까지 명단 확정 소집7일전에 단과대비율에 따라 인원 배정 - 50명(여성 20% 이상, 학외 1/4 이상) ※ 최초 소집된 이후 발생한 결원은 보충하지 않는다 1. 교원위원 31명(여성위원 6명 이상 포함): 여성우선선정, 나머지 단과대비율에 따라 위원후보와 예비후보 선정. 통보후 부동의시 예비 선정 2. 직원위원 4명(여성위원 2명 포함): 여성우선, 나머지는 교원과 동일한 절차 3. 학생위원 2명(여성위원 1명 포함): 총학확대운영위원 대상 여성우선. 기타동일 - 소집 14일 전에 추천의뢰, 대체로 5배수 4. 기초자치단체(공주시, 예산군, 천안시) 및 광역자치단체(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천하는 5명(각 1명) 5.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천하는 1명 6. 충청남도기업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1명 7. 각 캠퍼스별 졸업자 중 4명{공주 캠퍼스 2명(여성위원 1인 포함), 천안, 예산 캠퍼스 각 1명} 8. 기성회 이사회 이사 중 1명 9. 충청남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장학관 이상 교육공무원 중 1명
추천위 자격	1.교원위원은 공주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다만, 총장후보자, 학무위원, 교수회 임원, 관리위원회 위원, 휴직자, 정직자, 연구년·안식년 중인 사람, 공로연수 중인 사람, 총장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직원위원은 공주대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3. 학생위원은 4학기 이상 수료한 사람 4.학외위원은 학계 및 그 밖에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과 신망이 있는 사람
심사	- 1차심의: 서류심사, 발전계획을 포함한 정견발표 다수득표자순으로 2차 심의대상자 5명 선정. 동수이면 모두 포함. - 2차심의: 합동정책토론회 및 질의응답. 과반수득표 있으면 상위 1,2위 선정, 2순위가 동수이면 2순위 재투표, 과반수 없으면 상위2명에 대해 결선투표
추천	- 추천위원회는 후보선정자 확정후 지체없이 결과 공표하고 총장에게 통보 - 총장은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7. 군산대학교(2013.10.08.) - 세척(2012.12.17.)

공모기간	- 초빙위원장이 임기만료 5개월 이전까지 공고(20일간)
후보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임용결격사유 없는 자 - 임기만료일 전에 교육공무원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 본교에서 5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인 자 또는 내·외부인사로 서 해당분야 20년 이상 경력있는자 ※ 4년 단임
기탁금	- 세척에 있으나, 개정전(3,000만원)
초빙위원회	- 관리위원장이 임기만료 6개월 전까지 구성(13인) - 교원(8): 각 대학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1인씩 추천한 6인, 교수평의회에서 평의원 2인 추천 - 직원(4): 전체직원회의에서 선발 - 학생(1): 총학생회에서 1인 선발 ※ 제외: 총장후보, 교무위원, 교수평의회의장, 관리위원 - 초빙위가 요건심사
관리위원회	- 총장이 임기만료일 7개월 이전까지 위원회 구성(12인) - 교원(8): 각 대학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1인씩 추천한 6인,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한 교수평의원 2 - 직원(4): 전체직원회의에서 4인 선발 ※ 제외: 총장후보, 교무위원, 휴직·정직·연구년·공로연수 중인 자
추천위 구성	- 관리위원장이 임용후보 선정당일에 구성 - 48인(여성 20% 이상, 외부 1/4 이상) - 내부(교원, 직원, 학생) 36인, 외부 12인
추천위 자격	- 내부위원은 임기만료 240일전까지 교수, 직원, 학생 대표로 구성된 위원 회에서 합의를 거쳐서 결정 - 외부위원 1. 학내관련단체 6인(총동창회 임원2, 기성회임원2, 발전기금 천만원이상 납부자2) 2. 학외단체 6인(군산시청 국·과장 이상 1, 전북도청 국과장 이상 1, 군산 시상공회의회 의원 이상 1, 군산시보조금받는 시민단체 임원 이상 3) ※ 제척: 총장후보, 관리위원, 초빙위원, 휴직·정직·연구년·공로연수 중인 자
토론회	- 소견발표,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등
심사·선정	- 임기만료일 전년 12월 두 번째 수요일 - 후보자가 5인 미만인 경우 1차투표로 2인 선정(1순위자 과반미달시 2인 재투표로 추천 1,2순위 확정) - 후보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1차 투표로 5인, 2차투표로 2인 선정 - 후보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1차투표로 7인, 2차투표로 5인, 3차투표로 2인 선정 -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득표수가 추천위 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함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학내이면 재직년수, 학내·학외, 학외이면 연장자
추천	- 추천위원회는 선정 종료후 지체없이 결과 공표, 총장에게 통보 - 총장은 임기만료일 5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8. 목포대학교(2014.04.25.)

공모기간	- 관리단장이 7일 이상 공고
후보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교 전임교원으로 10년 이상 재직중인 자 또는 전임 3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 임기만료일 전에 정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 ※ 3-5인의 공개추천인을 밝혀야 함.
기탁금	- 2천만원 - 총추위 1차투표에서 15% 미만 득표시 반환×, 15-20%미만시 반액, 20% 이상 전액
관리단	- 교수평의회회의장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총장에게 추천, 총장이 임명 - 교수평의회 평의원 16인(부의장, 사무국장, 편집위원장, 분과위원장 당 연직) - 교무위원중 10인(총장이 처장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의장에게 추천) - 직원위원 5인(직원협의회장 임원을 포함하여 5인을 의장에게 추천) ※ 재적 2/3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과반수로 의결
추천위 구성	- 34인(교수 21, 직원 3, 학생 1, 외부 9) - 교수: 단과대학별로 전임교원들이 배정된 인원수대로 무작위로 선정 선정일 현재 휴직·정직, 국외파견, 6개월이상 출장인 자는 선정·피선 정권 제한 - 직원: 직원중에서 3인 선정(여성 1인 포함) 휴직·정직, 국외파견, 6개월장기출장, 공로연수 중인 자는 선정·피선 정권 제한 - 학생: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임원진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입후보자와 동일학과 소속 학생은 제외 - 외부: 등록기간에 공모하고, 지원자중 교수회에서 8인, 직원협의회에서 1인을 투표하여 선정(여성 4인 이상) 지원자가 9인(여성 4인) 미만이면, 관리단장이 추가 공모
추천위 자격	- 제외: 관리단위원, 입후보자 및 공개추천인, 총장, 교수평의회회의장, 입후보자및그배우자와 5촌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심사·선정	- 임기만료일 12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선출 - 입후보자 4인 이상: 과반득표자 있으면 1,2위, 없으면 3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로 1,2위 결정 - 입후보자 3인 이하: 1차투표에서 득표순으로 1,2위 결정
추천	- 총추위원장이 투표결과를 총장에게 통보 - 총장이 순위를 명기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없이 추천

9. 부경대학교(2014.03.12.)

공모기간	- 관리위원장이 임기만료일 150일 이전까지 공고, 20일 이상
후보자격	-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 전임교원 30인 이상 추천(각 단과대학별 2인 이상)
관리위원회	- 총장이 임기만료일 7개월전까지 구성 - 7인 이상 11인 이하의 학내위원(평의원 2인까지 포함 가능) - 위원장은 교수회장 ※ 제외: 후보자, 교무위원, 평의원회 의장, 총추위원
추천위 구성	- 관리위원장이 임기만료일 4개월전까지 명단 확정 - 50인(여성 20% 이상) - 교원 및 직원(35인, 여성 9인 이상):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 -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외 5인(여성 1인 이상) - 직원단체 추천 학외 4인 - 총동창회 추천 학외 4인 - 기성회 이사회 추천 학부모위원 2
추천위 자격	- 교원: 부교수 이상인 자, 후보자, 교무위원, 평의원회 의장, 관리위원 제외 - 직원: 5년 이상 재직 - 학외: 전문적 능력과 신망 ※ 제척·기피·회피: 후보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 또는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심사·선정	- 발전계획서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회적 영향력, 대학발전의지, 도덕성, 정책토론회의 우수성 등 - 1차: 발전계획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5인(학외 1인 이상) 이내 결정(동점 포함) - 2차: 연구윤리검증,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후 1인 2표로 다득표자 2인 선정, 1인1표로 1,2순위 확정, 동수이면 순위결정때까지 재투표
추천	- 추천위는 결정된후 지체없이 결과 공표, 총장에게 통보 - 총장은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10. 부산대학교(2014.03.31.)

공모기간	- 공모위원장이 임기만료 5개월 전에 공모공고, 15일간.	
후보자격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결격사유 없는 자 - 등록당시 임기만료 익일부터 정년에 달하지 않은 자 - 외부인사의 경우 전임교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탁금	- 세척에서 기탁금 2,000만원(사실상 발전기금, 반환 없음)	
공모위	- 총장은 임기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공모위원회 구성 - 교수회장 당연직, 교수회장이 추천하는 4명, 직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직원 1인을 포함한 10명의 임명직위원으로 구성. 임명직은 총장이 임명 (1+4+1+4)(세척과 상이) ※ 제외: 후보등록자, 교무위원, 휴직·정직·연구년 중인 자 - 재적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과반수로 의결(후보등록자 자격박탈은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제척·기피·회피: 후보등록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 또는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행정지원실	- 공모위, 검증위, 추천위의 모든 운영을 지원하는 행정기구	
검증위원회	- 총장은 임기만료 4개월 이전까지 검증위 구성 - 9명: 인문사회 2, 자연 2, 공학 2, 의학 2, 예체능 1(교수회장 추천 5인 포함) - 토론, 진술, 면접, 자문 등의 진행 관리 - 선정일 1주일 전까지 공모위원회에 검증결과 보고서 제출	
추천위 구성	- 공모위원회는 선정일 07시부터 지정된 비밀장소에서 무작위추첨으로 위원 선정 - 총 50명: 교원 32(여성 6 이상), 직원 4(여성 2), 학생 1, 외부 13(여성 2) - 구성은 세척에서 규정	
	교원 (32)	- 남성(26): 인문사회·자연·공학·의학·예체능으로 계열별/직급별 비례 - 여성(6): 계열별(직급구분없이) 비례 배정. 무작위추첨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외: 연구년, 장단기파견, 징계처분중이거나징계종인자
	직원 (4)	- 3년이상(5급이상은 1년이상) 재직. 무작위추첨 - 제외: 휴직, 장단기파견, 징계처분중이거나징계종인자 - 5급 이상에서 1명 - 남성: 5급 미만 중에서 1명 - 여성: 5급 미만 중에서 일반직·전문경력직·관리운영직 1, 기성회(기성회계약직 포함) 1명
	학생(1)	- 단과대학 이상의 선출직 학생간부 중에 1명 추첨
	외부 (13)	- 학부모대표 추천 1명 - 총동문회장 추천 1명 - 기타(11): 학술원회장추천, 대한변협회장추천, 학단연회장추천, 여성단체회장,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제경영인단체, 부산시장추천, 부산언론사대표추천, 국교련상임회장추천, 부산·양산·밀양 시민공모(3) - 5배수를 추천(일부 3배수, 일부 1명)
추천위 자격	- 제외: 공모위, 검증위, 행정지원실 직원	
심사·선정	- 추천위는 선정일 당일 추천위 2/3 이상 출석하면 회의 개최 - 선정절차는 세척	
	- 재적 2/3 이상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와 차순위자 선정 - 과반수없으면 3위까지 2차 투표하여 과반수와 차순위자 선정 - 2차에도 과반수 없으면 2위까지 3차투표하여 득표순으로 선정 - 각 차수별 투표에서 동수이면 총누적득표수가 많은 자로 선정	
추천	- 추천위는 선정 종료후 지체없이 결과 공표, 총장에게 통보 - 총장은 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2014.04.30.)

공모기간	- 공모위원장이 임기만료일 5개월 전 첫 번째 월요일에 공고, 15일간.
후보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없는 자 - 전임 30인 추천(5개 이상 단과대학(원)에서 각 3인 이상 추천)
공모위원회	- 관리위원장이 임기만료일 6개월전까지 공모위원 확정 - 교원 8, 직원및조교 2, 학생 1, 총장추천학외위원 1, 평의회추천학외위원 2 - 교원: 각 대학(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2-4인 추천을 받아 8인으로 구성 - 직원및조교: 직원 및 조교협의회에서 2인 선발 - 학생: 총학생회에서 1인 선발 ※ 제외: 후보자, 교무위원, 평의회 의장·부의장, 관리위원 ※ 결격사유: 국가공무원 제33조, 정당 당원,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후보등록한 자 ※ 제척·기피·회피: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 또는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관리위원회	- 총장은 임기만료일 7개월전까지 관리위원회 구성 - 7인 이상 10인 이하 학내위원으로 구성(평의회 의원 2인까지 포함 가능) - 각 대학(원)의 교원비율에 따라 2인 이하를 추천받아 총장이 구성 ※ 제외: 후보자, 교무위원, 평의회 의장·부의장, 공모위원, 추천위원
추천위 구성	- 공모위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인 결정 - 관리위원장이 임기만료 4개월전까지 명단 확정, 지체없이 소집 - 40인(여성 20%) - 교원 27(여성 4) - 총장추천학외위원 1(총장이 후보인 경우에는 평의회에서 추천) - 직원 및 조교 3(여성 1 이상) - 직원협의회및조교협의회에서 공동추천하는 학외위원 1 - 평의회추천 학외위원 4(여성 2) - 총학생회 추천 학외위원 1 - 총동창회 추천 학외위원 2(여성 1) - 기성회 이사회 추천 학부모 학외위원 1 ※ 교원, 직원, 조교: 불참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구성원 비율에 따라 인원 배정하고 무작위 선발
추천위 자격	- 학내: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인 자 - 제외: 후보자, 교무위원, 평의회 의장·부의장, 관리위원
심사·선정	- 1차 심의: 서류심사, 발전계획서 평가를 통해 5인 선정 (학외있으면 1인 이상 포함) - 2차 심의: 면접,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등을 통해 순위없이 2인 결정 - 3차 심의: 2인에 대해 1,2순위 결정(재적과반수로 결정) ※ 심의과정에 관한 사항은 추천위가 따로 정한다. - 재적 2/3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심의·의결, 기피결정은 재적과반수
추천	- 추천위는 선정종료후 지체없이 결과 공표, 총장에게 통보 - 총장은 지체없이 임기만료일 6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2014.01.03.)

공모기간	- 추천위원장이 최초소집된 후 15일 이내에 모집공고
초빙위원회	- 추천위원회 내에 초빙위원회를 둘 수 있다 - 9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외부 1/2 이상) - 모집공고 1개월 이내에 초빙하여 추천위에 추천
행정지원단	- 추천위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구 - 총장은 임기만료일 7개월 전까지 지원단 구성
추천위 구성	- 30명(외부 10명 포함) - 이사회와 평의원회가 임기만료일 6개월전까지 위원 추천, 총장이 지체 없이 임명 - 이사회: 외부 4명, 내부 1명 추천 - 평의원회: 외부 6명, 내부 19명 추천 - 임기만료일 5개월 15일 전에 총장이 소집
추천위 자격	※ 결격: 후보대상자,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공직선거 후보등록자 ※ 제척: 자신과 배우자 및 각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후보대상자된 때
심사·선정	- 서류심사, 발전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예비후보자 5명 이내 선정(대상자별로 의결) - 예비후보자에 대해 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정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정책평가 등을 종합하여 3명의 후보자 선정 - 추천위가 순위없이 공표
추천	- 추천위가 임기만료 2개월 15일전까지 이사회에 추천

13. 서울시립대학교(2014.09.04.) - 직선제

공모기간	- 후보등록신청은 선거일전 16일부터 2일간(토일공 제외) - 등록된 입후보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추가 등록
후보자격	- 5인 이상의 전임교원의 추천(교무위원과 추천위원은 등록 추천 불가) - 총장은 1차 중임 가능
추천위 구성	- 단과대학(법전) 교수회가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추천(법전 이외의 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 소속 교원은 관련 단과대학 교수회 소속으로 본다) - 단과대학(법전) 마다 1인 배정하고, 위원추천요청일 기준 재직전임교원수에 비례하여 정한다. 15인마다 1인 배정(사사오입) - 3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1인 이상의 여성 포함(여성없으면 예외) - 학생대표 2인, 동문대표 1인 - 총장은 임기만료 150일 전까지 위원 추천 요청, 교수회는 2주일 내에 추천 - 총장은 추천완료후 1주일 이내에 위원회 소집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 1/4 이상의 요구로 소집
심사·선정	- 입후보자가 6인 이상: 위원회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5인 후보대상자 선정 - 5인 연기명식, 출석위원 과반수 획득한 자 가운데 상위 5인 선정(5인 미달시 잔여수만큼 연기명 기표하여 5인 확정) - 5인 이내: 전원을 후보대상자로 확정
선거	- 위원회는 선거일 24일전까지 공고,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선거 실시 - 선거권: 전임교원과 전체교수회가 정한 자(선거일 기준으로 해외파견·타기관파견·휴직자 제외) - 전체교수회가 정한 자의 선거권 인정비율은 전체교수회가 정한다 - 선거권 총수의 과반수 참석으로 선거회의 성립(국외체류연구년교수는 1차 부재자투표 가능) - 후보대상자가 3인 이상: 단기명식 기표로 과반수 득표자와 차점자를 선정, 과반수 없으면 상위득표 3인을 대상으로 2차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와 차점자 선정, 2차에도 과반수 없으면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3차 투표 - 후보대상자가 2인인 경우: 단기명 기표로 과반수 득표자와 차점자 선정, 과반수 없으면 2차투표를 하여 득표순으로 2인 선정
추천	- 후보자 선출시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 소집하여 확인하고 결과 공고, 총장에게 통지 - 총장은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임명권자에게 추천

14. 순천대학교(2014.05.08.)

공모기간	- 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일 6개월 이전에 공고. 20일간.
후보자격	- 4년 단임 - 교육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없는 사람 - 임기종료일 전에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사람 - 발전기금 2,000만원 - 재직기간 5년 이상 전임교원 5명의 추천 - 학내 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순천대 부교수 이상 전임 - 학외후보자는 박사학위 소지자
기탁금	- 2,000만원
관리위원회	- 총장은 임기만료 8개월전까지 교수회 의장을 포함한 교원 7명과 직원 2명으로 관리위 구성 - 5년 이상 재직중인 교직원 - 교원: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2명씩(약대1)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교수회에서 선정 - 직원: 직원연합회에서 2명 선정 ※ 제외: 학무위원, 추천위원, 휴직·정직·공로연수·6월이상 국외파견및출장
추천위 구성	- 관리위원장은 접수마감일 이후 20일 이내에 추천위 구성 - 48명: 학내 36, 학외 12(여성 20% 이상) - 교원 31(여성 6 이상): 무작위추첨 - 직원 4(여성 1 이상): 무작위추첨 - 학생 1: 무작위추첨 - 학외 3(여성 1이상): 총장 추천 - 학외 7(여성 1이상): 교수회 추천 - 학외 1: 총동창회 추천 - 학외 1: 기성회 이사회 추천
추천위 자격	- 학내: 위원확정일 현재 순천대 5년 이상 재직 교직원, 학생은 재학생 - 학외: 경제, 법조....전문적 능력과 신망 ※ 해촉: 추천위 재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제한: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공직선거법 선거후보등록자, 참여의사 없음을 통지한 사람, 후보자, 학무위원, 교수회의장·부의장, 추천관리위원, 공고일 현재 학칙상 부속시설의 장, 휴직·정직·공로연수·6개월이상 국외파견 및 출장 - 휴학생 및 국내외 교류 수학(해외인턴쉽) 학생 ※ 보직제한: 추천위원은 총장임기 개시후 2년간 학무위원 임명 자격 제한
토론회	- 추천위원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등 개최
심사·선정	- 후보 5인 미만: 1차투표로 2인 선정. 과반수득표 없으면 상위자 2인에 대해 재투표하여 1,2순위 확정 - 후보 5인 이상: 1차투표로 5인, 2차투표로 2인 선정. 과반수없으면 2인 재투표 - 후보 1인: 찬반투표. 득표수가 추천위총수의 1/2 이상이어야 결정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마지막투표 포함 누적득표수 많은 자 우선. 누적 득표수 같으면 연장자 우선
추천	- 추천위원장은 순위결정시 지체없이 공표, 총장에게 통보 - 총장은 임기만료일 6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15. 안동대학교(2014.03.18.)

공모기간	- 초빙위원장은 임기만료 5개월전까지 공고. 20일간(공휴일 포함)	
후보 자격	기본	-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없는 자 - 임기만료일 전에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학내	- 공고일 현재 안동대 10년 이상 재직중인 자 - 단과대학(전문대학원은 최소단과대학에 포함)별 2인 이상 총20인 추천을 받은 자 - 학내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표절·위조·변조 등의 판정을 받지 아니한 자
	학외	- 박사학위소지자(명예박사 제외) - 단과대학(전문대학원은 최소단과대학에 포함)별 2인 이상 총20인 추천을 받은 자
기탁금	- 2,000만원(등록무효, 자격박탈 이외에는 반환 없음)- 사실상 발전기금	
초빙위원회	- 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 6개월전까지 초빙위원회 구성 - 5년 이상 재직중인 교직원 11인: 단과대학과 교수회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원과 직원단체에서 추천한 직원으로 구성 ※ 구성비율은 교수회평의위원회 의장은 임기만료 9개월전부터 8개월전까지 교수대표와 직원단체대표의 합의로 비율 결정후 총장에게 통보 ※ 제외: 확정일 기준 교무위원, 교수회평의위원회 의장, 관리위원, 휴직·정직, 장기출장, 공로연수자 ※ 제척기피: 동일 - 초빙위에서 자격심사	
관리위원회	- 교수회평의위원회 의장은 임기만료 7개월전까지 관리위원 확정하여 총장에게 통보 - 교직원 11인: 단과대학과 교수회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원과 직원단체에서 추천한 직원으로 구성 ※ 구성비율은 교수회평의위원회 의장은 임기만료 9개월전부터 8개월전까지 교수대표와 직원단체대표의 합의로 비율 결정후 총장에게 통보 ※ 제외: 교무위원, 확정기준일 현재 휴직·정직, 국외파견, 장기출장, 공로연수 ※ 제척기피: 본인 또는 그 배우자와 5촌 이내의 친족관계이거나 이었던 자가 후보자가 된 경우	
추천위 구성	- 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 3개월전까지 추천위원회 구성 ※ 구성비율은 교수회평의위원회 의장은 임기만료 9개월전부터 8개월전까지 교수대표와 직원단체대표의 합의로 비율 결정후 총장에게 통보 - 48인(여성 20% 이상, 외부 1/4 이상) - 학내: 교직원 36(여성 8인 포함): 교원은 단과대학별 비율에 따라 배정. 여성 8인 우선 선발 - 학외: 총장, 교수회평의위원회, 직원단체, 총학생회, 총동창회, 기성회이사회에서 추천하는 12인(여성 2인 포함)	
추천위 자격	- 학내: 확정일 현재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제외: 참여의사 없음을 관리위에 통지한 자, 후보자, 교무위원, 교수회평의회의장, 초빙위원, 관리위원, 휴직·정직·국외파견·장기출장자 - 학외: 경제계 등 전문적 능력과 신망 ※ 제척기피회피 준용 ※ 보직제한: 임기개시후 2년간 교무위원 임명대상에서 제외	
토론회	- 면접,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의 방법과 절차는 추천위가 정함 - 인터넷으로 중계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심사·선정	- 후보자별로 심의하여 순위없이 2인 선정, 재적과반수찬성으로 1,2순위 결정, 가부동수이면 순위결정때까지 재의결	
추천	- 추천위는 지체없이 결과 공표, 통장에게 통보 - 총장은 임기만료일 6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1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2012.05.16.자 규정이 있으나, 2013년 1월 18일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고, 뒤이어 제정된 정관에 따라 총장선출절차가 변경되었으나, 별도 규정으로 제정하기로 한 추천위원회 구성및운영에 관한 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였음.

공모기간	- 추천위는 공모, 추천, 초빙 등의 방법으로 후보대상자를 모집
초빙위원회	- 추천위는 후보초빙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초빙위는 추천위원 9명으로 구성하되, 외부 1/3 이상 포함
추천위원회	-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총장추천위원회를 둔다 - 임기만료 5개월전에 구성 - 15명으로 구성(외부 1/3 이상 포함) - 이사회는 위원 1/3 이내의 인사(그중 1/2 이상은 이사가 아닌 인사) 추천 - 평의원회는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머지 인사를 추천
심사·선정	- 추천위원회는 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 -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17. 전남대학교(2014.04.28.)

공모기간	- 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 90일전까지 15일 이상 공고 - 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 60일전까지 15일 이상 외부위원 공모공고
후보자격	- 5명이상 7명 이하의 공개추천인 명시(총장,평의원회의장, 부총장, 학(원)장, 처장, 병원장은 공개추천 불가) - 교육공무원법 결격사유 - 임기만료일 전에 정년에 달하지 아니할 것 - 10개 이상 단과대학에서 1명이상 추천, 총 30명 이상의 추천 - 학외후보지원자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선거로 당선된 공무원이나 정무직 공무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 -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인 - 위의 직에 있었던 자
기탁금	- 2,000만원 (반환조건: 자격심사탈락, 후보책임없는사유로 사퇴)
관리위원회	- 총장은 임기만료 120일전까지 관리위 구성 - 교원 11, 직원 2 - 교원: 평의원회의장이 다음 각호의 자를 제청 평의원회 부의장, 평의원회의원 4(상임위원 1명씩 추천) 단과대학(원)에서 평의원선출방식과 배정방식에 따라 선정된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 5명(단 단과대학별 1명 이내), 총장이 추천한 처장 1명 - 직원: 직원들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 추천한 2명 ※ 제외: 휴직·정직, 선정기간(만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국외출장·파견, 학무위원(총장추천관리위원은 제외), 평의원회의장 ※ 제척: 후보지원자, 공개추천인, 친족(배우자, 4촌이내 혈족 및 인척) - 재적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과반수로 의결 ※ 관리위원회가 연구윤리검증하고, 홈페이지에 공시
추천위 구성	- 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추천위 구성을 명시함. - 50명(여성 10인 이상): 교원 32, 직원 4, 학생 1, 외부 13 - 교원: 세칙에 정한 단과대 배정인원. (32×여성교원비율) 이상 여성교원 포함 (단과대교수수/32명)을 기준으로 1-4명 배정 추첨후 여성비율 모자라면 전체 여교수 대상으로 추가추첨하여 동일소속 남성과 교체 선정당일 휴직·정직, 출장·파견 제외 - 직원: 세칙에서 방식. 4명중 여성 1명 이상. 휴직·정직·출장·파견,공로연수 제외 - 학생: 광주·여수 총학생회장, 여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여부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단과대학학생회장 중에서 1명 선정 - 외부: 공모하여 지원자 중 전체교수와 직원이 투표로 선정. 임기만료 60일전까지 15일 이상 외부위원 공모공고 직원투표반영비율은 교수투표자의 11% (10-여교수-여직원)이상의 여성위원 포함. 미달시 득표수에 따라 우선배정 외부지원 13명 미만 또는 여성지원자 미달시 추가 공모 ※ 관리위원회에서 외부위원지원자의 자격심사하여 재적 2/3 이상으로 자격없음 결의 가능
추천위 자격	※ 제외: 관리위원, 후보지원자 및 배우자와 4촌이내 혈족·인척, 공개추천인, 총장, 평의원회의장
토론회	- 추천위원장은 합동연설회 개최
심사·선정	- 후보지원자 4명 이상: 1차투표결과 과반수득표자 있으면 득표순으로 1,2위 결정, 과반수 없으면 다수득표자 3명으로 2차 투표 - 후보지원자 3명 이하: 1차투표에서 득표순으로 1,2위 결정
추천	- 추천위원장이 서면으로 총장에게 통보 - 총장이 순위를 명기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

18. 전북대학교(2014.09.16.)

공모기간	- 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 7일 이상.	
후보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임기종료일 전에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 학내인사는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재직중인 자 - 학외인사는 박사학위소지자(명박 포함)로서 전임 20인 이상의 추천	
기탁금	- 1,000만원(득표 15% 이상 전액, 10~15%이면 반액, 10% 미만이면 무반환)	
관리위원회	- 총장은 임기만료 100일전까지 관리위원회 구성 -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40인 이하(비율과 방법은 별도) ※ 제외: 학무위원, 부처장·부단장·부분부장, 대학(원) 부학(원)장,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생활관장, 평생교육원장, 휴직·정직·국외파견·공로연수자 ※ 제척·기피: 본인·배우자 및 4촌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후보자가 되는 경우	
	※ 세칙 - 35인: 교원 30, 직원 5 - 교원: 단과대학(원) 교수회의를 통해 2인씩 추천 - 직원: 직원협의회에서 5인 추천	
추천위 구성	- 관리위원장은 후보자선정 당일 추천위 구성. -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 비율은 별도 규정. 학외 1/4 이상, 여성 1/5 이상 - 교원: 단과대학(원) 기준. 소속없는 교원은 1개 단위로 편제. 방법은 별도 - 직원: 인원과 방법은 별도 - 학생: 전체학부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첨으로 선정(단 후보자와 동일 학과 소속학생 배제) - 학외: 교원과 직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선정. 비율과 방법은 별도 규정	
	학내	- 교원 31(여성5): 단과대학별 남성교원수 비율에 따라 배정, 나머지 묶어서 배정. 여성교원이 2/3인 단과대학에 여성 우선 배정후 나머지 묶어서 배정 - 직원 4(여성1): 직원협의회에서 일반직과 기성회 배분 - 학생 1: 무작위 추첨
	학외	- 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닌 자,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하고, 무작위 추첨
추천위 자격	※ 제외: 학무위원, 부처장·부단장·부분부장, 부학(원)장,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생활관장, 평생교육원장, 총장후보자, 휴직·정직·국외파견·공로연수자, 관리위원, 휴학생 및 국내외 교류수학 중인 학생 ※ 학외위원 자격은 별도 규정	
정책설명회 공개토론회	- 추천위를 대상으로 합동연설회 개최 - 대학구성원에게 중계	
심사·선정	- 직접·비밀투표, 1인1표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 1차투표: 서류심사와 발전계획서 평가 등을 통해 7인 이상이면 투표하여 상위 5인까지 2차 대상자로 선정. 7인 미만이면 모두 2차 투표 - 2차투표: 합동연설회 등을 판단하여 투표. 과반득표자와 차순위자 선정. 차순위가 복수이면 2차까지의 누적득표수가 많은 자 선정(같으면 별도 규정). 과반득표자 없으면 3인까지 3차 투표 대상. 3순위가 복수이면 2차까지의 누적득표수로 결정 - 3차투표: 과반득표자와 차순위자 선정. 차순위가 복수이면 3차까지의 누적득표수로 결정(같으면 별도). 과반없으면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 2순위가 복수이면 3차까지의 누적득표수로 선정(같으면 별도) - 결선투표: 득표수가 같으면, 최종까지의 누적득표수로 결정(같으면 별도) - 누적득표수가 동일하면 연장자 순서	
추천	- 추천위는 선정 완료후 지체없이 결과 공표하고, 관리위원장에게 통보 - 관리위원장이 결과 공고하고, 총장에게 통보 - 총장은 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19. 제주대학교(2014.04.25.)

공모기간		- 공모위원장은 임기만료 4개월전까지 공고. 20일동안.
후보 자격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임기종료 전에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학내	-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재직 - 전임교원 20인 추천 - 발전기금 2,000만원(not 기탁금)
	학외	- 박사학위소지자(명박 포함) - 1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한 자 - 전임교원 20인 추천 - 발전기금 2,000만원
공모위원회		- 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 ?개월전까지 관리위 산하에 공모위 구성 - 교원 8, 직원 1인 -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위원장은 관리위 부위원장이 겸직
위원 공통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신분보장(제명):응모한 경우, 본인·배우자·5촌친족이 지원한 경우... 재직 2/3 이상의 결의로 제명
관리위원회		- 총장은 임기만료 7개월전까지 관리위원회 구성 - 19인(교원 17, 직원 2) - 교원: 교수회장, 단과대학별 1, 교육대학원 1, 전문대학원별 1 (대학(원) 별 교수회의를 통하여 선발하고, 대학(원)장이 추천 - 직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2인 추천 ※ 제외: 학무위원, 추천위원, 휴직·정직·국외파견·6월이상장기출장, 공로연수자
추천위 구성		- 관리위원장은 접수 마감일 이후 20일 이내에 추천위 구성 - 48인: 학내 36, 학외 12 (여성 20% 이상) - 교원(31-여성 4이상): 공고일 30일 전일 기준 단과대학(원) 전임구성비 율에 따라 인원배정,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 직원(4-여성 1이상):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 학생(1):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 무작위추첨방법은 평의회에서 정한다 - 학외: 평의회추천5(여성2이상), 공무원직장협의회추천2(여성1이상), 기성 회이사회추천2(여성1이상), 총동창회추천2(여성1이상), 총학생회추천1 - 방법: 관리위원회는 추천기관에 추천요청, 구성직전일에 3배수 추천명단 밀봉 제출, 무작위추첨으로 선발
추천위 자격		※ 공통자격요건 외 - 공모지원자, 학무위원, 총장직할기관장, 부처(단)장, 관리위원, 휴직 등, 휴학생 등. - 학외위원자격의 구체적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 보직제한: 추천위원은 임기개시후 2년간 단과대학(원)장을 제외한 학무위원 제외
토론회		-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등
심사·선정		- 추천위원 재직 2/3 이상의 유효투표 필요 - 과반수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로 선정 - 과반득표자 없으면 상위 3인에 대해 2차투표 실시, 과반득표자와 차순위자 선정 - 과반득표자 없으면 상위 2인에 대해 3차투표 실시. 동수이면 누적득표 우선, 누적득표도 같으면 연장자를 1순위로 선정.
추천		- 관리위원회가 총장에게 통보 - 총장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20. 창원대학교(2013.12.30.)

공모기간	- 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 5개월 전에 공고. 20일 이상.
후보자격	- 임기는 4년 단임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결격사유 - 임기만료일 전 정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 - 총장이 지원하는 경우 접수마감일부터 직무정지(타대학 유사) - 교무위원, 대학평의원회 의장, 부의장, 교수회 사무국장이 지원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6개월 전까지 사퇴한 자
관리위원회	- 임기만료 6개월전까지 관리위원회 구성(주체 없음) - 부교수 이상의 교원 8명, 직원 2명 ※ 제외: 총장공모지원예정자, 휴직·정직, 연구교수(연구년, 안식년), 국내외 파견 및 연수중인자 - 위원장은 표결에서 제외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 결정 ※ 제척기피회피: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 또는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연구윤리검증	- 추천위 소집 20일전까지 연구윤리 검증(연구윤리위원회에 검증 의뢰)
추천위 구성	- 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일 2개월 전까지 추천위 구성 - 48명(학내 36, 학외 12) -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
추천위 자격	- 학내: 재직중인 교원, 직원, 재학중인 학생 - 학외: 각 분야에서 전문적 능력과 신망이 있는 자 ※ 제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호, 공모지원자, 공직선거법상 당해 연도 선거에 입후보한자, 지원자와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 또는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관리위원, 휴직·정직, 연구교수(연구년, 안식년), 국내외파견 및 연수중인 자, 총장이 등록시 총장이 임명한 교무위원, 본부부처장, 국제교류원장, 종합인력개발원장, 대학발전협력원장,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평생교육원장, 학생생활관장
심사·선정	- 1차: 서류심사, 발전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5인 선정 대상자가 5인 이내일 경우 1차심사 생략 - 2차: 투표권자의 과반수득표자가 있을 경우 1,2순위 결정 - 3차: 과반수 없을 경우, 1,2순위자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순위 결정. 동수인 경우 재투표, 다시 동수이면 연장자를 1순위로 선정
추천	- 추천위원회는 선정종료후 지체없이 결과 공표, 총장에게 통지 - 총장은 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 대상자가 1명인 경우 재공모절차 진행

21. 충남대학교(2014.04.29.)

공모기간	- 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 4개월전까지 공고. 공휴일 포함 20일 이상.
후보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임기만료일 전에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 학무회의구성원, 교수회 임원이 지원하는 경우 접수개시일 전까지 사퇴한 자 ※ 후보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관리위원 재적과반수로 의결, 자격박탈은 재적 2/3 이상으로 의결
기탁금	- 내부지원자는 일정금액(세칙에서 3,0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납부(기탁금 아님)
초빙위원회	- 관리위원회는 모집공고후 10일 이내에 초빙위 구성(11인) - 교원(5): 교수회 추천으로 관리위원장 제청으로 총장 임명 - 직원(2): 직원협의회 추천으로 관리위원장 제청으로 총장 임명 - 학생(1): 재학생 중 총학생회의 추천으로 관리위원장 제청으로 총장 임명 - 학외(3): 관리위원장 추천을 받아 총장 임명
관리위원회	- 총장은 임기만료 6개월 전까지 관리위원회 구성(11인) - 교원(7): 총장직접 3, 교수회추천 4 - 직원(3): 총장직접 1, 공무원직장협의회·대학노조·직원협의회 추천 2 - 학외(1): 유성구선관위추천 1 ※ 제외: 후보자, 후보지원예정자, 학무위원, 휴직·정직·6월이상장기출장자·공로연수 ※ 신분보장: 본인 또는 배우자와 5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후보된 경우 해촉 - 관리위에서 자격심사
추천위원회	- 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 2개월전까지 추천위 구성 (50인) - 교원및직원(34): 교원은 전공단위별, 직원은 직종단위별 무작위 추첨하여 선발 - 조교(1): 전체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발 - 학생(2):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각1인을 무작위 추첨하여 선발 - 학외(13): 총장, 총동창회장, 기성회장, 대전시장, 충남지사, 세종시장, 언론계,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 - 여성 20%, 외부 1/4 이상 - 계열구분: 인문사회, 이공, 의학
토론회	- 토론회, 연설회 등을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심사·선정	- 자격조사: 관리위원회가 자격조사하여 추천위에 통지 - 1차본심사: 서류·면접후 추천위원회에서 5인 이내 선정(심사와 투표). 동일득표시 동일득표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 - 2차본심사: 1회이상의 연설회 및 토론회 등을 참작하여 5인 이내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2인 선발(심사와 투표). 과반득표자 없으면 1,2순위자 결선투표. 1,2순위득표가 과반 미달이면 3순위 포함하여 결선투표 ※ 심사의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본규정으로) - 1차심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2차심사: 연설회, 토론회 등을 종합하여 심사 ※ 중복규정
추천	- 추천위원회는 선정즉시 결과공표, 총장에게 통보 - 총장은 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22. 충북대학교(2014.01.20.)

공모기간	- 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일 150일 전에 공고. 15일(휴무일 제외)
후보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임기전에 정년이 아닌 사람 - 4년제 대학에서의 교육경력이 5년 이상 - 교무회의 구성원 또는 교수회장은 접수개시일 전까지 사직서 제출 - 관리위원이 아닌 사람 - 그 밖의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 충족
관리위원회	- 교수회장은 임기만료 180일전까지 20-30인 관리위원 임명 - 단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에서 추천한 교원, 직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 구성비율과 선발방법은 시행세칙 ※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후보등록한 사람, 총장후보자, 교무위원,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사람 - 해당되면 자동면직·해촉된 것으로 간주 ※ 제척기피회피: 본인 또는 배우자나 5촌 이내의 친족관계
추천위 구성	- 관리위원회는 10-50인의 추천위원 선발 - 비율과 방법은 세칙 - 학외 1/4, 여성 1/5
추천위 자격	- 학내: 재직중인 교직원, 재학중인 학생 - 관리위원의 자격 결여자, 관리위원은 추천위 불가 - 학외: 경제계 등에서 전문성과 도덕성 구비
토론회	- 설문조사 삭제
심사·선정	- 자격심사 삭제 - 1차투표: 1인2표방식, 다득표순으로 5인 선정. 5순위가 다수인 경우 모두 포함 - 2차투표: 1인1표방식. 다득표순으로 3인 선정. 3순위가 다수인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3인이 될 때까지 계속 투표 - 3차투표: 1인1표방식. 다득표순으로 2인 결정. 2순위가 다수인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2인 선정될 때까지 계속 투표 - 추천순위: 1인1표방식. 과반수에 의해 순위결정될 때까지 계속 실시
추천	- 추천위는 선정완료후 지체없이 관리위원회에 통보 - 총장은 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23. 한경대학교(2014.03.21.)

공모기간	- 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 130일전까지 공고. 15일 이상.
후보자격	- 4년 단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임기만료일 전에 정년 아닌 사람 - 전임 10명의 추천(중복 추천 허용) - 재직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유능한 외부인사 -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행정처장, 교수회장은 임기만료 180일전까지 사임
기탁금	- 2,000만원 - 1,2순위자는 반환, 나머지는 발전기금 귀속
관리위원회	- 임기만료일 140일전까지 구성(주체 불분명) - 9명: 총장추천 부교수 이상의 전임 4명, 교수회추천 부교수이상 전임 5명 - 제외: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교수회 회장, 부회장, 총무 ※ 제척회피: 본인, 배우자 또는 5촌 이내의 친족관계 - 부정행위심사시 재적 2/3 출석으로 개의, 출석 2/3으로 의결
연구윤리검증	- 관리위원회는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발표한 연구실적에 대한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여 총장에게 제출
추천위 구성	- 임기만료 100일전까지 구성(주체 불분명) - 제외: 총장, 지원자, 관리위원, 관리위직원, 연구년·파견교원, 추천위원 영기간중 1월이상 장기공무국외여행중인 교직원, 휴직 교직원, 공로연수 교직원, 정직 및 직위해제된 교직원 - 총 48명(외부 1/4, 여성 1/5 이상) - 내부교원 30(여성 6), 내부직원 6(여성 1): 무작위 추첨 - 외부위원: 교수평의회추천 7(여성2), 직원협의회추천 1(1), 총동문회장 또는 총동문회장이 추천 1, 기성회장 또는 기성회장 추천 1, 광역단체장 또는 단체장 추천 1, 기초단체장 또는 단체장 추천 1 - 재적 2/3 출석으로 개의, 출석과반수로 의결
	※ 외부위원 자격 - 교육: 4년제대학 총장·대학(원)장, 2년제대학 총장, 초·중·고 교장 - 행정: 국가 또는 지방 5급 이상 공무원 - 경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대표(CEO) - 정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 부의장 이상 - 법조: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경력 15년 이상 - 기타: 중앙일간지 대표논설위원, 사단재단법인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
추천위 자격	- 제척·회피: 본인, 배우자, 5촌 이내의 친족관계
토론회	- 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각 1회 이상 개최
심사·선정	- 1차심사: 전원 심사, 2명 선정. 출석과반수 동의있으면 바로 1,2순위 선정 - 2차심사: 순위 결정 - 동점자 있으면 재심사하여 결정 - 선정방법 세부사항은 추천위에서 결정
	※ 추천위에서 선정한 2명에 대해 연구진실성 검증
추천	- 추천위는 선정즉시 결과 공고, 총장에게 통보 - 총장은 임기만료 3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24. 한국교원대학교(2014.03.31.)

공모기간	- 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 130일 전에 공고. 15일간(공휴일 포함) - 지원자가 1명 이하일 경우 1회에 한하여 5일간 재공고
후보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임기만료일 전에 정년 아닌 사람 - 전임교원 5명의 추천(복수추천 불가) - 발전기금 2,000만원(외부 제외) - 1회 중임 가능 - 교무위원은 임기만료일 130일 전에 사임
관리위원회	- 총장은 임기만료일 150일전까지 관리위원회 구성 - 5-7명: 단과대학 및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직원 ※ 제외: 지원자, 총장, 교수부장, 교학처장, 기획처장, 교수협의회장, 공무원직협장 - 재적 2/3 출석으로 개의, 출석과반수로 의결. 해촉은 출석 2/3
추천위원회	- 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일 90일전까지 추천위 구성 - 20인(여성1/5): 교원12, 직원2, 학생1, 졸업생1, 교육감또는단체장1, 학식과경험3 - 결격: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공직선거법 후보등록자, 총장, 교수부장, 교학처장, 기획처장, 교수협의회장, 공무원직협장, 관리위원 - 재적 2/3 출석으로 개의, 출석과반수로 의결
심사·선정	- 별도 규정
추천	- 추천위는 선정종료후 지체없이 결과 공표, 총장 통보 - 총장은 임기만료 3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25. 한국교통대학교(2014.02.28.)

공모기간	- 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 120일부터 60일 이전에 추천위 개최일 결정 - 관리위원회는 추천위 개최일 24일 이전(공휴일·토요일 제외)까지 중앙일간지에 추천일정 공고, 2주일간. - 등록기간은 추천위 개최일전 14일부터(공휴일·토요일 제외) 2주일간
후보자격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결격사유, 임기중 정년 제외 - 10년 이상 재직중인 교원 - 학처장급 이상의 보직자(교수회 부회장 포함)는 접수개시일전까지 사임, 교수회장은 총장임기만료 1년 이전에 사직 - 20-25명의 전임 추천(5개 이상 단과대학에서 각 2인 이상 추천) - 추천 제외: 지원자, 교무위원, 교수회 임원, 관리위원
초빙위	- 교원: 공개모집후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초빙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이 추천하는 전임 5인 이하(교무위원과 교수회 임원 배제) - 직원: 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직원 2인 이하 ※ 초빙인사가 총장임용되면, 임기개시후 2년간 교무위원 제외(단 학장은 허용) - 재적 2/3 이상 출석으로 개최, 출석과반수로 의결
관리위	- 총장 임명, 임기만료 180일 전에 구성 - 교수평의회 추천하는 전임 6인 이하(여성 1인 이상, 단과대학당 1인이하) - 직원단체 추천하는 직원 1인 이하 - 재적 2/3 이상 출석으로 개최, 출석과반수로 의결 ※ 제척기피회피: 배우자, 배우자였던자,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던 자, 지원자동일학과(부)
선정위	※ 사실상 추천위원회임(후보자 2인의 선정). - 지원자가 2인 이하인 경우 선정위 구성 아니함 - 48인 이하(여성 20% 이상) ○ 교내 36이하(여성 8인 이상): 관리위원회가 회의전날 개별통보 - 교원 30인 이하(여성 7): 단과대학별 비율 고려 인원 배정, 불참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교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발, 직급별 비율 고려하여 학과당 최대 2인으로 제한 가능 - 직원 5인 이하(여성 1 이상): 불참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직원대상 무작위 선발하되, 직급별 비율에 따른 배분 고려 - 학생 1인 이하: 불참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총학생회 회장·부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학과학생회장을 대상으로 무작위선발하되 지원자소속 학과생 제외 ○ 교외 12 이하(여성 2): 회의 3일전까지 추천 - 총장추천 1인 이하 - 교수평의회 추천 6인 이하 - 직원단체 추천 2인 이하 - 총동문회 추천 2인 이하 - 기성회 이사회 추천 1인 이하 ※ 자격: 지원자, 교무위원, 교수회임원, 관리위원은 교내위원 배제, 교외위원은 경험과 식견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결격사유 ※ 제척기피: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결격사유,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 또는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추천위	- 관리위원회의 기능 중에 추천위원회 구성을 명시함. ※ 선정위 2인에 대해 순위만 결정 - 48인 이하(여성 20% 이상) ※ 구성과 방법은 선정위원회와 동일 ※ 자격 및 제척기피도 선정위원회와 동일 - 다수표를 얻은 자를 1순위, 다른 지원자를 2순위, 동수이면 계속 재투표 - 추천위원장은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 관리위원장은 결과 공고
토론회	- 공개 합동연설회 1회 이상, 인터넷으로 학내에 공개할 수 있다 - 선정위원회가 정한 2인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1회 개최, 인터넷 공개 가능
심사·선정	- 선정위원회는 재적 2/3 이상 출석으로 개최 - 지원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2표, 6인 이하인 경우 1인1표로 1,2위 선정 - 1위가 3인이상이면 1위에 대해 1인1표로 재투표, 2위가 2인이상이면 2위에 대해서만 1인1표로 재투표. 그래도 동수이면 계속 재투표
추천	- 선정위원장은 선정결과를 관리위원장에게 통보, 관리위원장은 선정결과를 공고 - 추천위원장은 결정결과를 총장에게 통보, 관리위원장은 결정결과를 공고 - 총장은 추천위원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후보자를 임기만료 50일전까지 추천

26. 한국해양대학교(2014.03.27.)

공모기간	- 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일 5개월전까지 공고. 20일간(공휴일포함)
후보자격	-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10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전임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탁금	- 세척에서 기탁금 2,000만원 - 2순위이내, 사퇴, 사망, 자격박탈, 등록무효 외에는 발전기금 귀속
관리위원회	- 총장은 임기만료일 7개월 전까지 관리위 구성 - 12인의 학내위원 - 교원 10인: 대학별로 객관적·공정한 방법으로 2인씩 추천한 8인, 교수회 추천 2인 - 직원 2인: 전체직원회의에서 객관적·공정한 방법으로 추천한 2인 ※ 제외: 후보자, 교무위원, 휴직·정직·연구년·공로연수 - 제척기피: 본인, 배우자, 5촌 이내의 친족 - 관리위원회에서 요건심사
추천위원회	- 관리위원장은 후보자선정일 하루 전에 추천위 구성 - 50인(여성 20% 이상, 외부 1/4 이상) ○ 내부(37): 대학별 재직인원기준 배정, 직원은 직종별 또는 직급별 인원배정, 조교는 전체조교, 학생은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선출일 전날 무작위 선발 - 교원 31(여성 3 이상) - 직원 4(여성 2 이상) - 조교 1 - 학생 1 ○ 외부(13): 관리위원장은 3배수 이상 추천받아 선출일 전날 무작위 선발 - 총장(또는 직무대리) 추천 중에서 2인(여성 1인 이상) - 교수회 추천 중에서 3인(여성 1인 이상) - 전체직원회 추천 중에서 2인(여성 1인 이상) - 총학생회 추천 중에서 1인 - 총동창회 추천 중에서 1인 - 기성회 이사회 추천 중에서 1인(학부모) - 관리위원회 추천 중에서 3인(여성 3인 이상) ※ 제척: 후보자, 관리위원, 휴직·정직·연구년·공로연수 ※ 기피결정은 재적과반수, 위원해임은 재적 2/3 이상으로 의결
심사·선정	- 후보 5인 이하: 1차투표로 2인 선정. 과반수득표 없으면 2인에 대해 재투표 - 후보 5인 초과: 1차투표로 5인 선정, 2차투표로 2인 선정. 과반수 없으면 재투표로 순위 확정 - 후보 1인: 득표수가 추천위 총수의 1/3 이상에 달해야 결정 - 동일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동일득표자에 대해서만 재투표 - 선정된 2인의 최종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과반초과할 때까지 재투표
추천	- 추천위는 선정후 결과 공표, 총장 통보 - 총장은 임기만료일 5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27. 한밭대학교(2014.04.25.)

공모기간	- 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 4개월전까지 공고. 20일 이상(공휴일 포함)
후보자격	- 임기는 4년으로 단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임기만료일 전에 정년 아닌 사람 -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홍보처장, 산학협력단장, 입학관리본부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교수평의회 의장이 지원하려면, 임기만료일 6개월전에 사임
기탁금	- 소정의 기탁금(세척에서 2,000만원) 납부 - 1차투표에서 득표순위가 상위 1/20이상이면 전액 반환. 중도 사퇴도 반환 없음.
관리위원회	- 총장은 임기만료일 6개월 전에 관리위 구성 - 14인 이내의 내부위원 - 교원 10: 단과대 교수회에서 객과적·공정한 방법으로 선발하여 총장에게 추천 단과대별 세부인원 배정 - 교원 4: 직원협의회에서 추천 ※ 제외: 지원자, 학무위원 ※ 제척기피: 지원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사람 -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의결(제척기피는 재적과반수로 의결)
연구윤리검증	- 관리위는 필요한 경우에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에 검증 의뢰
추천위 구성	- 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추천위 구성, 총장이 임명 - 관리위원장은 추천위원선정 3일 이전까지 대상자명단 작성, 1일이전까지 확정 - 48명(여성 20%이상, 외부 1/4 이상) - 교원 28: 세그룹에서 여성 3명 우선선발, 단과대학별 전임수에 따라 인원배정후 무작위추첨으로 선발. 정수 우선배정후 소수점 이하 숫자가 높은 순으로 배정 - 직원 6: 직종별·직급별 인원배정. 직종별·직급군별 여성 우선선발, 직종별·직급별 남성위원 선발 - 조교 1: 조교(기성회조교 포함) 중에서 추첨 선발 - 학생 1: 총학생회, 학회연합회, 총동아리연합회 임원 중에서 추첨 선발 - 외부 12: 동문회 2(총동문회와 재경동문회 각 1명, 임원명단에서 추첨) 기성회 1(기성회 임원명단에서 추첨) 기관선발- 교육계 1, 자치단체 1, 산업계 2, 과학기술계 1, 법조계 1, 언론방송계 1, 문화예술계 1, 시민단체 1 ※ 기관별 남녀 각 1명씩 추천받아 여성 6명 우선선발 ※ 자격: - 교육계: 대학의 정교수급, 교장급, 해당 기관 임원급 이상 -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 -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경력 15년 이상, 해당 기관 임원급 이상 - 기타분야: 해당 분야 경력 15년 이상으로서 임원급 이상 -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과반수로 심사·의결(위원제척·해촉은 재적과반수) - 외부는 위촉 14일 이전에 추천의뢰, 7일 이전까지 접수, 1일전에 추첨선발
추천위 자격	※ 결격사유: 지원자, 관리위원과 간사·서기, 휴직·정직·연구년(국외), 공로연수및파견
토론회	- 관리위는 자격심사후 전체 대상으로 합동연설회 개최 - 추천위 심사에 앞서 추천위 대상으로 소견발표 및 정책토론회
심사·선정	- 1차투표: 과반수득표자와 차점자 선정. 과반수없으면 3순위까지 2차투표 - 2차투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와 차점자 선정. 없으면 상위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로 순위 결정
추천	- 추천위원장은 지체없이 결과 공표, 총장 통보 - 총장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